

2021 시정권고 사례집

제3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 시정권고 전체 목록

| 의결번호    | 제2021-1호  | 언론사명 | (주)아시아뉴스통신 |
|---------|---|------|------------|
| 대상보도    |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12월 16일 국내사진면<br>「[아동포토] “범죄자가 뭐라고 인력 낭비를 합니까”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범죄자의 거주지가 공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최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 외관사진을 보도하면서 동 단위 주소 및 번지수를 함께 공개하였다.<br>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사생활 및 범죄자의 출소 이후 재사회화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2호   | 언론사명 | (주)한경닷컴 |
|---------|--|------|---------|
| 대상보도    | 인터넷 한국경제 2020년 12월 14일 정치면<br>「길할머니 생일인가, 본인 생일인가...윤미향 ‘생파’ 미스터리」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국회의원이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하는 것을 빌미로 본인의 생일파티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파티에 참석한 의원의 지인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였다.<br>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국회의원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초상 공개를 허용할 어떠한 계기도 없는 상태에서 초상이 보도됨으로써 일반인인 지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3호   | 언론사명 | (주)아이뉴스이십사 |
|---------|--|------|------------|
| 대상보도    | 조이뉴스24 2020년 12월 09일 연예면<br>「'이혼' 김현숙 남편 누구? 동갑내기 인테리어 전문가 '화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특정 배우가 이혼한다고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 및 일반인 배우자의 초상 및 성명을 게재하였다.</p> <p>유명인의 가족일지라도 이혼이라는 개인적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초상 공개를 감수할 이유가 없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초상 공개는 자기 결정이 가능한 성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더욱 커다란 주의가 요구되므로 이미 방송되었던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초상권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다.</p> <p>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이는 일반인인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4호 | 인사이트                | 2020년 12월 9일 | 엔터테인먼트면 | '막돼먹은 영애씨' 김현숙, 결혼 6년 만에 '이혼'              | 인터넷신문 |
| 제2021-5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2020년 12월 9일 | 셀럽면     | "희생적인 삶" 김현숙, 남편 덕에 '산후 우울증' 버텼는데...결국 이혼行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6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트리 2020년 12월 07일 사회면<br>「철구 딸 입학한다고 오해받은 사립초등학교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6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이유   | <p>위 기사는 특정 유튜버 부부가 잘못된 언행으로 여러 논란을 일으켰으며 그 자녀의 사립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 비난 댓글이 폭주했다고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 및 성명을 게재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미성년자의 성장 과정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딸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인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7호 | 티비리포트               | 2020년 12월 9일  | 전체기사면  | 딸 ○○ '초등학교 입학'에 입 연 외질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 | 인터넷신문 |
| 제2021-8호 | 투스타뉴스 (TopStarNews) | 2020년 12월 11일 | HD동영상면 | BJ철구 딸이 논란인 이유 "너네 아빠 철구지?"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9호   | 언론사명 | (주)경기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경기신문 2020년 12월 23일 사회면 「[단독] 故 박원순 전 비서가 박 시장에게 보낸 편지 공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비서가 시장실 재직 시절 박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쓴 편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다.</p> <p>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편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동선비밀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호 | 경기신문                  | 2020년 12월 24일 | 01면, 03면 | 「“반짝반짝 빛나는 박원순 시장님...” 성추행 고소 예비서 편지 공개 파문」 외 기사 1건 | 지역일간지 |
| 제2021-11호 | 인터넷<br>굿모닝충청          | 2020년 12월 23일 | 정치면      | 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이 쓴 손편지...“이래도 권력형 성범죄?”                | 인터넷신문 |
| 제2021-12호 | 뉴스프리존(News Free Zone) | 2020년 12월 23일 | 사회면      |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고소한 이씨가 보낸 ‘손편지’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3호 | 인터넷<br>뉴스토마토          | 2020년 12월 23일 | 사회면      | 2년 전 박원순 피해자 “셀카 못 찍어 아쉬워”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4호  | 언론사명 | (주)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20년 11월 04일 핫이슈면<br>「지하철 ‘2호선’라인 따라 조선족에게 점령(?) 당하고 있는 서울 근황」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국적과 지역에 대한 편견적 표현이 언급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수도권 내 조선족 거주지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서울시 이들에게 ‘점령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기사제목으로 보도하고 해당 지역 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칼부림 등 싸움이 잦다고 보도하였다.<br>이는 특정 국적과 지역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조장하는 편견적 표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15호   | 언론사명 | 중앙일보(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중앙일보 2020년 12월 08일 경제면<br>「[영상] ‘던지기 수법’ 원조 亞마약왕, 2년전 사라진 그 잡았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보도)  |      |         |

| 의결번호 | 제2021-15호   | 언론사명 | 중앙일보(주)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마약의 사용량, 구입가격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마약의 사용량, 구입가격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br>이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6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2020년 12월 17일 | 경제면  | 610억원대 필로폰 밀수…法, ‘표 마약양’에 징역 17년형   | 인터넷신문 |
| 제2021-17호 | 동아닷컴      | 2020년 12월 17일 | 사회면  | 610억 필로폰 밀수 ‘아시아 마약왕’ 1심서 징역 17년 선고 | 인터넷신문 |
| 제2021-18호 | 뉴스1코리아    | 2020년 12월 17일 | 인천면  | 610억 필로폰 밀수 ‘아시아 마약왕’ 1심서 징역 17년 선고 | 뉴스통신  |

| 의결번호    | 제2021-19호   | 언론사명 | 중앙일보(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중앙일보 2020년 12월 30일 사회면<br>「'말 처럼 힘이 솟는 약?'…합성마약(○○) 밀수 판매 조직 적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환각적 효능, 마약의 형태(사용방법) 및 사진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환각적 효능, 마약의 형태(사용방법) 및 사진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br>이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20호 | 인터넷 충북일보 | 2020년 12월 30일 | 사회면  | 검찰, 충북지역에 마약 밀수·판매한 태국인 마약조직 일망타진    | 인터넷신문 |
| 제2021-21호 | 동양일보     | 2020년 12월 31일 | 03면  | '충북서 활개' 태국인 마약 밀수조직 적발              | 지역일간지 |
| 제2021-22호 | 인터넷 동양일보 | 2020년 12월 30일 | 사회면  | '충북서 활개' 태국인 마약 밀수조직 적발              | 인터넷신문 |
| 제2021-23호 | 인터넷 서울신문 | 2020년 12월 30일 | 사회면  | "이주 노동자가 고객"...충북서 태국인 마약 밀수 유통조직 적발 | 인터넷신문 |
| 제2021-24호 | 인터넷 세계일보 | 2020년 12월 30일 | 사회면  | "값싼 마약이 는다"...마약 밀수·유통 태국인 27명 검거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5호  | 언론사명 | (주)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20년 12월 08일 핫이슈면<br>「"짐승 말고 나한테 몸 쥐라"... '고소미' 과자 먹으며 악플 읽는 유튜브 꿀꿀선아 (영상)」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이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유튜브가 자신에게 달린 악플에 대해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해당 악플 내용을 상세히 게재하였다.<br>이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보도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2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26호 | 티비리포트   | 2020년 12월 4일 | 전체기사면 | 애완돼지 키우는 유튜브에게 달린 악플 수준                 | 인터넷신문 |
| 제2021-27호 | 인플루언서닷컴 | 2020년 12월 4일 | 이슈면   | "짐승한테 몸 대 쥐..." 애완동물 키우는 유튜브에게 달린 악플 수준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8호   | 언론사명 | (주)스포츠포스트 |
|---------|---|------|-----------|
| 대상보도    | sportschosun.com 2020년 12월 17일 연예면<br>「[SC이슈] '박유천 前여친' 황하나, 마약→자해논란...피투성이 손목 사진 게재」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사진이 게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기업 창업주의 손녀가 자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투성이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29호   | 언론사명 | (주)오마이뉴스 |
|---------|---|------|----------|
| 대상보도    | 오마이뉴스(OhmyNews) 2020년 12월 04일 정치면<br>「256명 죽어간 176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심사 단 15분」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거나 인용출처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br>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부 록

| 의결번호    | 제2021-30호  | 언론사명 | (주)이투데이 |
|---------|--|------|---------|
| 대상 보도   | 이투데이 2020년 12월 01일 정치·경제면<br>「[종합]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면담... '동반 사퇴' 시동 거나」 제하의 보도  |      |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         |
| 권고 사항   | 대상 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상 국정조사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거나 인용출처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31호   | 언론사명 | (주)충청뉴스 |
|---------|---|------|---------|
| 대상 보도   | 충청뉴스 2020년 11월 26일 의료복지면<br>「○○○병원, 시설업그레이드 완료...서비스 차별화 약속」 제하의 보도   |      |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권고 사항   | 대상 보도 중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성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의 이름, 의료인명, 위치 정보, 전경 사진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br>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의료광고의 금지와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3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32호 | 대전일보닷컴                | 2020년<br>12월 29일 | 라이프면  | ○○○병원 시설 증축·확장 의료질 업그레이드                    | 인터넷신문 |
| 제2021-33호 | 인터넷<br>파이낸셜뉴스         | 2020년<br>12월 9일  | 사회면   | ['건강 100세 시대' 스페셜 클리닉] 자궁근종 치료 전문 '○○○의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34호 | 부산파이낸셜뉴스              | 2020년<br>12월 10일 | 02면   | "자궁근종으로 가임기 여성 40% 고통... 非수술 치료 가능"         | 지역일간지 |
| 제2021-35호 | 아시아투데이<br>ASIATODAY닷컴 | 2020년<br>12월 15일 | 사회면   | '스마일 라식' ○○○안과, '환자 안전·동선 최적화' 이전 확장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36호 | sportschosun.<br>com  | 2020년<br>12월 15일 | 사회면   | ○○○안과 확장 이전...환자 동선 최소화·무균 수술실 갖춰           | 인터넷신문 |
| 제2021-37호 | 메디컬리포트                | 2020년<br>11월 27일 | 병·의원면 | 척추·관절·통증 전문으로 치료하는 ○○○정형외과...11월 2일 ○○○역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38호 | 인터넷<br>베이비뉴스          | 2020년<br>12월 10일 | 건강면   | ○○○한방병원 개원, 양한방 협진으로 도약 발판 마련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39호   | 언론사명 | (주)굿메이커스 |
|---------|---|------|----------|
| 대상보도    | 포스트쉐어(postshare) 2021년 01월 18일 뉴스 & 이슈면<br>「충간소음 논란 안상태 부부가 반성 안한다는 증거 (+인스타 업뎃)」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미성년 일반인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특정 개그맨의 가족이 충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을 게재하였다.</p> <p>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유명인의 가족일지라도 미성년 자녀는 자기 결정이 가능한 성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특히 유아의 경우 부모-자녀간의 양육관계 등 사생활이 언론공표로 인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초상 공개에 더욱 커다란 주의가 요구되므로 미성년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3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40호 | 뉴스클레임       | 1월 18일 | 핫클릭면   | [영상] 안상태 와이프,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 “불쌍한 셀러브리티”      | 인터넷신문 |
| 제2021-41호 | 데일리스포츠월드    | 1월 18일 | 연예면    | ‘충간소음 논란’ 안상태 아내, 이번엔 이웃 저격?...“불쌍한 키보드 워리어”   | 인터넷신문 |
| 제2021-42호 | 오에스이엔(OSEN) | 1월 18일 | 연예면    | 안상태 아내 “4월 이사간다.. 억울한 사회이슈→작품 계속 만들 것” (직격인터뷰) | 인터넷신문 |
| 제2021-43호 | 인터넷 한국경제    | 1월 13일 | 연예면    | 안상태 아내 “악의적인 저격 글, 많이 놀랐다”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44호 | 조선닷컴        | 1월 18일 | 연예면    | 안상태 아내 “4월 이사간다.. 억울한 사회이슈→작품 계속 만들 것” (직격인터뷰) | 인터넷신문 |
| 제2021-45호 | 텐아시아        | 1월 3일  | 연예가화제면 | 안상태 아내 “악의적인 저격 글, 많이 놀랐다” [전문]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46호   | 언론사명 | (주)데일리안 |
|---------|---|------|---------|
| 대상보도    | 데일리안 2021년 01월 14일 연예면<br>「이희재·안상태 구설에 싸이집 충간소음을 피해도 수면 위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가수의 가족이 충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반인 배우자의 초상 및 성명을 게재하였다.<br>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유명인의 가족일지라도 충간소음 가해자 논란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행해진 자신의 초상 공개를 감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인인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47호   | 언론사명 | 김경민(족구뉴스) |
|---------|---|------|-----------|
| 대상보도    | 족구뉴스 2021년 01월 19일 연예면<br>「노현희 전남편,신동진 아나운서 근황?.재혼, ‘미모의 아내?’ 아들공개.. ‘이혼사유 불임NO」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미성년 일반인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47호  | 언론사명 | 김경민(족구뉴스) |
|------|--|------|-----------|
| 이유   | <p>위 기사는 특정 아나운서의 이혼사실을 보도하면서 재혼 후 낳은 미성년 자녀의 초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유명인의 가족일지라도 미성년 자녀는 자기 결정이 가능한 성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특히 유아의 경우 부모-자녀간의 양육관계 등 사생활이 언론공표로 인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초상 공개에 더욱 커다란 주의가 요구되므로 미성년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48호  | 언론사명 | (주)이투데이 |
|---------|--|------|---------|
| 대상 보도   | 이투데이 2021년 01월 04일 사회면<br>「심형래 나이, 이혼 사유와 근황... 전 부인, 재력가 집안의 음대 출신 자원」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 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및 성명 등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특정 개그맨의 11년 전 이혼사실을 보도하면서 전 부인의 초상 및 성명을 게재하고,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 및 개인적 집안사정을 지나치게 자세히 공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일반인인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4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49호                             | 녹색경제신문                 | 1월 4일 | 대중문화면 | 근황 전한 심형래 나이, 이혼 사유... 10살 연하 전 부인, 재력가 집안의 자제            | 인터넷신문 |
| 제2021-50호                             | 뷰어스                    | 1월 1일 | 핫이슈면  | 심형래 나이, 싱글라이프가 답?...이혼에 양육권 넘겨준 사연                        | 인터넷신문 |
| 제2021-51호                             | 인터넷<br>한국정경신문          | 1월 4일 | 문화면   | "연수입 120억 넘었다" ..심형래 나이, 이혼 사유에 등장한 '경제'                  | 인터넷신문 |
| 제2021-52호                             | 뉴스웍스                   | 1월 4일 | 연예면   | '1호가 될 순 없어' 심형래, 나이 몇이길래? "이혼한 지 11년...재혼 없이 혼자 사는 게 좋다" | 뉴스통신  |
| 제2021-53호                             | 톱스타뉴스<br>(TopStarNews) | 1월 4일 | 방송면   | "재혼 안 해" 심형래, 나이 몇살이길래?...전부인 집안부터 이혼 사유 눈길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54호  | 언론사명 | 국민일보(주) |
|---------|--|------|---------|
| 대상 보도   | 인터넷 국민일보 2021년 01월 03일 연예면<br>「방청객 사진 놓고 낄낄… ‘놀토’ 일반인 희화화 논란」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다른 프로그램의 방청객으로 나온 일반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재사용하여 외모를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방청객의 초상을 공표하였다.<br>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일반인인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5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55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1월 3일 | 엔터면  | ‘놀토’ 박나래 행동에 시청자 비난 폭주...“일반인 외모 희화화, 불쾌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56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1월 4일 | 이슈면  | ‘놀라운 토요일’ 자료화면 일반인 외모 희화화 논란... “생각이 짧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57호 | TV Daily (티브이데일리)   | 1월 3일 | 방송면  | ‘놀토’ 박나래, 일반인 외모 희화화 논란에 침묵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58호   | 언론사명 | (주)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 보도   | 인사이트 2021년 01월 11일 사회면<br>「아랫집서 들리는 ‘성관계 중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주민이 공개한 녹음 파일」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58호   | 언론사명 | (주)인사이트컴퍼니 |
|------|---|------|------------|
| 이유   | <p>위 기사는 증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아랫집에서 들리는 성관계 신음소리라고 공개한 녹음 파일을 게재하였다.</p> <p>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과 관련된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내용을 여과없이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과 제13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59호  | 언론사명 | (주)더뉴스그룹 |
|---------|--|------|----------|
| 대상 보도   | UPI뉴스통신 2021년 01월 14일 연예면<br>「“명단 다 있다”…‘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효연 언급한 이유」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 보도 중 일반인의 성명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일명 ‘버닝썬 사건’ 당시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던 역삼지구대 경찰관 2명의 성명을 게재하였다.</p> <p>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이들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2020년 1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당사자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특정 범죄행위와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5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0호 | 데일리안    | 1월 15일 | -    | 김상교 재반박 “승리랑 친한 효연, 그날 버닝썬 마약 여배우 봤을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61호 | 뷰어스     | 1월 14일 | 핫이슈면 | 김상교, 효연 저격…옥타곤 포주 석씨가 관리한 연예인 물음표            | 인터넷신문 |
| 제2021-62호 | 아시아경제닷컴 | 1월 15일 | 일반면  | 효연은 아니라는데…“승리랑 친분 있으니까” ‘버닝썬’ 김상교, ‘가세연’서 주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63호 | 아시아타임즈  | 1월 14일 | 연예면  | “그날 다 봤잖아”…‘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효연 언급               | 인터넷신문 |

**■ 제2021-5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4호 | 이투데이                   | 1월 15일 | 연예/<br>스포츠면 | 효연 공식입장 삭제 예고, '가로세로연구소' 김상교 효연 저격 이유 밝혀    | 인터넷신문 |
| 제2021-65호 | 인사이트                   | 1월 14일 | 사회면         | '버닝썬 사건' 최초 제보자 김상교의 증언 요구에 '소녀시대' 효연의 입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66호 | 인터넷 경북신문               | 1월 14일 | 종합면         | '충격' 김상교 인스타그램, 핫이슈 등극한 버닝썬 논란의 그녀는?        | 인터넷신문 |
| 제2021-67호 | 인터넷 국민일보               | 1월 14일 | 시사면         | "그날 다 봤잖아" 효연 저격한 버닝썬 최초제보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68호 | 인터넷 매일신문               | 1월 14일 | 사회면         |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추가 폭로하며 효연 언급 왜?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69호 | 인터넷 서울경제               | 1월 14일 | TV·방송면      | 김상교 "그날 VIP 다 봤을거 아니냐" 소녀시대 효연에 증언 요구       | 인터넷신문 |
| 제2021-70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1월 14일 | 사회면         | "효연, VIP 다 봤잖아"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효연에 증언 요구(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71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월 14일 | 사회일반면       | '버닝썬' 최초 제보자 김상교, 폭로 글에 소녀시대 '효연' 사진은 왜?    | 인터넷신문 |
| 제2021-72호 | 티비리포트                  | 1월 14일 | -           | 버닝썬 그날의 진실?...김상교, 소녀시대 효연 언급 '왜'           | 인터넷신문 |
| 제2021-73호 | 포스트쉐어 (postshare)      | 1월 14일 | 뉴스 & 이슈면    | 실시간 버닝썬 김상교가 효연 말고 추가로 지목한 인물..             | 인터넷신문 |
| 제2021-74호 | 한강타임즈                  | 1월 14일 | 연예면         | '버닝썬' 최초 폭로자 김상교, 효연에 증언 요구 "너는 다 봤잖아"      | 인터넷신문 |
| 제2021-75호 | 화이트페이퍼                 | 1월 14일 | 사회/일반면      | 김상교 인스타그램의 그녀는?... 또 다른 의혹 속 진실 공방 확산       | 인터넷신문 |
| 제2021-76호 |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 1월 15일 | 연예면         | 김상교 "마약 누구냐" → 효연 "못 봤다"...그날 '버닝썬'엔 무슨 일이?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77호  | 언론사명 | 구주회(중량방송) |
|---------|--|------|-----------|
| 대상 보도   | 중량방송 2021년 01월 05일 뉴스면<br>「인간이 아닌 x x같은 자..」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 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 피고인의 사생활, 그리고 범죄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인의 성명 등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77호  | 언론사명 | 구주희(중량방송) |
|------|--|------|-----------|
| 이유   | <p>위 기사는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양부모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비록 피고인이 공적 관심이 지대한 범죄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의 신상에 관한 사항, 그 중 특히 초상이나 수술 이력 등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자세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검찰 측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및 같은 법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또한, 양부모의 친딸 성명과 양조부 및 양외조부모의 성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범죄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미성년자 및 일반인의 성명을 공개하여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과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7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78호 | 데일리연합<br>(한국뉴스신문)      | 1월 5일  | 기획특집면   | [황규하칼럼] 정인이 사건,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삶            | 인터넷신문 |
| 제2021-79호 | 톱스타뉴스<br>(TopStarNews) | 1월 7일  | 이슈면     | 정인이 양모, “죽게할 생각 없었다” 끝까지 부인…분노한 누리꾼들 신상 털이   | 인터넷신문 |
| 제2021-80호 | 뉴스인사이드                 | 1월 14일 | 연예면     | 쌘디, ‘정인이 유모차’ 영상에 분노…“살인죄 꼭 적용되게 해 주세요”      | 인터넷신문 |
| 제2021-81호 | 셀럽미디어                  | 1월 13일 | 스타면     | 쌘디, 정인이 양모 변호에 분노 “살인죄 꼭 적용되게”               | 인터넷신문 |
| 제2021-82호 | 뷰어스                    | 1월 3일  | 핫이슈면    | ‘정인아 미안해’…정인이 양부모 얼굴·신상털기 “이미 공개돼”           | 인터넷신문 |
| 제2021-83호 | 스타뉴스<br>(star news)    | 1월 3일  | 엔터테인먼트면 | 16개월 정인이 학대한 양부모, 뽀뽀 방송 출연까지.. 네티즌 공분[스타이슈]  | 인터넷신문 |
| 제2021-84호 | 인터넷 기호일보               | 1월 2일  | 핫이슈면    | 정인이 양부모 ‘논란’... 사회적 비난 증폭시킨 실제 모습 ‘핫이슈 등극’   | 인터넷신문 |
| 제2021-85호 |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 1월 3일  | 사회면     | “이미 공개됐다”... ‘정인아 미안해’부터 정인이 양부모 얼굴·신상털기     | 인터넷신문 |
| 제2021-86호 | 헤럴드POP                 | 1월 13일 | 방송면     | 쌘디,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일 “약마같은 XX들한테 자비 베풀지 말아주세요” | 인터넷신문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87호</b>  | <b>언론사명</b> | <b>(주)매일신문사</b> |
| <b>대상보도</b>    | 인터넷 매일신문 2021년 01월 05일 최신면<br>「정인이 엑스레이 다시 보니...“팔 잡고 돌리거나 내리쳤거나 멍치 반복해 때렸을 것”」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b>권고사항</b>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 및 가학적인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 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b>이유</b>      | <p>위 기사는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양부모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비록 피고인이 공적 관심이 지대한 범죄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검찰 측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및 같은 법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아이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대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게시글을 그대로 게재하여 가학적인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과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            |             |   |             |
|--|------------|------------|-------------|---|-------------|
| <b>■ 제2021-8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b> |            |            |             |   |             |
| <b>의결번호</b>                                  | <b>매체명</b> | <b>보도일</b> | <b>보도위치</b> | <b>기사제목</b>                                       | <b>매체구분</b> |
| 제2021-88호                                    | 인사이트       | 1월 6일      | 사회면         | “양부모 기름에 XX 죽여야해”...정인이 X-ray 사진 재판독한 동네병원 의사의 분노 | 인터넷신문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89호</b>                                 | <b>언론사명</b> | <b>(유)슬로우미디어</b> |
| <b>대상보도</b>    | 슬로우뉴스 2021년 01월 08일 미디어면<br>「정인이를 보내기 전에」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의결번호 | 제2021-89호   | 언론사명 | (유)슬로우미디어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장기간 확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양부모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이는 비록 피고인이 공적 관심이 지대한 범죄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받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의 신상에 관한 사항, 그 중 특히 초상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검찰 측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및 같은 법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8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90호  | 포스트쉐어 (postshare)        | 1월 13일 | NEWS PICK면      | 정인이 양모의 이모라는 인간 인스타그램 유출됨 ㄷㄷ                  | 인터넷신문 |
| 제2021-91호  | 뉴스프리존(New Free Zone)     | 1월 13일 | 사회면             | [법정에선 '정인이 사건' 첫 재판]형 가중편 무기징역도 가능..          | 인터넷신문 |
| 제2021-92호  | 뉴스1코리아                   | 1월 13일 | 포토면             | 정인이 양부모 처벌 촉구                                 | 뉴스통신  |
| 제2021-93호  | 뉴스토마토                    | 1월 14일 | 07면             | 정인이 양모 '살인죄'로 재판                              | 중앙일간지 |
| 제2021-94호  | 아시아뉴스통신                  | 1월 13일 | 국내사진면           | [아동 포토]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사형 촉구하는 시민들               | 뉴스통신  |
| 제2021-95호  | 동아닷컴                     | 1월 13일 | 사회면             | "정인이 머리 찢었지만 확대 아니다" 양부모측 진술에 법정 술렁           | 인터넷신문 |
| 제2021-96호  | 스카이데일리닷컴 (skyedaily)     | 1월 13일 | 뉴스면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분노한 시민들 "사형하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97호  | 인터넷 경향신문                 | 1월 13일 | 사회면             | [경향포토]남부지법 정문 시민단체 스케치                        | 인터넷신문 |
| 제2021-98호  | 인터넷 세계일보                 | 1월 13일 | 사회면             |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 인터넷신문 |
| 제2021-99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1월 13일 | 사회면             |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 승인              | 인터넷신문 |
| 제2021-100호 | 인터넷 KOREA JOONGANG DAILY | 1월 20일 | Social Affairs면 | [THINK ENGLISH]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 분노한 시민들 고성 | 인터넷신문 |

■ 제2021-8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1호 | 투데이안                   | 1월 13일 | 사회면      | '정인이 학대사망' 양부모 첫 재판...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        | 인터넷신문 |
| 제2021-102호 | e머니에스 (e money S)      | 1월 15일 | 종합면      | '정인이법' 민능 아냐... 보호·수사역량+사회관심 함께 가야            | 인터넷신문 |
| 제2021-103호 |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 1월 13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부 몰래 법원 출석... '신변보호' 요청에 누리꾼 '부글'        | 인터넷신문 |
| 제2021-104호 | 인터넷 경기신문               | 1월 11일 | 사회면      | 시민단체, '정인이 사건' 가해자 양부모와 서울양천경찰서 관계자 검찰 고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05호 | 뉴스컬처                   | 1월 5일  | 이슈면      | "진정서 보냈습니다" 멈추지 않는 슬픔과 분노                     | 인터넷신문 |
| 제2021-106호 | 더팩트                    | 1월 6일  | 연예일반면    | 묘소 방문 '이영애→'진정서 제출' 하지만... "정인이 미안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107호 | 스포티비뉴스                 | 1월 5일  | TV연예면    | '미쓰백'이자 '정인이'이었던 하지만, '정인이 사건'에 자필 진정서 보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08호 | 싱글리스트                  | 1월 5일  | 스타면      | 하지만, '정인이 미안해' 진정서 제출... 이영애는 직접 묘소 방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09호 | 오에스이엔(OSEN)            | 1월 5일  | 연예면      | 하지만, '정인이 미안해' 진정서 제출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 [★SHOT!] | 인터넷신문 |
| 제2021-110호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 1월 5일  | 방송·연예면   | 하지만,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제출... "우리가 바꿀게"             | 인터넷신문 |
| 제2021-111호 | 인터넷 스포츠경향              | 1월 5일  | 연예면      | 하지만,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제출 인증                       | 인터넷신문 |
| 제2021-112호 | 인터넷 스포츠동아              | 1월 5일  | 연예면      | 하지만 진정서 제출 "정인이 미안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113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1월 5일  | 경제면      | 유병재 기부·황정음 진정서 '정인이 사건'에 행동 나선 연예계            | 인터넷신문 |
| 제2021-114호 | 인터넷 중앙일보               | 1월 5일  | 사회면      | 유병재 기부·황정음 진정서 '정인이 사건'에 행동 나선 연예계            | 인터넷신문 |
| 제2021-115호 | 인터넷 천지일보               | 1월 5일  | 연예면      | 하지만 진정서... "정인이 미안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116호 | 인터넷 한국경제               | 1월 5일  | 연예면      | 하지만 '정인이 사건' 관련 자필 진정서 보내며 추모 동참              | 인터넷신문 |
| 제2021-117호 | 목장드림뉴스                 | 1월 8일  | 교계뉴스 종합면 | (동영상포함)"정인 양 부모가 교인이라는 것 참담... 대신 사죄"         | 인터넷신문 |
| 제2021-118호 | 인터넷 아주경제               | 1월 6일  | 종합면      | 정인이 양모 '정신과 치료' 병력에도 법원이 입양 허가 내줘             | 인터넷신문 |

■ 제2021-8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19호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1월 4일  | 교계교단면   | “정인 양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참담… 대신 사죄”                  | 인터넷신문 |
| 제2021-120호 | 국민뉴스               | 1월 18일 | 칼럼면     | “정인아 미안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121호 | 녹색경제신문             | 1월 3일  | 사회면     | ‘정인이 사건’ 진정서, 빠지면 안 될 필수 기재 항목부터 양식 다운로드 위치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122호 | 이투데이               | 1월 3일  | 사회면     | ‘정인이 사건’ 진정서, 양식 다운로드부터 필수 기재 항목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123호 | 인터넷 시민일보           | 1월 17일 | 오피니언면   | “정인아 미안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124호 | 연합뉴스               | 1월 13일 | 포토면     | 시민들 항의 받는 ‘정인아’ 양모 탄 호송차                        | 뉴스통신  |
| 제2021-125호 | 디지털타임스             | 1월 13일 | IT, 과학면 | [포토]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항의하는 시민들                     | 지역일간지 |
| 제2021-126호 | 노컷뉴스               | 1월 7일  | 사회면     | “어른들이 정인에게 미안…홀트 특별감사 실시해야”                     | 인터넷신문 |
| 제2021-127호 | 데일리안               | 1월 13일 | 사회면     | 〈포토〉 정인이 양부모 사형 촉구하는 시민들                        | 인터넷신문 |
| 제2021-128호 | 디스패치뉴스             | 1월 13일 | 세면      | 정인이 양부모측 “고의로 사망케 한 것 아냐…학대라 생각 못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129호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닷컴 | 1월 13일 | 사회면     | [포토] ‘정인이 사건’ 첫 재판…살인죄 적용 여부 주목                 | 인터넷신문 |
| 제2021-130호 | 인터넷 국민일보           | 1월 13일 | 시사면     | “정인이 밝은 적 없다” 부인… 방청객 “악마 같은 X”                 | 인터넷신문 |
| 제2021-131호 | 인터넷 시사경제신문         | 1월 13일 | 사회면     |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입양모 ‘살인죄’ 적용                | 인터넷신문 |
| 제2021-132호 | 텐아시아               | 1월 6일  | 연예가화제면  | 김우리 “황정음, 정인이 사건 진정서 쓴다고 찾아와”                   | 인터넷신문 |
| 제2021-133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월 9일  | 사회일반면   | “정인이 사건은 사탄의 꾀임, 교회 무너뜨리는 것”…작성자, 양모 친척(?)      | 인터넷신문 |
| 제2021-134호 | 뉴스스(NEWSIS)        | 1월 13일 | 사회면     | 검찰 “정인이 입양모 살인죄 적용”…공소장 변경 승인                   | 뉴스통신  |
| 제2021-135호 | 뉴스엔                | 1월 16일 | -       | 김부선 “‘그알’ 보고 8kg 빠져, 정인이 양모 호송버스 치고 패대기 당해”(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36호 | 마이데일리              | 1월 16일 | 연예면     | 김부선, 정인이 사건에 분노…“양모 호송버스에 눈 던지고 길에서 통곡”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37호 | 매경닷컴               | 1월 16일 | 사회면     | ‘그알’ 보고 8kg 빠진 김부선, 정인이 위해 낮선 엄마들과 한 일은         | 인터넷신문 |
| 제2021-138호 | 메트로신문              | 1월 13일 | 사회면     | [속보] 재판부, ‘정인이’ 살인 혐의 적용 공소장 변경 승인              | 인터넷신문 |

■ 제2021-8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39호 | 위키트리 (Wikitree)    | 1월 6일  | 경제면  | 정인이 7개월간 키운 위탁모, 정인이 숨졌다는 소식에 충격받아 기절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40호 | 인터넷 시사뉴스           | 1월 13일 | 사회면  | 검찰 정인이 입양모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충분”          | 인터넷신문 |
| 제2021-141호 | 조선닷컴               | 1월 16일 | 연예면  | 김부선, '정인이 사건'에 분노+통곡 "양부모, 대가를 받을 시간"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42호 | 조이뉴스24 (joynews24) | 1월 16일 | 연예면  | 김부선, '정인이 사건' 분노 "그일" 보고 체중 8kg 빠져"        | 인터넷신문 |
| 제2021-143호 | sportschosun.com   | 1월 16일 | 연예면  | 김부선, '정인이 사건'에 분노+통곡 "양부모, 대가를 받을 시간"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44호 | 오마이뉴스 (OhmyNews)   | 1월 13일 | 사회면  | '정인이' 첫 재판 온 '19년생 쌍둥이' 엄마, 토끼탈 쓰고 망치 든 이유 | 인터넷신문 |
| 제2021-145호 | 인터넷 일요시사           | 1월 13일 | 포토면  | [포토] 남부지법 앞 정인이 양부모 처벌 촉구 시위               | 인터넷신문 |
| 제2021-146호 | 쿠키뉴스               | 1월 13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앞둔 남부지법 앞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47호  | 언론사명 | (주)뉴스와사람들 |
|---------|---|------|-----------|
| 대상보도    | 뉴스프리존 2021년 01월 25일 사회면<br>「기소조차 안된 김건희, '공소시효 임박'..“악인들은 인센티브 챙겨가”」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이는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에 대한 「헌법」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아무리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사건에 관한 보도일지라도 피고인의 성명을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br>이에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4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48호 | 인터넷뉴스신문고 | 2020년 12월 23일 | 사회면   | 윤석열 장모 최은순 "혐의인정 하나" 물어도 '묵묵부답'  | 인터넷신문 |
| 제2021-149호 | 국민뉴스     | 1월 26일        | 사회종합면 | 기소조차 안된 김건희, '공소시효 임박'.. "악인들은 인센티브 챙겨가" 성난 여론.. "김건희 비리의혹 공소시효 몇일 안 남았다" "더 이상 '쇼' 부리지말고 신속 재수사 하라"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50호  | 언론사명 | (주)굿메이커스 |
|---------|---|------|----------|
| 대상보도    | 포스트쉐어(postshare) 2021년 01월 14일 뉴스&이슈면<br>「'OO 냄새 맡고 싶어..' 공개된 박원순 여비서 충격 문자 내용」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보도한 부분 및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피해자가 관련된 별건의 성폭행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보도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등 가해수법을 상세히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해당 문자내용 일부를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과 제21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5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51호 | 더퍼블릭            | 1월 15일 | 정치일반면 | 박원순 '냄새맡고 싶어', 임종석 '최재형, 윤석열과 같은 냄새'...김근식 "냄새정권이나" | 인터넷신문 |
| 제2021-152호 | 데일리안            | 1월 15일 | 전체기사면 | 박원순 문자 "냄새 맡고 싶다"...조국 어록 '조만대장경' 재조명               | 인터넷신문 |
| 제2021-153호 | 위키트리 (Wikitree) | 1월 15일 | 사회면   | "냄새 맡고 싶다" 박원순이 보낸 적나라한 문자 내용, 싹 다 공개됐다             | 인터넷신문 |

| ■ 제2021-15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54호                             | 인사이트     | 1월 14일 | 핫이슈면 | 팬티 사진 보내며 “냄새 맡고 싶다” 메시지 보낸 박원순 시장...법원 문자 내용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55호                             | 인터넷 매일신문 | 1월 15일 | 사회면  | “박원순 악몽”에 시달린 나날들...“사진 보내줘” “냄새 맡고 싶어”          | 인터넷신문 |
| 제2021-156호                             | 조선닷컴     | 1월 14일 | 사회면  | “냄새 맡고 싶어” “사진 보내줘”... 피해자가 털어놓은 박원순의 말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57호   | 언론사명 | 뉴스비전미디어 |
|---------|--|------|---------|
| 대상보도    | 뉴스비전e 2021년 01월 14일 사회면<br>「박원순 성추행 의혹, 민낯 드러나...“영원한 비밀은 없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피해자가 관련된 별건의 성폭행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보도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보도하였다.</p> <p>이는 가해자의 가해수법을 상세히 게재한 것으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5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0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58호                              | 뉴스1코리아                | 1월 15일 | 사회면   | 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판결, 100년전 나치 돌격대 수준”  | 뉴스통신  |
| 제2021-159호                              | 뉴스워치                  | 1월 19일 | 오피니언면 | [워치 칼럼] 설분신원(雪憤伸冤) 유감  | 인터넷신문 |
| 제2021-160호                              | 뉴스프리존(News Free Zone) | 1월 14일 | 사회면   | 고소인 일방 진술만으로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라는 재판부의 황당 판결문, “선거 앞두고 야당에 힘 실어주냐?” (feat. 증거는 고작 ‘텔레그램’ 한 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15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0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61호 | 데일리중앙                      | 1월 21일 | 정치면    | 여성단체,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 '암컷' '꽃뱀' 운운한 진혜원 검사 징계 촉구 | 인터넷신문 |
| 제2021-162호 | 동아닷컴                       | 1월 15일 | 사회면    |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                        | 인터넷신문 |
| 제2021-163호 | 민중의소리<br>(Voice of People) | 1월 14일 | 사회면    | '박원순 성추행' 법정서 인정됐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64호 | 배방신문                       | 1월 14일 | 사회면    | 박원순 성추행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165호 | 스냅타임                       | 1월 15일 | -      | [밀줄 짝]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 논의 재점화?             | 인터넷신문 |
| 제2021-166호 | 썬뉴스                        | 1월 21일 | 정치면    | 법무부는 '암컷', '꽃뱀' 운운하며 2차 가해하는 진혜원 검사를 해임하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167호 | 인터넷<br>서울시정일보              | 1월 14일 | 사회면    | [사회 죽음으로 문힐 뻔한 고 박원순 성추행 의혹...결국 전모 드러나      | 인터넷신문 |
| 제2021-168호 | 인터넷 서울신문                   | 1월 26일 | 사회면    | "이러지 말라' 소리 지르고 싶었다" '박원순 성추행' 인권위도 인정(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169호 | 인터넷 시사저널                   | 1월 25일 | 사회면    | 피해자 父 "박원순 극단적 행동이 2차 가해의 시작"                | 인터넷신문 |
| 제2021-170호 | 인터넷 시사포커스                  | 1월 16일 | 정치면    | 김재련 "유족이 박원순 핸드폰 없애지 않기를..."                 | 인터넷신문 |
| 제2021-171호 | 인터넷 여성신문                   | 1월 14일 | 사회면    | 법원, "박원순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 '성인지 감수성' 갖춘 판결    | 인터넷신문 |
| 제2021-172호 | 인터넷<br>파이낸셜뉴스              | 1월 15일 | 사회면    | 박원순 성추행 인정됐는데 진혜원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            | 인터넷신문 |
| 제2021-173호 | 인터넷 한겨레                    | 1월 17일 | 사회면    | [뉴스AS] 서울시 직원 성폭행 재판에 '박원순 문자' 등장한 이유        | 인터넷신문 |
| 제2021-174호 | 일간제주                       | 1월 14일 | 정치면    | 국민의힘 "법원이 인정한 박원순 성추행...아직도 '피해호소인'인가"       | 인터넷신문 |
| 제2021-175호 | 일요신문                       | 1월 14일 | 특종/단독면 | 법원 박원순 성추행 피해 인정...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 인터넷신문 |
| 제2021-176호 | e머니에스<br>(e money S)       | 1월 15일 | 사회면    | 법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 인정... "정신적 고통 컸을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177호 | 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1월 27일 | 사회면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영상 '비공개' 전환                   | 인터넷신문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178호</b>  | <b>언론사명</b> | <b>(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b>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아주경제 2021년 01월 14일 사회면<br>「조롱·비하 속 퇴색한 표현의 자유... '논란 맛집' 윤서인 과거 발언들」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             |                     |
| <b>권고사항</b>    | 대상보도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b>이유</b>      | 위 기사는 한 만화가가 '조두순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 및 그의 가족을 소재로 한 웹툰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손해를 배상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웹툰을 그대로 게재하였다.<br>이는 비록 해당 내용이 남북문제에 대한 풍자를 의도한 만화이고 성폭력 가해자가 직접 언급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웹툰의 소재로 사용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17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79호                             | 블로터      | 1월 17일 | 소사이어터면 | [SNS에세이]윤서인 '친일 막말'에...독립운동가 후손 "슬프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80호                             | 인터넷 경북신문 | 1월 22일 | 종합면    | 윤서인 논란의 웹툰은?... "성폭행했던 조두순 아저씨 놀러오셨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81호                             | 인터넷 기호일보 | 1월 14일 | 햇이슈면   | 윤서인 '누구?'... "딸아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순 아저씨 놀러오셨다" | 인터넷신문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182호</b>   | <b>언론사명</b> | <b>(주)디스패치뉴스그룹</b> |
| <b>대상보도</b>    | 디스패치뉴스 2021년 01월 22일 시면<br>「"07년생 의정부 일진 근황"…지하철에서 노인 폭행하는 10대 중학생들 (영상)」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6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             |                    |
| <b>권고사항</b>    | 대상보도 중 소년보호사건의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 사건 당사자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게재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182호  | 언론사명 | (주)디스패치뉴스그룹 |
|------|---|------|-------------|
| 이유   | <p>위 기사는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 가해자 및 일반인 피해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였다. 이는 소년 보호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것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 기준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일반인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해당 사건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제1항, 제1조제1항,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183호   | 언론사명 |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
|---------|--|------|--------------|
| 대상보도    | 인터넷 아주경제 2021년 01월 22일 사회면<br>「'경전철서 노인 폭행 중학생 의정부 산다'...경찰 수사」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였다.</p> <p>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일반인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18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84호 | 인터넷 한국일보 | 1월 22일 | 사회면  | 할머니 목 조르고 할아버지에 욕설 "중학생들 영상 진짜냐" | 인터넷신문 |

제 1 부  
시정권고현황  
제 2 부  
주요시정권고사례  
제 3 부  
시정권고전체목록  
부록

| 의결번호    | 제2021-185호  | 언론사명 | (주)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21년 01월 25일 사회면<br>「2021년 새해 첫 달부터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범죄 4가지」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특정 국적에 관한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보도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2021년 첫 달에 중국 국적 범죄자들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이 지속됐다고 전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살인사건 등 네 가지 범죄사례를 보도하였다.<br>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나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은 별건의 범죄 사건을 모아 이러한 범죄사건들이 중국인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인 양 부각하여 보도한 것으로,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 및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186호   | 언론사명 | (주)뉴스엔미디어 |
|---------|--|------|-----------|
| 대상보도    | 뉴스엔 2021년 01월 12일 연예일반면<br>「배윤정 “남자들, 여댄서와 엉클한 잠자리 로망 있다, 실제로...”(애로부부) [결정적장면]」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성인 예능토크쇼 프로그램의 내용을 갈무리하여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된 내용을 여과없이 재공표하였다.<br>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br><br>※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      |           |

■ 제2021-18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87호 | 뉴스1코리아                 | 1월 13일 | 연예면  | 권윤미 “이기형이 관계중 트월킹 시켜”…배윤정 “댄서와 잠자리 로망”            | 뉴스통신  |
| 제2021-188호 | 마이데일리                  | 1월 12일 | 연예면  | 권윤미 “♥이기형, 관계 중 트월킹 시킨 적도…신선한 충격” (‘애로부부’)        | 인터넷신문 |
| 제2021-189호 | 인터넷 세계일보               | 1월 12일 | 연예면  | “영덩이랑 골반아…” 비보이 남편, 댄서 아내에 관계 중 ‘트월킹’ 시킨 이유(애로부부) | 인터넷신문 |
| 제2021-190호 |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 1월 12일 | 연예면  | 이기형 “트월킹, 골반 예사롭지 않아”…배윤정 “잠자리와 연관 없어”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91호  | 언론사명 | 뉴스웍스(주) |
|---------|---|------|---------|
| 대상보도    | 뉴스웍스 2020년 12월 29일 연예면<br>「황하나, ○○○(○○○) 사망설+靑 국민청원에 인스타그램 삭제? “가족이 도주를 돕고 있다”」<br>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9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92호 | 디스패치뉴스 | 2020년 12월 28일 | 세면   | “남양유업 주가 타격 無”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자해→미약…인스타 화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93호   | 언론사명 | (주)매경닷컴 |
|---------|--|------|---------|
| 대상보도    | 매경닷컴 2021년 01월 07일 사회면<br>「국내 최대급 마약공급책 '바티칸 킹덤' 구속…황하나 지인 딜미」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구입 가격,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 가격,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br>이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9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94호 | 연합뉴스          | 1월 7일  | 최신기사면            | 국내 최대급 마약공급책 '바티칸 킹덤' 구속…<br>황하나 지인 딜미    | 뉴스통신  |
| 제2021-195호 | 우먼타임스         | 1월 7일  | 차별과 폭력<br>없는 세상면 | 텔레그램이 이제는 마약 유통 온상으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196호 | 인터넷<br>경남도민신문 | 1월 7일  | 사회면              | 국내 최대급 마약공급책 '바티칸 킹덤' 구속                  | 인터넷신문 |
| 제2021-197호 | 인터넷 국민일보      | 1월 7일  | 사회면              | 최대 마약 총책 '바티칸 킹덤'과 황하나의 연결고리              | 인터넷신문 |
| 제2021-198호 | 인터넷 국제신문      | 1월 7일  | 사회면              | 국내 최대급 마약 공급책 '바티칸 킹덤' 구속                 | 인터넷신문 |
| 제2021-199호 | 인터넷 서울경제      | 1월 7일  | 사회면              | 국내 최대 마약공급책 '바티칸 킹덤' 구속…<br>황하나 지인도 연루?   | 인터넷신문 |
| 제2021-200호 | 부산닷컴          | 1월 7일  | 사회면              | 경남경찰청, 필리핀 마약 국내 유통시킨 18명 구속              | 인터넷신문 |
| 제2021-201호 | 뉴스스(NEWSIS)   | 1월 7일  | 지방면              | 필리핀 마약왕 손 뺀 국내 점조직 적발…황하나 지인 검거           | 뉴스통신  |
| 제2021-202호 | 인터넷 경남신문      | 1월 7일  | 사회면              | 필리핀 '마약왕' 포함 국내 마약 공급 거대 조직 검거            | 인터넷신문 |
| 제2021-203호 | 인터넷 서울신문      | 1월 7일  | 사회면              | 황하나 지인도 일원인 '마약왕국'…공급책은 필리핀<br>사탕수수밭 살인범  | 인터넷신문 |
| 제2021-204호 | 인터넷 한국일보      | 1월 7일  | 사회면              | 역대급 마약 공급책 '바티칸 킹덤' 구속… 황하나 지인도<br>조사 예정  | 인터넷신문 |
| 제2021-205호 | 노컷뉴스          | 1월 29일 | 사건/사고면           | [단독]'마약왕 전세계'의 국내총책 '바티칸 킹덤' 정체는?         | 인터넷신문 |
| 제2021-206호 | 인터넷<br>투데이코리아 | 1월 30일 | 사회면              | 단독 '황하나·바티칸' 연결고리 추적…약쟁이들 반성문<br>수차례 제출했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07호  | 언론사명 | (주)뉴스1 |
|---------|---|------|--------|
| 대상보도    | 뉴스1코리아 2020년 12월 30일 사회면<br>「“강아지 목줄 잡고 요요처럼 빙빙”...학대 영상에 누리꾼 '분노',」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영상이 게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강아지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br>이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20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208호 | UPI뉴스통신                              | 1월 2일         | 사회면             |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용의자는 20대 여성이었다                  | 뉴스통신  |
| 제2021-209호 | 데일리안                                 | 1월 18일        | 전체기사면           | 쥐불놀이하듯 학대 당한 강아지, 결국 주인에게 돌아갔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210호 | 동아닷컴                                 | 1월 18일        | RealTime issue면 | 목줄 매달려 '빙빙' 학대 강아지, 다시 주인 품으로..왜?                | 인터넷신문 |
| 제2021-211호 | 디스패치뉴스                               | 1월 2일         | SNSFeed면        | “강아지 목줄 잡고 돌린 용의자, 남녀 아닌 20대 여성 2명”              | 인터넷신문 |
| 제2021-212호 | 인사이트                                 | 2020년 12월 31일 | 핫이슈면            | “강아지 목줄 잡고 요요처럼 빙빙 돌렸다” 포항 커플의 충격적인 강아지 학대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213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2020년 12월 30일 | 통신면             | “강아지 목줄잡고 쥐불놀이 하듯 빙빙” SNS ‘학대 커플’ 영상 충격! [IT선뽕!] | 인터넷신문 |
| 제2021-214호 | 조선닷컴                                 | 1월 18일        | 사회면             | ‘쥐불놀이’ 당한 포항 강아지, 학대한 견주가 다시 데려갔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215호 | 하핑턴포스트 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 2020년 12월 30일 | 뉴스면             |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는 학대 영상이 공개돼 분노를 사고 있다(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216호 | 위키트리 (Wikitree)                      | 2020년 12월 30일 | 사회면             | 충격적인 장면 주의... 웃으면서 강아지 ‘요요’로 만든 인간(영상)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17호   | 언론사명 | (주)조선뉴스프레스 |
|---------|--|------|------------|
| 대상보도    | 주간조선 2021년 01월 25일 12~17면<br>「[커버스토리]잔혹한 놀이터」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주간지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      |            |
| 권고사항    | 향후 보도 시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내 동물학대 문제를 다루면서 동물 학대 사진 및 자해 사진 등을 그대로 게재하고 해당 채팅방 내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동물 학대 관련 대화내용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br>이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21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218호 | 조선닷컴      | 1월 24일 | 경제면   | “관절 깨끗이 도려내니 기분 좋네” 동물판 n번방의 잔혹한 괴물들        | 인터넷신문 |
| 제2021-219호 | 인사이트      | 1월 12일 | 사회면   | 카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고양이 n번방’의 실체   | 인터넷신문 |
| 제2021-220호 | 데일리안      | 1월 7일  | 전체기사면 | 죽인 길고양이 두개골 공유하고 ‘깰깰’... “난 여자 강간 이춘재과”     | 인터넷신문 |
| 제2021-221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월 12일 | 뉴스면   | [단독]“자해 인증사진 올리던 ‘고양이 n번방’ 참여자들에게 살해 위협 받아” | 인터넷신문 |
| 제2021-222호 | 인터넷환경일보   | 1월 8일  | 환경뉴스면 | 동물자유연대, ‘고어전문’ 오픈채팅방 고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23호  | 언론사명 | (주)이름 |
|---------|---|------|-------|
| 대상보도    | 뉴스핑권 2021년 01월 11일 적색뉴스면<br>「'물지마 집단폭행'으로 처참히 죽은 갠지스강돌고래 (영상)」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      |       |

| 의결번호 | 제2021-223호   | 언론사명 | (주)이름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영상이 게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인도에서 남성들이 도끼와 막대기 등으로 돌고래를 내리쳐 죽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br>이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224호   | 언론사명 | (주)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21년 01월 10일 국제면<br>「“중국 식당서 마라탕 포장해 여친 가져다줬는데 죽은 쥐 사체가 나왔습니다” (영상)」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사진이 게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중국 내 음식점 마라탕에서 쥐 사체가 나온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br>이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225호   | 언론사명 | 이데일리(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이데일리 2021년 01월 10일 정책면<br>「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선별지급이 바람직”(상보)」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225호   | 언론사명 | 이데일리(주) |
|------|--|------|---------|
| 이유   | <p>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방식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22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226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1월 10일 | 경제면                 | 홍남기 부총리 “4차 지원금 논의 이른다...선별지원이 바람직” | 인터넷신문 |
| 제2021-227호 | 조선비즈       | 1월 10일 | 정책면                 | 국민지원금에 홍남기 反旗...“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    | 인터넷신문 |
| 제2021-228호 | 코리아 아이티타임스 | 1월 11일 | People & Interview면 | 홍남기 부총리, “국민 지원금에 반대”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29호  | 언론사명 | (주)세계일보 |
|---------|---|------|---------|
| 대상보도    | 인터넷 세계일보 2021년 01월 15일 사회면 「법조계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묶은 검찰 논리 수용 결정적」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22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230호 | 세계일보 | 1월 15일 | 05면   | 文, 신년회견서 '李·朴 사면' 언급 가능성          | 중앙일간지 |
| 제2021-231호 | 데일리안 | 1월 14일 | 전체기사면 | 靑,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오늘 사면 관련 입장 낼까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32호   | 언론사명 | (주)경향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경향신문 2021년 01월 23일 사회면<br>「이재용 선고, 다시 볼 포인트 3가지」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233호   | 언론사명 | (주)세계비즈니스포츠월드 |
|---------|--|------|---------------|
| 대상보도    | 세계비즈 2021년 01월 04일 의약면<br>「○○○병원 확장이전... 고객 편의성 높이고, 환자중심 치료 강화」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성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의 이름, 의료인명, 위치 정보, 전경 사진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br>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부 록

**■ 제2021-23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234호 | 수도권지역신문              | 2020년 12월 9일  | 통합뉴스면    | ○○○한의원 ○○○ 원장 전통 침법 코침 전문<br>한의원으로 서울시 우리동네 한의원 선정          | 인터넷신문 |
| 제2021-235호 | 수도권지역신문              | 2020년 12월 14일 | 통합뉴스면    | ○○한의원 ○○○ 원장 신경정신과 특화 한의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236호 | 엠디 데일리<br>(MD Daily) | 1월 6일         | MDFOCUS면 | ○○○피부과, 29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 원장의<br>피부 맞춤 진료                 | 인터넷신문 |
| 제2021-237호 | 수도권지역신문              | 2020년 12월 14일 | 통합뉴스면    | ○○○한의원 ○○○ 대표원장 CT 촬영을 통한 코 치료<br>전문 한의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238호 | 수도권지역신문              | 2020년 12월 9일  | 통합뉴스면    | ○○한의원 한의학박사 ○○○ 대표원장 향문질환에<br>특화된 전문 한의원으로서 서울시 우리동네 한의원 선정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39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트리 2021년 02월 21일 엔터면<br>「우리 이혼했어요」 나온 남자, 적나라한 카톡 내용 공개됐다 (+캡처),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 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특정 유튜브버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여교사가 과거에 불륜 관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공개한 두 사람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하였다. 특히 해당 내용은 두 사람 간의 성적 교섭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이른바 내밀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그가 국가대표를 지내는 등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고 그의 행동이 공중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내밀영역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23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240호                             | 뉴스1코리아                               | 2월 25일 | 연예면     | 김용호 “방울뱀 김동성 여교사에 스폰받고 불륜”…충격적 대화 내용 공개                   | 뉴스통신  |
| 제2021-241호                             | 인터넷 전기신문                             | 2월 26일 | -       | 김동성, 불륜·스폰서 폭로 터져…깜짝 “성적 대화·음란한 부분 빼고 이 정도”               | 인터넷신문 |
| 제2021-242호                             | 허핑턴포스트 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 2월 25일 | 엔터테인먼트면 | “그렇게 선물해 주면 너 못 버려”: 유튜브 김용호가 폭로한 김동성 불륜·스폰서 카톡은 몹시 충격적이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243호                             |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 2월 24일 | 연예면     | 김용호 “방울뱀 김동성 스폰 폭로”…과거 고가선물 요구 카톡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244호                             | 인터넷 이데일리                             | 2월 25일 | 사회일반면   | “김동성, 여교사에 스폰받고 불륜”…유튜버, 카톡 내용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245호                             | 뉴스웍스                                 | 2월 22일 | 연예면     | 김용호, 김동성-여교사 불륜 증거 폭로하며 카톡 내용 공개…“차·시계 등 고가 물건 요구”        | 뉴스통신  |
| 제2021-246호                             | 인터넷 매일신문                             | 2월 24일 | 사회면     | [단독] 김동성 외도 인정…소장에서 드러난 거짓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47호  | 언론사명 | (주)경향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스포츠경향 2021년 02월 23일 연예면 「[스경X이슈]‘카톡 공개’ 김동성 VS 전처, 본격 진흙탕 싸움」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 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전처와 양육비 지급 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가 공개한 전처 및 미성년 자녀와의 메시지 대화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비록 그가 국가대표를 지내는 등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고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사안이 공중의 관심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가 일반적으로 공개한 사적인 대화내용을 게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전처와 미성년 자녀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24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248호 | UPI뉴스통신            | 2월 23일 | 연예면        | 김동성, 전처·아들과 카톡 공개 “양육비 지급 위해 노력중”                     | 뉴스통신  |
| 제2021-249호 | 뉴스인사이드             | 2월 24일 | 사회면        | 김동성, 아들-전처와 나는 카톡 대화 공개..일파만파                         | 인터넷신문 |
| 제2021-250호 | 데일리스포츠월드           | 2월 23일 | 연예일반면      | “참고 있는데 XX이야”...김동성, 전처·아들과 대화 내역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251호 | 디스패치뉴스             | 2월 23일 | SNSFeed면   | “아빠 집에서 같이 살래?” 아들-전처와의 카톡 메시지 공개한 김동성                | 인터넷신문 |
| 제2021-252호 | 마이데일리              | 2월 25일 | 연예면        | 김동성, 전처와 나는 메시지 또 공개...“돈 들어와야 양육비 주지”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253호 | 매일안전신문             | 2월 23일 | 연예·스포츠면    | ‘우리 이혼했어요’ 김동성 연인 인민정 “왜 오빠가 욕을 먹어야 하지?”...전처와의 카톡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254호 | 미디어펜 (Mediapen)    | 2월 26일 | 연예·스포츠면    | 김동성, 전처 카톡 공개...양육비 요청에 “감정싸움 아닌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 인터넷신문 |
| 제2021-255호 | 스타뉴스 (star news)   | 2월 23일 | 엔터테인먼트면    | 김동성, 전 아내 카톡 공개 “양육비 XX 안주면 끝까지 받아낸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256호 | 스포티비뉴스             | 2월 25일 | TV연예면      | “금메달은 돌려달라”...김동성, 양육비 달라는 전처에 ‘현명’ 당부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257호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닷컴 | 2월 23일 | 문화·연예·스포츠면 | ‘인민정♥ 김동성, 전처·아들과 나는 메시지 공개 “양육비 지급 위해 노력 중”          | 인터넷신문 |
| 제2021-258호 | 엑스포츠뉴스             | 2월 23일 | 국내연예면      | 김동성, 전처·아들과의 대화 공개...“이 XXX야” 욕설 난무 [★해시태그]           | 인터넷신문 |
| 제2021-259호 | 엠케이스포츠 (MK스포츠)     | 2월 23일 | -          | ‘인민정♥ 김동성, 전처·아들과 나는 카톡 공개... 욕설 난무                   | 인터넷신문 |
| 제2021-260호 | 인터넷 국민일보           | 2월 23일 | 시사면        | “엄마 안 오면 아빠랑 살래” 아들 카톡 공개한 김동성                        | 인터넷신문 |
| 제2021-261호 | 인터넷 매일신문           | 2월 23일 | 최신면        | 김동성, 전처·아들과의 대화 공개...“엄마 계속 집에 안오면 아빠랑 살래”            | 인터넷신문 |
| 제2021-262호 | 인터넷 서울신문           | 2월 23일 | 연예면        | ‘배드퍼더스’ 김동성 “양육비 노력했다”...아들·전처 대화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263호 | 인터넷 세계일보           | 2월 23일 | 연예면        | “엄마 집에 안 오면 아빠랑 살 것”...김동성, 여친 인민정 SNS로 자 카톡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264호 | 인터넷 스포츠한국          | 2월 23일 | 연예면        | 김동성, 아들 카톡 공개 “엄마 안 오면 아빠랑 살려고”...전처, 최근 대화 공개하며 반박   | 인터넷신문 |

■ 제2021-24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265호 | 인터넷 아주경제                             | 2월 23일 | 연예면     | 김동성, 전부인이 보낸 '장시호 기사 내보낸다' 협박성 카톡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266호 | 인터넷 이데일리                             | 2월 23일 | 사회일반면   | 김동성, 아들과 카톡 공개...“엄마 그 남자기”                 | 인터넷신문 |
| 제2021-267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2월 23일 | 사회면     | 김동성, 아들 카톡 공개...“엄마 계속 집 안오면 아빠랑 살래”        | 인터넷신문 |
| 제2021-268호 | 인터넷 중앙일보                             | 2월 23일 | 사회면     | 김동성, 아들 카톡 공개...“엄마 계속 집 안오면 아빠랑 살래”        | 인터넷신문 |
| 제2021-269호 | 인터넷 한국경제                             | 2월 23일 | 연예면     | 김동성, 전처·아들 카톡 공개...폭로전 된 양육비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21-270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2월 23일 | 사회일반면   | “아빠랑 살래?” “엄마 계속 집에 안 오면” 김동성, 아들 카톡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271호 | 조선닷컴                                 | 2월 23일 | 연예면     | 김동성, 전처·아들 카톡 공개... “양육비 XX 안주면 끝까지 받아낸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272호 | 조선비즈                                 | 2월 23일 | 사회면     | 김동성, 아들과 대화 공개...“양육비 지급 위해 노력 중”           | 인터넷신문 |
| 제2021-273호 | 키즈맘                                  | 2월 23일 | 전체뉴스면   | 김동성이 공개한 전처의 카톡 “상간녀 기사 내보낼테니...”           | 인터넷신문 |
| 제2021-274호 | 텐아시아                                 | 2월 23일 | 연예가화제면  | ‘인민정♥ 김동성, 전처·아들 카톡 공개...연이은 폭로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275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2월 23일 | -       | [영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논란 됐던 김동성 전처와 카톡 내용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276호 | 하핑턴포스트 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 2월 25일 | 엔터테인먼트면 | 김동성이 이번엔 “금메달 돌려달라”면서 전처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277호 | e머니에스 (e money S)                    | 2월 23일 | 연예면     | “양육비 XX!”... ‘인민정♥ 김동성 전처 카톡 공개, 욕설 난무      | 인터넷신문 |
| 제2021-278호 | OBC 더원방송                             | 2월 23일 | 일반연예면   | “김동성”, 인민정 전처·아들 카톡 공개...연이은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279호 | sportschosun.com                     | 2월 23일 | 연예면     | 김동성, 전처·아들 카톡 공개 “양육비 XX 안주면 끝까지 받아낸다”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280호 | TV Daily (티브이데일리)                    | 2월 23일 | -       | 김동성, 인민정 SNS 통해 전처·아들과의 대화 공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81호  | 언론사명 | 김도성(저스트저널) |
|---------|---|------|------------|
| 대상보도    | 저스트저널 2021년 01월 29일 김도성의 현장출동면<br>「법치국가, ‘범인’은 있는데 “죄가 없다”... ‘사법 신뢰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과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아들 초상을 공표하였다.</p> <p>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조국 전 장관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사법부 신뢰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19조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282호   | 언론사명 | (주)조선일보사 |
|---------|--|------|----------|
| 대상보도    | 조선닷컴 2021년 02월 15일 사회면<br>「고개 숙인 인천 어린이집 학대 교사들...영장심사 출석」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피해 아동의 이름이 노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인천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 아동의 이름을 노출하였다.</p> <p>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해당 아동의 이름이 공개됨으로써 문제의 보육교사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 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등 미성년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          |

■ 제2021-28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283호 | 인터넷 서울신문 | 2월 15일 | 사회면  | ‘아동학대’ 인천 보육교사 2명 구속심사 전 피해 부모에 선물·사과(종합)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84호   | 언론사명 | (주)디스패치뉴스그룹 |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21년 01월 24일 시면<br>「“내가 XX 노리개야?”…BJ 유희, 짬구와 나는 카톡 전문 내용 폭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 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모 여성 BJ(방송자키)가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남자친구 BJ(방송자키)와의 메시지 대화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필요 이상의 욕설 등 언어폭력이 담긴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게재하였다.<br>이는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공개한 두 사람 간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여과없이 게재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대방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언어폭력을 필요이상으로 드러냄으로써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 및 제16조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285호   | 언론사명 | (주)굿메이커스 |
|---------|--|------|----------|
| 대상보도    | 포스트쉐어(postshare) 2021년 02월 17일 뉴스 & 이슈면<br>「오늘 정인이 재판에 나온 어린이집 원장이 폭로한 내용」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과 범죄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양부모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비록 피고인이 공적 관심이 지대한 범죄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더군다나 |      |          |

| 의결번호 | 제2021-285호   | 언론사명 | (주)굿메이커스 |
|------|--|------|----------|
|      | <p>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검찰 측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및 같은 법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양부모의 친딸 성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범죄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미성년자의 성명을 공개한 것으로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1조1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286호   | 언론사명 | (주)아시아경제 |
|---------|--|------|----------|
| 대상보도    | <p>아시아경제닷컴 2021년 02월 17일 일반면<br/>「오늘 정인이 사건 2차 공판, 다시 모인 엄마들...양부, 신변보호 요청」 제하의 보도</p>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p>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p>   |      |          |
| 이유      | <p>위 기사는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장기간 확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양부모의 성명을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비록 피고인이 공적 관심이 지대한 범죄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검찰 측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및 같은 법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          |

| ■ 제2021-28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287호                             | 내일신문       | 2월 16일 | 20면   | ‘정인이 살려내래!’                            | 중앙일간지 |
| 제2021-288호                             | 인터넷 시사저널   | 2월 17일 | 사회면   | ‘정인이 사건’ 증인신문 진행...“살인죄로 엄벌” 시위        | 인터넷신문 |
| 제2021-289호                             |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 2월 17일 | 정치사회면 | 정인이 어린이집 원장 “정인이, 사망 전날 모든걸 포기한 듯 보였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290호                             | 뉴스핌통신      | 2월 17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부모 엄벌 촉구 피켓 시위                    | 뉴스통신  |

| 의결번호    | 제2021-291호  | 언론사명 | (주)더뉴스그룹 |
|---------|---|------|----------|
| 대상보도    | UPI뉴스통신 2021년 01월 06일 사회면<br>「정인이 학대한 양부모는 모두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개인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양부모의 학력 등 사적인 사항을 공표하였다.<br>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공적 관심이 지대한 범죄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등을 공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          |

■ 제2021-29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292호 | 인터넷<br>크리스천투데이 | 1월 25일 | 오피니언/<br>칼럼면 | 정인의 비극... 그리고 바로 왕과 해로 왕에게<br>죽임당한 아기들 | 인터넷신문 |
| 제2021-293호 | 인터넷<br>한국기독교공보 | 1월 11일 | 칼럼/제언면       | 더이상 '괴물'은 되지 말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294호 | 팬앤드마이크         | 1월 6일  | 사회면          | 정인이를 입양한 진짜 이유, 양부모는 악마였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295호  | 언론사명 | (주)굿메이커스 |
|---------|---|------|----------|
| 대상보도    | 포스트웨어(postshare) 2021년 02월 09일 뉴스 & 이슈면<br>「자.살한 '유 퀴즈' ○급 공무원 ○○○ 주무관 현재 인스타 상황..」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초상, 성명, 나이, 직장, 직위, 직급, 부서, 공무원 시험 최연소 합격 이력 등을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29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7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296호                              | 인터넷 충청리뷰            | 2월 9일  | 사회면   | [속보]숨진 채 발견된 ○급 ○○○미술관 공무원, 유퀴즈 출연 사실 확인               | 인터넷신문 |
| 제2021-297호                              | 국제뉴스                | 2월 9일  | 이슈면   | [속보]유퀴즈 공무원 “숨진 채 발견된 ○급 공무원 맞다”                       | 뉴스통신  |
| 제2021-298호                              | 뉴스스 (NEWSIS)        | 2월 9일  | 문화일반면 | ○○○미술관 “사망 공무원, ‘유퀴즈’ 출연자 맞아”                          | 뉴스통신  |
| 제2021-299호                              | 인터넷 매일신문            | 2월 9일  | 사회면   | ○○○미술관 근무 ○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지난해 유퀴즈 출연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00호                              |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 2월 9일  | 사회면   | 숨진 채 발견된 ○○시 ○급 공무원..“유퀴즈’출연자 맞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01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2월 9일  | 엔터면   | ‘유 퀴즈’ 출연한 ○급 공무원 사망설에 “진상 규명하러”                       | 인터넷신문 |
| 제2021-302호                              | 인터넷 주택건설신문          | 2월 9일  | 문화면   | ○○○미술관 “사망 공무원, ‘유퀴즈’ 출연자 맞아”                          | 인터넷신문 |
| 제2021-303호                              | 인터넷 중앙일보            | 2월 9일  | 방송면   | ‘유 퀴즈’ 출연한 ○급 공무원 사망설에 “진상 규명하러”                       | 인터넷신문 |
| 제2021-304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2월 10일 | 사회면   | 숨진 채 발견된 ○○시 ○급 공무원..“유퀴즈’ 출연자 맞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05호                              | 족구뉴스                | 2월 9일  | 사회면   | ○○○미술관 ○급 공무원 사망이유? ‘유퀴즈’ ○ 주무관 맞아? ‘상대방도 평생 잘리지 않아..’ | 인터넷신문 |
| 제2021-306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2월 11일 | 이슈면   | ‘유퀴즈’, 최연소 ○급 공무원→여자배구선수 편 영상 ‘삭제’                     | 인터넷신문 |
| 제2021-307호                              | e머니에스 (e money S)   | 2월 9일  | -     | ○○○미술관 “사망 ○급 공무원, ‘유퀴즈’ 출연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308호                              | OBC 더원방송            | 2월 9일  | -     | ‘유 퀴즈’ 출연한 ○급 공무원 사망설                                  | 인터넷신문 |
| 제2021-309호                              | sportschosun .com   | 2월 9일  | 연예면   | ○○○미술관 ○급 공무원 사망, 티빙 외 다시보기 삭제-> 애도물결[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10호                              | 뉴스인사이드              | 2월 10일 | 사회면   | 사망한 ○○시 ○급 공무원, “‘유퀴즈’출연자” 다시보기 영상 삭제                  | 인터넷신문 |

■ 제2021-29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311호 | 뉴스포인트<br>(News Point)  | 2월 10일 | 전체기사면      | ○○○미술관 ○급 공무원 사망 소식에 SNS글 재조명...“약 먹어야”             | 인터넷신문 |
| 제2021-312호 | 데일리안                   | 2월 9일  | -          | ○○○미술관 ○급공무원 “저 사람도 안잘려” 유퀴즈 출연 영상 삭제(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13호 | 브레이크뉴스<br>(break news) | 2월 9일  | 연예면        | 유퀴즈 ‘최연소 ○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 ○○미술관 측 “tvN 출연자 맞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14호 | 아시아타임즈                 | 2월 9일  | 정치사회면      | [네티즌을백] ‘유퀴즈 출연’ ○급 공무원 사망에...“괴롭힘 조사” vs “몰아가지 말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315호 | 아이뉴스24<br>(inews24)    | 2월 9일  | 사회면        | 사망한 ○○시 20대 ○급 공무원, ‘유퀴즈’ 출연자였다...“최연소 합격”          | 인터넷신문 |
| 제2021-316호 | 위키트리<br>(Wikitree)     | 2월 9일  | 사회면        | 사망한 ○○년생 최연소 ○급 공무원...유퀴즈 출연 당시 ‘이런 발언’ 남겼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17호 | 인터넷<br>데일리한국           | 2월 9일  | 연예면        | ○○○미술관 ○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누리꾼 애도 “안타까워”                | 인터넷신문 |
| 제2021-318호 | 인터넷<br>스포츠서울           | 2월 9일  | -          | “추측이 사실로”...○급 최연소 공무원 사망, 누리꾼 애도 물결(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19호 | 인터넷<br>스포츠한국           | 2월 10일 | 연예면        | 유퀴즈 ○급 공무원, 안타까운 심경글 “약 먹어야 잠들어”                    | 인터넷신문 |
| 제2021-320호 | 조이뉴스24<br>(joynews24)  | 2월 9일  | 연예면        | ‘유퀴즈’ 출연 ○급 공무원 사망...포털 다시보기 영상 삭제                  | 인터넷신문 |
| 제2021-321호 | 텐아시아                   | 2월 9일  | 연예가<br>화제면 | ‘유 퀴즈’ 출연한 ○급 공무원 사망설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22호 | 헤럴드POP                 | 2월 9일  | 방송면        | [단독]‘유퀴즈’ ○급 공무원 사망설, 다시보기 영상 삭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323호  | 언론사명 | (주)조선일보사 |
|---------|---|------|----------|
| 대상 보도   | 조선닷컴 2021년 02월 05일 연예면<br>「BJ 메텔, 사망 원인은 조울증=자살? 마지막 유언 들어보니」 제하의 보도  |      |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      |          |
| 권고 사항   | 대상 보도 중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내용과 자살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 등을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BJ(방송자키)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자살 전 마지막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게재하고 영상 내용을 보도하였다.<br>이는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자살 전 심경 및 자살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경위 등을 공표한 것으로 자살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거나 모방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324호  | 언론사명 | (주)뉴스1 |
|---------|---|------|--------|
| 대상 보도   | 뉴스1코리아 2021년 02월 05일 연예면<br>「BJ 메텔, 3일 사망...마지막 영상서 “그동안 많이 사랑해줘 감사”」 제하의 보도  |      |        |
| 매체 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      |        |
| 권고 사항   | 대상 보도 중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내용과 자살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 등을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BJ(방송자키)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자살 전 마지막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게재하고 영상 내용을 보도하였다.<br>이는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자살 전 심경 및 자살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경위 등을 공표한 것으로 자살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거나 모방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32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8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325호 | 뉴스웍스                | 2월 5일 | 연예면      | '손목엔 타이핑 흔적' BJ 메텔(○○○)·단팽이·○○○, 연이은 사망 비보…플랫폼 제도 개선 없나 | 뉴스통신  |
| 제2021-326호 | UPI뉴스통신             | 2월 5일 | 연예면      | BJ메텔 ○○○ 사망…마지막 영상엔 “사랑해주셔서 감사했다”                       | 뉴스통신  |
| 제2021-327호 | 노컷뉴스                | 2월 5일 | 사회면      | [이슈시계] 'BJ메텔' ○○○ 비보…마지막 영상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21-328호 | 농업경제신문              | 2월 5일 | 찾아슈연     | BJ 메텔 사망… Good bye 마지막 영상, 팬들 '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21-329호 | 뉴스엔                 | 2월 9일 | 연예면      | 단팽이 이어 BJ메텔 비보, 1인방송 사각지대 대책없나[이슈와치]                    | 인터넷신문 |
| 제2021-330호 | 뉴스인사이드              | 2월 5일 | 사회면      | BJ 메텔 ○○○, 갑작스런 사망 소식…“코로나로 조문은 받지 않기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331호 | 뉴스컬처                | 2월 4일 | 이슈면      | BJ메텔 사망, 유튜브 통해 마지막 인사 전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32호 | 더팩트                 | 2월 5일 | 연예면      | ○○○(BJ메텔) 사망…“무기력이 날 지배, 지쳐가”                           | 인터넷신문 |
| 제2021-333호 | 데일리스포츠월드            | 2월 5일 | 이슈면      | 'BJ메텔' ○○○, 3일 세상 떠나…마지막 영상서 “점점 지쳐갔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34호 | 데일리안                | 2월 4일 | 연예면      | BJ메텔 돌연 사망 소식, 마지막 유튜브 영상에 남긴 심경                        | 인터넷신문 |
| 제2021-335호 | 동아닷컴                | 2월 5일 | 사회면      | BJ메텔(○○○) 사망, 유튜브 마지막 영상엔 “감사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36호 | 디스패치뉴스              | 2월 4일 | SNSFeed면 | BJ 메텔, 어제(3일) 사망…향년 36세                                 | 인터넷신문 |
| 제2021-337호 | 마이데일리               | 2월 5일 | 연예면      | BJ 메텔(○○○), 3일 사망…“황망한 마음”                              | 인터넷신문 |
| 제2021-338호 | 매경닷컴                | 2월 5일 | 사회면      | BJ메텔 마지막 영상 “자는 것 가장 행복, 스스로 고람…모두에게 미안”                | 인터넷신문 |
| 제2021-339호 | 매일안전신문              | 2월 4일 | 연예·스포츠면  | BJ 메텔, 유튜브 통해 전한 '마지막 인사'                               | 인터넷신문 |
| 제2021-340호 | 미디어펜 (Mediapen)     | 2월 5일 | 연예·스포츠면  | BJ 메텔 사망…유튜브 마지막 영상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good bye’             | 인터넷신문 |
| 제2021-341호 | 부산닷컴                | 2월 5일 | -        | [유튜브:NOW] '사망' BJ메텔, '업로드 예약한 마지막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342호 | 브레이크뉴스 (break news) | 2월 5일 | 연예면      | BJ 메텔(○○○), 3일 사망..마지막 인사 영상서 “무기력이 날 지배했다”             | 인터넷신문 |

| ■ 제2021-32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8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343호                              | 블로터                 | 2월 5일 | 아프리카TV면 | [들썩온라인]별이 된 'BJ메텔', 유튜브로 전한 진심                 | 인터넷신문 |
| 제2021-344호                              | 세이프타임즈              | 2월 5일 | 사건·사고면  | BJ 메텔 마지막 영상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굿 바이”                | 인터넷신문 |
| 제2021-345호                              | 스타뉴스<br>(star news) | 2월 4일 | 엔터테인먼트면 | BJ 메텔, 사망 전 영상 등장 “조울증..무기력이 날 지배”             | 인터넷신문 |
| 제2021-346호                              | 스타데일리뉴스             | 2월 5일 | 피플면     | BJ 메텔, 3일 사망... 마지막 영상 눈길 “그동안 감사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47호                              | 시빅뉴스                | 2월 5일 | 사회면     | BJ메텔, 단팥이, ○○○... 성희롱·스토킹·악플에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348호                              | 싱글리스트               | 2월 5일 | 연예면     | BJ 메텔(○○○), 마지막 영상 공개 “코로나 끝날 생각이 없더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349호                              | 아시아경제닷컴             | 2월 5일 | 연예뉴스면   | BJ메텔 사망 비보...“그동안 감사했습니다. Good bye”            | 인터넷신문 |
| 제2021-350호                              | 아시아타임즈              | 2월 5일 | 연예면     | “이런 결정을 내려 미안하다”...BJ메텔, 마지막 영상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21-351호                              | 아이뉴스24<br>(inews24) | 2월 5일 | 사건사고면   | BJ메텔, 3일 사망 “이런 결정 죄송·사랑해줘 감사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52호                              | 엠케이스포츠<br>(MK스포츠)   | 2월 5일 | 연예면     | BJ메텔(○○○) “무기력이 날 지배했다”...사망 비보에 추모 물결(전문)[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53호                              | 오에스이엔<br>(OSEN)     | 2월 5일 | 연예면     | BJ 메텔, 사망 원인은 조울증=자살? 마지막 유언 들어보니(종합)[Oh!센 이슈] | 인터넷신문 |
| 제2021-354호                              | 위키트리<br>(Wikitree)  | 2월 4일 | 엔터면     | 사망 소식 전해진 BJ 메텔, 실시간 유튜브에 ‘예약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355호                              | 이투데이                | 2월 4일 | 사회면     | BJ메텔 사망,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조울증 깊어 “나는 너무 지쳤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56호                              | 인사이트                | 2월 4일 | 핫이슈면    | 故 BJ 메텔이 유튜브에 ‘업로드 예약’한 마지막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357호                              | 인터넷 국민일보            | 2월 5일 | 시사면     | BJ메텔 사망 후 공개된 마지막 영상 “Good bye”                | 인터넷신문 |
| 제2021-358호                              | 인터넷<br>굿모닝경제        | 2월 5일 | 사회·문화면  |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BJ메텔, 사망 전 마지막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359호                              | 인터넷<br>데일리한국        | 2월 5일 | 연예면     | BJ 메텔, 유튜브 마지막 영상에서 남긴 말 “감사했습니다. 굿바이”         | 인터넷신문 |
| 제2021-360호                              | 인터넷<br>부산파이낸셜뉴스     | 2월 5일 | 문화면     | ‘사망’ ○○○ 애도 “메텔처럼 여러 곳 여행하길”                   | 인터넷신문 |

■ 제2021-32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8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361호 | 인터넷 서울경제              | 2월 5일 | 사회면     | BJ메텔(○○○) “행복하지 않아...그만하고 싶다”<br>유튜브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362호 | 인터넷 서울신문              | 2월 5일 | 사회면     | BJ메텔, 사망 전 하고 싶었던 말(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63호 | 인터넷 세계일보              | 2월 5일 | 사회면     | BJ메텔(○○○), 마지막 영상 남기고 지난 3일 사망<br>“모두에게 미안”      | 인터넷신문 |
| 제2021-364호 | 인터넷<br>스포츠경향          | 2월 5일 | 연예면     | [종합] BJ 메텔 사망, 마지막 영상 ‘그동안 감사했습니다.<br>good bye’  | 인터넷신문 |
| 제2021-365호 | 인터넷<br>스포츠서울          | 2월 5일 | 연예면     | BJ메텔, 마지막 영상 예약 업로드 “그동안 감사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66호 | 인터넷 아주경제              | 2월 5일 | 연예면     | BJ메텔 사망 전 “그동안 감사했다” 마지막 인사                      | 인터넷신문 |
| 제2021-367호 | 팩트경제신문                | 2월 4일 | 엔터테인먼트면 | BJ메텔 사망,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 인터넷신문 |
| 제2021-368호 | 인터넷 이데일리              | 2월 5일 | 문화일반면   | BJ 메텔(○○○), 사망 전 남긴 말                            | 인터넷신문 |
| 제2021-369호 | 인터넷<br>일간스포츠          | 2월 5일 | 엔터면     | BJ 메텔, 사망 후 올린 예약 영상 보니...“색시한 쪽으로<br>어그로, 죄송”   | 인터넷신문 |
| 제2021-370호 | 인터넷 충청리뷰              | 2월 5일 | 방송·연예면  | BJ메텔로 활동하던 ○○○, 사망소식에 SNS 마지막<br>활동 ‘이목집중’       | 인터넷신문 |
| 제2021-371호 | 인터넷<br>파이낸셜뉴스         | 2월 5일 | 문화면     | ‘사망’ ○○○ 애도 “메텔처럼 여러 곳 여행하길”                     | 인터넷신문 |
| 제2021-372호 | 인터넷 한국경제              | 2월 5일 | 사회면     | BJ메텔 ○○○ 지난 3일 사망 “Good bye”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73호 | 인터넷 한국일보              | 2월 5일 | -       | BJ메텔(○○○) 측 “3일 사망, 황망한 마음...조문은 받지<br>않기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374호 | 인터넷<br>헤럴드경제          | 2월 4일 | 사회일반면   | 유튜브에 올라온 ‘BJ 메텔’ 영상 보니...“요즘 무기력이<br>나를 지배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375호 | 인터넷풋볼                 | 2월 5일 | 연예면     | BJ메텔, 사망... 마지막 영상에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76호 | 조선비즈                  | 2월 5일 | 시사면     | BJ메텔 3일 사망... 마지막 영상서 “모두에게 미안”                  | 인터넷신문 |
| 제2021-377호 | 조이뉴스24<br>(joynews24) | 2월 4일 | 연예면     | BJ 메텔, 마지막 영상 공개 “무기력이 날 지배...이런 결정<br>죄송”       | 인터넷신문 |
| 제2021-378호 | 쿠키뉴스                  | 2월 5일 | 연예면     | BJ 메텔 사망 전 유튜브에 남긴 마지막 심경                        | 인터넷신문 |

■ 제2021-32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8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379호 | 텐아시아  | 2월 5일 | 연예가화제면     | BJ메텔(○○○), 3일 사망...마지막 남긴 영상 보니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80호 | 톱스타뉴스<br>(TopStarNews)                        | 2월 5일 | 연예면        | “합방 후 고민 털어냈다”...BJ창현, 故 BJ메텔 향한 안타까운 추모      | 인터넷신문 |
| 제2021-381호 | 펜앤드마이크  | 2월 5일 | 연예·문화·스포츠면 | BJ 메텔 3일 사망...마지막 영상서 “지는 것이 가장 행복, 그만하고 싶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82호 | 포스트쉐어<br>(postshare)                          | 2월 5일 | NEWSPICK면  | BJ메텔 사망 전 마지막 유언 영상에서 밝힌 슬픈 내용                | 인터넷신문 |
| 제2021-383호 | 핀포인트뉴스  | 2월 5일 | 라이프면       | BJ메텔 ○○○ 사망...향년 36세                          | 인터넷신문 |
| 제2021-384호 | 한강타임즈   | 2월 5일 | 연예면        | ‘BJ메텔’ ○○○, 지난 3일 사망 “점점 지쳐가, 그동안 감사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85호 | 허핑턴포스트<br>코리아(The<br>Huffingtonpost<br>Korea) | 2월 5일 | 엔터테인먼트면    | 세상 떠난 BJ메텔(○○○)은 마지막 영상에서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86호 | enews24                                       | 2월 5일 | -          | b메텔, 2일 휴방→3일 사망..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good bye”(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87호 | e머니에스<br>(e money S)                          | 2월 6일 | 스타면        | BJ메텔 사망, 유튜브 마지막 영상 “상처가 많다. 미안하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388호 | MTN(엠티엔)                                      | 2월 5일 | 연예면        | BJ 메텔 사망,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남긴 말          | 인터넷신문 |
| 제2021-389호 | OBC 더원방송                                      | 2월 5일 | 연예/스포츠면    | BJ 메텔 사망, 마지막 영상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good bye’       | 인터넷신문 |
| 제2021-390호 | sportschosun.com                              | 2월 5일 | 연예면        | BJ메텔 ○○○, 사망 직전 눈물 영상 최초 공개[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91호 | STN SPORTS                                    | 2월 5일 | 연예면        | BJ메텔, 3일 사망...마지막 영상서 “오즘 무기력이 나를 지배”         | 인터넷신문 |
| 제2021-392호 | TV Daily<br>(티브이데일리)                          | 2월 4일 | 방송면        | BJ 메텔 사망, 마지막 인사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 [종합]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393호  | 언론사명 | 김경민(족구뉴스) |
|---------|---|------|-----------|
| 대상보고    | 족구뉴스 2021년 01월 25일 연예면<br>「송유정 사망이유는 무엇?, 측근..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눈물」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고 중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배우가 자살한 사건을 전하면서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동기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2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39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394호 | 오에스이엔 (OSEN) | 1월 26일 | 연예면  | “극단적 선택..생활 어려움 고백”故 송유정의 안타까운 비보..뜨거운 추모 열기[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395호 | 조선닷컴         | 1월 26일 | 연예면  | “극단적 선택..생활 어려움 고백”故 송유정의 안타까운 비보..뜨거운 추모 열기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396호   | 언론사명 | (주)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고    | 인사이트 2021년 01월 29일 사건사고면<br>「정류장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여성 머리 폭행하고 버스 따라탄 뒤 '상욕'한 남성(영상)」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고 중 언어폭력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난 영상 게시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버스 정류장에서 흡연하던 남성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욕설한 사건을 전달하면서 해당 욕설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언어폭력을 필요이상으로 보도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397호   | 언론사명 | (주)매일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매일신문 2021년 02월 09일 사회면<br>「[영상] 경기도 화성서 차량 둔기로 부수고 운전자 폭행 논란…경찰 수사나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난 영상 게시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무차별 집단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br>이는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39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398호 | 인터넷 경기일보 | 2월 9일 | 영상면  | [영상] [제보특] 경기도 화성 차량 습격 '묻지마 폭행' 현장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399호   | 언론사명 | (주)미디어 제주 |
|---------|--|------|-----------|
| 대상보도    | 미디어제주 2021년 02월 19일 사회면<br>「“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새로운 제주’ 바라는 제주도민의 승리”」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회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회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br>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39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400호 | 뉴제주일보               | 2월 22일 | 01면    |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국토부 전달...최종 결정 방향 '축각'      | 지역일간지 |
| 제2021-401호 | 인터넷<br>뉴제주일보        | 2월 22일 | 정치/행정면 |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국토부 전달...최종 판단은          | 인터넷신문 |
| 제2021-402호 | 제주매일                | 2월 23일 | 02면    | 제2공항 여론조사 해석 둘러싼 갈등 우려 현실로               | 지역일간지 |
| 제2021-403호 | 인터넷 제주매일            | 2월 22일 | 사회/교육면 | 제2공항 여론조사 해석 둘러싼 갈등 우려 현실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404호 | 제주일보                | 2월 22일 | 05면    | 여론조사 결과 놓고 찬·반 입장 차 극명                   | 지역일간지 |
| 제2021-405호 | 국제뉴스                | 2월 22일 | 전국면    | "원희룡 도정, 제2공항 사업철회 공식적 요구하러"             | 뉴스통신  |
| 제2021-406호 | 연합뉴스                | 2월 23일 | 최신기사면  | 제주도, 제주 2공항 여론조사 결과 전달...“국토부로 공 넘겨”(종합) | 뉴스통신  |
| 제2021-407호 | 매경닷컴                | 2월 23일 | 정치면    | 제주도, 제주 2공항 여론조사 결과 전달...“국토부로 공 넘겨”(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408호 | 아시아경제닷컴             | 2월 23일 | 일반면    | 제주도, 제주 2공항 여론조사 결과 국토부로 전달              | 인터넷신문 |
| 제2021-409호 | 이슈제주                | 2월 19일 | 정치면    | 도민들 반대 우세, 제2공항 'OUT' 목소리                | 인터넷신문 |
| 제2021-410호 | 인터넷<br>e대한경제        | 2월 22일 | -      | 변창흠 국토부장관 “제주 2공항 여론조사 결과, 환경부 보낼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411호 | 인터넷 교통신문            | 2월 23일 | 교통경제면  | 김해신공항 물 건너가고 제주2공항도 난관                   | 인터넷신문 |
| 제2021-412호 | 인터넷 서울신문            | 2월 22일 | 정책·행정면 | 제주 제2공항 관련 변창흠 국토장관 실언에 환경부 “당황스럽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413호 | 인터넷<br>에너지경제        | 2월 22일 | 정치사회면  | 변창흠 “제주 2공항 여론조사 결과 환경부로 보낼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414호 | 인터넷<br>전국매일신문       | 2월 22일 | 경제면    |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환경부 의견 물을 예정”           | 인터넷신문 |
| 제2021-415호 | 인터넷 한겨레             | 2월 19일 | 전국면    | 여론조사 반대 우세...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중단 갈림길에 서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416호 | 인터넷 한라일보            | 2월 23일 | 뉴스면    |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의견없이 국토부 전달               | 인터넷신문 |
| 제2021-417호 | 제주의 소리              | 2월 18일 | 사회면    | [제주 제2공항 주요 일지] 입지 선정부터 찬반 여론조사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418호 | 제주투데이               | 2월 23일 | 사회/행정면 | 진교넷, “국토부는 도민 뜻 무겁게 받아들여야”               | 인터넷신문 |
| 제2021-419호 | 프레스리안<br>(Pressian) | 2월 25일 | 전국면    |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정책 반영될까?                    | 인터넷신문 |
| 제2021-420호 | 헤드라인제주              | 2월 20일 | 사회면    | 녹색당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즉각 수용하러”       | 인터넷신문 |

제 1 부

시 정 권 고 현 황

제 2 부

주 요 시 정 권 고 사 례

제 3 부

시 정 권 고 전 체 목 록

부 록

| 의결번호    | 제2021-421호  | 언론사명 | (주)경북매일신문 |
|---------|---|------|-----------|
| 대상보도    | 인터넷 경북매일 2021년 02월 09일 정치면<br>「신공항 대응 극과극…TK ‘우왕좌왕’ PK ‘일사분란」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br>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42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422호 | 경북매일 | 2월 10일 | 03면  | 신공항 대응 극과극…TK ‘우왕좌왕’ PK ‘일사분란」 | 지역일간지 |

| 의결번호    | 제2021-423호   | 언론사명 | 김환태(국민뉴스) |
|---------|--|------|-----------|
| 대상보도    | 국민뉴스 2021년 02월 10일 뉴스종합면<br>「‘주호영’은 무섭고, ‘진성준’은 만만한 기레기 언론의 이중잣대 ‘언론, ‘주호영 의혹’ 보도 경고에 입당더니 ‘진성준 의혹’은 벼락치듯 보도」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언론 신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 공표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br>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424호   | 언론사명 | (주)경향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주간경향 2021년 02월 01일 사회면<br>「이재용 구속으로 삼성 가치 하락?」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외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외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 공표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br>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425호   | 언론사명 | (주)엠케이그룹 |
|---------|--|------|----------|
| 대상보도    | 메디컬투데이 2021년 02월 19일 병원·약국면<br>「○○○안과 확장 이전...환자 편의성·만족도 높인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br>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부 록

|         |  |      |          |
|---------|--|------|----------|
| 의결번호    | 제2021-426호   | 언론사명 | (주)조선일보사 |
| 대상보도    | 조선닷컴 2021년 03월 01일 연예면<br>「'가오쯔치와 이혼' 채림 "방송 노출의 무게 아직 감당할 준비 안됐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미성년 자녀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특정 배우의 이혼 소식을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해당 배우가 자신의 SNS에 기사화를 원치 않고 아이의 사진을 쓰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게시한 바 있어 자녀의 초상 공개에 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미성년자의 초상 공개는 자기 결정이 가능한 성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더욱 커다란 주의가 요구되므로 미성년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42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427호 | 아시아뉴스통신          | 3월 4일  | 연예/문화면 | 채림 아들 공개, 방송 출연하지 않는 이유는?                      | 뉴스통신  |
| 제2021-428호 | 뉴스엔              | 3월 29일 | 연예면    | '싱글맘' 채림, 5살 아들과 데이트 "즐거기 딱 좋은 계절" [SNS★컷]     | 인터넷신문 |
| 제2021-429호 | 뉴스인사이드           | 3월 20일 | 연예면    | 채림, 아들 향한 사랑 "백발 할아버지가 되도 난 나의 영원한 베이비"        | 인터넷신문 |
| 제2021-430호 | 마이데일리            | 3월 19일 | 연예면    | 채림, 아들 향한 애정 "백발 할아버지가 되어도 나의 영원한 베이비"         | 인터넷신문 |
| 제2021-431호 | 스타뉴스 (star news) | 3월 1일  | 방송면    | 채림 "방송 활동은 아직..감당할 준비 못해" [공식]                 | 인터넷신문 |
| 제2021-432호 | 스타투데이            | 3월 4일  | 연예면    | 채림, 아들 근황 공개 "무섭지만 손 내미는 용감한 마음"               | 인터넷신문 |
| 제2021-433호 | 스포티비뉴스           | 3월 19일 | TV연예면  | '싱글맘' 채림, 5살 아들과 커피패션... "난 나의 영원한 베이비"        | 인터넷신문 |
| 제2021-434호 | 엑스포츠뉴스           | 3월 25일 | 국내연예면  | '싱글맘' 채림, 5살 아들 '엄마 지켜줘' 말에 감동 "든든해" [★해시태그]   | 인터넷신문 |
| 제2021-435호 | 오에스이엔 (OSEN)     | 3월 29일 | 연예면    | 채림, 5살 아들 키우는 싱글맘 일상 "즐거기 딱 좋은 나이와 계절"         | 인터넷신문 |
| 제2021-436호 | 인터넷 세계일보         | 3월 24일 | 연예면    | 채림, 사업가 변신한 근황 "내 싱그러운 젊음 가까이 바쳐...엄마를 위한 브랜드" | 인터넷신문 |
| 제2021-437호 | 인터넷풋볼            | 3월 2일  | 연예면    | 채림 "방송 노출 감당할 준비 안 됐다... 지금은 아니야"(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438호 | sportschosun.com | 3월 19일 | 연예면    | '싱글맘' 채림, 아들 향한 애정 똑똑... "난 할아버지가 되어도 나의 베이비"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439호   | 언론사명 | (주)미디어인그램 |
|---------|--|------|-----------|
| 대상보도    | 오픈 디스커스_중복 폐지 2021년 02월 25일 Net.이슈면<br>「“김동성은 방울뱀, 여교사에 스폰받고 불륜”...김용호 충격적 카톡 대화 공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 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유튜브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여교사가 과거에 불륜 관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공개한 두 사람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도하였다. 특히 해당 대화내용은 두 사람 간의 성적 교섭에 관한 것으로 이른바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그가 국가대표를 지내는 등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고 그의 행동이 공중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내밀영역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440호   | 언론사명 | (주)일요신문사 |
|---------|--|------|----------|
| 대상보도    | 일요신문 2021년 03월 16일 특종/단독면<br>「구미 3세 여아 친모 ○ 씨 얼굴, ‘그것이 알고 싶다’ SNS 통해 공개돼」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피고인의 초상과 성씨,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및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비록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일부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인 피고인의 초상을 공개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441호</b>  | <b>언론사명</b> | <b>백은중(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b> |
| <b>대상보도</b>    |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2021년 03월 21일 사회면<br>「윤석열 장모 최은순 LH 땅 투기...시세차익 '100억' 챙겨」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b>권고사항</b>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br>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및 성명과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b>이유</b>      | 위 기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 및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비록 공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보도일지라도 일반인인 피고인의 초상 및 성명을 단지 전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해당인물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당사자의 초상 및 성명을 공표하고, 해당 인물의 내연 관계 등을 전언 형식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44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442호                             | 국민뉴스                   | 3월 22일 | 뉴스종합면 | 윤석열 장모 LH 땅 투기, 시세차익 '100억' 챙겨... 충남 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사업예정부지 투기 의혹        | 인터넷신문 |
| 제2021-443호                             | 인터넷 세계타임즈              | 3월 21일 | 사회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장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3년 전 땅 투기 시세차익 '100억' 챙겨           | 인터넷신문 |
| 제2021-444호                             | 양파티브이뉴스                | 3월 22일 | 사회면   | 윤석열 장모 최은순 LH 땅 투기...시세차익 '100억' 챙겨  | 인터넷신문 |
| 제2021-445호                             | 오마이뉴스 (OhmyNews)       | 3월 26일 | 정치면   |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446호                             | 뉴스프리존 (News Free Zone) | 3월 22일 | 사회면   | 3년만에 '30억→135억' 윤석열 장모 최은순 'LH 땅 투기' 파문, "망국의 범죄" 맞췄? (feat. 17년 전이면 지금 얼마?)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447호   | 언론사명 | (주)이투데이 |
|---------|--|------|---------|
| 대상보도    | 이투데이 2021년 03월 08일 사회면<br>「사퇴 후 지지율 32.4%로 수직상승...윤석열 둘러싼 '카더라」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주가조작 등의 범죄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성명을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 및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비록 공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보도일지라도 일반인인 피고인의 성명을 단지 전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448호   | 언론사명 | (주)위대한자 |
|---------|--|------|---------|
| 대상보도    | K trendy NEWS 2021년 03월 21일 뉴스면<br>「윤석열 장모 'NH 삼성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3년 전 땅 투기...시세차익 '100억' 챙겨」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성명 및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성명을 공표하였다.</p> <p>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공적 관심이 큰 의혹에 관한 사안일지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내용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에 연루된 일반인의 성명을 단지 전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또한 해당 인물의 내연 관계 등을 전언 형식을 빌려 공표한 보도 역시 당사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44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0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449호                              | 고발뉴스닷컴                    | 3월 22일 | 사회go발면 | 열린공감TV 특종 행렬 “尹장모, LH에서 135억 보상금 챙겨”         | 인터넷신문 |
| 제2021-450호                              | 인터넷<br>굿모닝충청              | 3월 25일 | 뉴스플러스면 | 강진구 “윤석열의 ‘내로남불’...양심 없거나, 지적 능력 떨어지거나”      | 인터넷신문 |
| 제2021-451호                              | 뉴스시스(NEWSIS)              | 3월 24일 | 사회면    | 윤석열 측, ‘장모 땅투기’ 의혹에 “개발 고시 후 산 것”            | 뉴스통신  |
| 제2021-452호                              | 씨앤비뉴스<br>(CNBNEWS)        | 3월 24일 | -      |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LH 보상금 132억 받았다...차익 ‘102억’   | 인터넷신문 |
| 제2021-453호                              | 인터넷 세계일보                  | 3월 25일 | 사회면    | 윤석열 측, ‘장모 땅투기’ 의혹에 “개발 계획 고시된 후 공개 입찰 통해 매입 | 인터넷신문 |
| 제2021-454호                              | 인터넷<br>수도권일보              | 3월 24일 | 사회면    | 윤석열 측, ‘장모 땅투기’ 의혹에 “개발 고시 후 산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455호                              | 인터넷 한국일보                  | 3월 24일 | 정치면    | 조국, 임종석 이어 박원순 소환...못,尹 땅투기 의혹도 비난           | 인터넷신문 |
| 제2021-456호                              | 톱스타뉴스<br>(TopStarNews)    | 3월 24일 | 사건사고면  | 윤석열 장모 최씨측, ‘땅투기’ 의혹에 “개발 고시 후 산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457호                              | e머니에스<br>(e money S)      | 3월 24일 | 사회면    | 박주민, 윤석열에 포문 “장모 아산 땅 투기 의혹 입장 밝혀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458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3월 24일 | 뉴스면    | 박주민, 윤석열에 “장모의 아산 땅 투기...입장 밝혀라”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459호   | 언론사명 | 이대울(안동인터넷뉴스) |
|---------|--|------|--------------|
| 대상보도    | 안동인터넷뉴스 2021년 03월 27일 이슈기획면<br>「정인이를 죽인 악마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양부모 강력처벌 촉구하며 안동시민 동참 호소」<br>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양모의 성명을 공개하였다.<br>비록 공적 관심이 집중된 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성명을 공개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검찰 측 기소내용을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및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45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460호 | 조선비즈 | 4월 6일 | 시사면  | 정인이' 입양 절차 담당한 홀트 회장 사임...노조 "사임은 징계 아냐"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461호   | 언론사명 | 아시아투데이(주) |
|---------|--|------|-----------|
| 대상보도    | 아시아투데이ASIATODAY닷컴 2021년 03월 19일 국제면 「중국판 된장녀 귀메이메이 다시 감옥행 유력」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중국의 배우 출신 모 여성이 자신의 통장 액수를 과시하였으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면서 그를 '중국판 된장녀'라고 지칭하였다. '된장녀'는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명품 등 사치를 일삼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462호   | 언론사명 | (주)중부매일신문 |
|---------|--|------|-----------|
| 대상보도    | 인터넷 중부매일 2021년 03월 03일 사회면 「'성 전환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자살자의 사생활 침해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성전환수술 후 강제 전역조치된 모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하면서 자살자의 자택 내부모습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자살 장소를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것으로 자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463호   | 언론사명 | (주)한국일보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한국일보 2021년 02월 25일 사회면<br>「10대로 번진 ‘마약 메뉴판’... ○○○ 접속 5분만에 뺏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구입 가격,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br>이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464호   | 언론사명 | (주)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21년 03월 23일 핫이슈면<br>「신입생 화장실에 가둬놓고 소변 누는 가혹행위 하며 ‘똥군기’ 잡는 선배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권고사항    | 대상 보도중 가학적인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난 영상 게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싱가포르의 한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이 후배들 몸에 소변을 누며 가혹행위를 하는 모습의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br>이는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465호  | 언론사명 | (주)헤럴드 |
|---------|---|------|--------|
| 대상보도    |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1년 03월 04일 건강정보면<br>「‘찜찜한’ AZ백신 접종 궁금증...전문의 ‘입’을 열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        |

| 의결번호 | 제2021-465호   | 언론사명 | (주)헤럴드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 및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br>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46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466호 | REAL FOODS | 3월 4일 | Play면 | '짹짹' AZ백신 접종 궁금증·전문의 '입'을 열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467호   | 언론사명 | (주)머니앤밸류 |
|---------|--|------|----------|
| 대상보도    | e머니에스(e money S) 2021년 03월 02일 정치/사회면<br>「'28조' 가덕도신공항, 3개월만에 법안 통과 ... '1833억' 신안 흑산공항은 13년째 답보상태, 왜?」<br>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및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 중 조사의뢰기관 및 조사일시를 밝히지 않았다.<br>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468호   | 언론사명 | (주)일간투데이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일간투데이 2021년 03월 04일 사회·전국면 「○○○병원, ○○역 3000평 확장이전」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p> <p>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46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469호 | 일간경기                  | 3월 5일 | 15면           | 관절전문병원 '○○○병원' 확장 이전                       | 지역일간지 |
| 제2021-470호 | 인터넷 일간경기              | 3월 4일 | 건강·의학면        | 관절전문 '○○○병원' 인천 ○○역으로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71호 | 현대일보                  | 3월 5일 | 12면           | '○○○병원' 인천 ○○역 확장 이전                       | 지역일간지 |
| 제2021-472호 | 인터넷 현대일보              | 3월 4일 | 종합면           | '○○○병원' 인천 ○○역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73호 | 세계뉴스통신                | 3월 4일 | 사회면           | ○○○병원 새이름 '○○○병원' ○○역 3000평 확장 이전          | 뉴스통신  |
| 제2021-474호 | 아시아뉴스통신               | 3월 4일 | 사회/사건/사<br>고면 | 관절전문병원, ○○병원 새이름 '○○○병원' ○○역 3000평 확장이전    | 뉴스통신  |
| 제2021-475호 | 경기etv뉴스               | 3월 4일 | 사회면           | 관절전문병원, '○○○병원' ○○역 3000평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76호 | 경인투데이뉴스               | 3월 4일 | 인천면           | 인천관절전문병원, ○○병원 새이름 "○○○병원" ○○역 3,000평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77호 | 국민TV                  | 3월 4일 | 지역소식면         | 관절전문 ○○병원 새이름 '○○○병원'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78호 | 대한뉴스<br>(인터넷)         | 3월 4일 | 인천플러스면        | 관절전문병원, ○○병원 새이름 "○○○병원" ○○역 3,000평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79호 | 아시아투데이<br>ASIATODAY닷컴 | 3월 4일 | 사회면           | 인천 '○○○병원' ○○역 3000평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6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480호 | 오늘뉴스         | 3월 4일  | 전국면    | 인천 관절전문 〇〇〇병원, 〇〇역 인근으로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81호 | 인터넷 경기일보     | 3월 4일  | 인천면    | '관절전문' 〇〇〇병원, 8일 〇〇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82호 | 인터넷 경도신문     | 3월 4일  | 경제면    | '〇〇〇병원' 〇〇역으로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83호 | 인터넷 내외일보     | 3월 4일  | 전국면    | 관절전문병원, 〇〇병원 새이름 "〇〇〇병원" 〇〇역 3,000평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84호 |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 3월 4일  | 의학·과학면 | 〇〇〇병원 인천 〇〇역 인근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85호 | 인터넷 시민일보     | 3월 4일  | 경인권면   | '〇〇〇병원' 인천 남동구 〇〇역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86호 | 인터넷 아시아일보    | 3월 4일  | 인천면    | 관절전문 〇〇병원 새 이름 '〇〇〇병원' 〇〇역인근 3,000평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87호 | 인터넷 우리일보     | 3월 4일  | 사회면    | 〇〇병원 새이름 "〇〇〇병원" 〇〇역 3,000평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88호 | 인터넷 의학신문     | 3월 4일  | 병원면    | 관절전문 〇〇〇병원 〇〇역으로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89호 | 인터넷 중도일보     | 3월 4일  | 전국면    | 〇〇〇병원, 〇〇역 요지로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90호 | 인터넷 중부일보     | 3월 4일  | 인천면    | 〇〇병원, 새이름 〇〇〇병원으로 〇〇역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91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3월 4일  | 의학·과학면 | 〇〇〇병원 인천 〇〇역 인근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492호 | 뉴스시스(NEWSIS) | 3월 9일  | 수도권면   | 〇〇〇병원, 〇〇〇에 〇〇〇센터 개원                     | 뉴스통신  |
| 제2021-493호 | 경인투데이뉴스      | 3월 9일  | 지역뉴스면  | 〇〇〇병원, 〇〇〇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494호 | 더퍼스트미디어      | 3월 9일  | 비즈니스면  | 〇〇〇병원, 〇〇〇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495호 | 아이팍뉴스        | 3월 9일  | 의사/의학면 | 〇〇〇병원, 〇〇〇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496호 | 인터넷 e대한경제    | 3월 10일 | 전국면    | 〇〇〇병원, 〇〇〇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497호 |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 3월 9일  | 인천시정면  | 〇〇〇병원, 〇〇〇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498호 | 인터넷 기호일보     | 3월 10일 | 사회면    | 〇〇〇병원, 〇〇에 〇〇〇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499호 |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 3월 9일  | 의학·과학면 | 〇〇〇병원, 〇〇〇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500호 | 인터넷 의계신문     | 3월 9일  | 병원/의원면 | 〇〇〇병원, 〇〇〇센터 개소                          | 인터넷신문 |
| 제2021-501호 | 인터넷 일간투데이    | 3월 9일  | 인천면    | 〇〇〇병원, 최첨단 장비·면역주사치료 등 전문 암 면역치료 서비스 제공  | 인터넷신문 |

| ■ 제2021-46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3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502호                              | 인터넷<br>파이낸셜뉴스             | 3월 9일  | 의학·과학면 | ○○○병원, ○○○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503호                              | 인터넷 후생신보                  | 3월 10일 | 병·의원면  | ○○○병원, ○○○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504호                              | 쿠키뉴스                      | 3월 9일  | 헬스케어면  | [병원소식] ○○○병원, ○○○센터 개원 외                                    | 인터넷신문 |
| 제2021-505호                              | 쿠키메디컬                     | 3월 9일  | 건강/의료면 | [병원소식] ○○○병원, ○○○센터 개원 외                                    | 인터넷신문 |
| 제2021-506호                              | 헬스포커스뉴스                   | 3월 10일 | 뉴스 의료면 | ○○○병원, ○○○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507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3월 12일 | 사회면    | ○○○병원, ○○ ○○○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508호                              | sportschosun.<br>com      | 3월 9일  | 라이프면   | ○○○병원 ○○○센터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509호                              | 인터넷<br>헤럴드경제              | 3월 2일  | 뉴스면    | ○○○병원 '○○○병원'으로 명칭변경, "○○○병원과<br>함께 ○○으로 브랜드 통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510호                              | 서울뉴스통신                    | 3월 2일  | 전국면    | ○○○병원, '○○○병원'으로 병원명 변경... "비전 2030<br>위한 새로운 도약"           | 뉴스통신  |
| 제2021-511호                              | 메디팜뉴스                     | 3월 2일  | 의료/병원면 | ○○○병원, 새로운 도약   | 인터넷신문 |
| 제2021-512호                              | 사이언스엠디                    | 3월 2일  | 병원/의료면 | ○○○병원, '○○○병원'으로 병원명 변경                                     | 인터넷신문 |
| 제2021-513호                              | 시대일보<br>인터넷신문             | 3월 3일  | 지방종합면  | ○○○병원, '○○○병원'으로 병원명 변경                                     | 인터넷신문 |
| 제2021-514호                              | 인터넷<br>경인종합일보             | 3월 2일  | 인천시정면  | ○○○병원, '○○○병원'으로 병원명 변경                                     | 인터넷신문 |
| 제2021-515호                              | 인터넷 내외일보                  | 3월 2일  | 전국면    | 비전2030을 위한 새로운 도약 ○○○병원,<br>'○○○병원'으로 병원명 변경                | 인터넷신문 |
| 제2021-516호                              | REAL FOODS                | 3월 2일  | Play면  | ○○○병원 '○○○병원'으로 명칭변경, "○○○병원과<br>함께 ○○으로 브랜드 통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517호                              | 헬스조선                      | 3월 24일 | 병·의원면  | '○○○병원' 첨단시설 갖춘 새 건물로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518호                              | 매경닷컴                      | 3월 24일 | 의료/건강면 | '○○○병원' 서울 강남 ○○○로로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519호                              | 인터넷 의학신문                  | 3월 24일 | 의원·병원면 | '○○○병원' 첨단시설 갖춘 새 건물로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520호                              | 조선비즈                      | 3월 24일 | IT면    | ○○○병원 서울 강남 중심으로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521호                              | 스포츠동아                     | 3월 4일  | 15면    | [건강 올레길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개인 맞춤형 치료<br>시스템 구축 ○○○정형외과 3월 중순 개원 | 중앙일간지 |

| 의결번호    | 제2021-522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트리(Wikitree) 2021년 04월 14일 엔터면<br>「“얼굴 평가까지...” 어제(13일) 유튜브에 ‘박수홍 여자친구’라고 풀린 영상」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및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유튜브 채널을 인용하여, 한 유명 개그맨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여자친구에게 주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의 초상 및 성명을 노출하였다.<br>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사생활과 초상 및 성명을 노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523호  | 언론사명 | (주)경향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스포츠경향 2021년 04월 03일 연예면<br>「[스경X초점] 박수홍 형, 용서 가까운 ‘후한 합의’ 왜 거절했나?」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개그맨과 친형 내외의 재산 관련 분쟁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개그맨 형수의 성명을 공개하였다.<br>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성명을 노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524호   | 언론사명 | (주)디스패치뉴스그룹 |
|---------|--|------|-------------|
| 대상 보도   | 디스패치뉴스 2021년 04월 12일 SNSFeed면<br>「[단독] “서예지가 조종했다”···김정현, 거짓된 ‘시간’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 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특정 남자배우가 과거에 연인으로부터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조종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배우와 그의 과거 연인 간의 사적 대화내용을 게재하였다.</p> <p>비록 그 대상이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게재한 것은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52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525호 | 살구뉴스              | 4월 16일 | 이슈면       | 김정현 서예지 가스라이팅 논란에 재조명 서현 팔짱 인터뷰 당시 상황(+사진 jpg)      | 인터넷신문 |
| 제2021-526호 | 인사이트              | 4월 12일 | 엔터네인먼트면   | 여친 서예지가 ‘시간’서 스킨십 하지 말라며 정색해 서현과 로맨스 연기 거부한 김정현(사진) | 인터넷신문 |
| 제2021-527호 | 포스트쉐어 (postshare) | 4월 12일 | newspick면 | 실시간 터진 서예지 김정현 열애설과 ‘조종’ 사건 (+문자 유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528호  | 언론사명 | (주)뉴스시스 |
|---------|---|------|---------|
| 대상 보도   | 뉴스시스(NEWSIS) 2021년 04월 22일 지방면<br>「구미 3세 여아사망사건에 붙난 엄마들, “짚값 치러야”」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528호   | 언론사명 | (주)뉴스스 |
|------|--|------|--------|
| 이유   | <p>이 기사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여성의 성명을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이는 「헌법」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과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비록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성명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이 일부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52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529호 | 인터넷 한국일보 | 4월 22일 | 사회면  |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 사실 없다” 입장 고수... 검찰 한숨만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530호  | 언론사명 | (주)중도일보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중도일보 2021년 04월 22일 정치/행정면<br>「충남도,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위한 범도민 10만명 참여 운동 전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양부모의 성명을 공표하였다.</p> <p>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 원칙)과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비록 해당사건이 공적 관심이 집중된 범죄 사건이고 지난 2021년 5월 14일 1심 재판부가 양부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보도 당시에는 1심 법원의 종국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검찰 측 기소 내용을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53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531호                             | 인터넷 한국경제 | 4월 14일 | 사회면  | 정인이 입양 한 달 만에 '귀찮은 X'...檢, 양모에 사형 구형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532호  | 언론사명 | 김병길(자주시보) |
|---------|---|------|-----------|
| 대상보도    | 자주시보 2021년 04월 28일 연재기사면<br>「[아침햇살124] 반보수투쟁에 총궐기하자」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혐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성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과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단지 전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성명을 드러내어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533호   | 언론사명 | (주)소셜미디어네트웍스 |
|---------|--|------|--------------|
| 대상보도    | 톱스타뉴스(TopStarNews) 2021년 03월 29일 사회면<br>「경남 하동 서당서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학폭'...자위행위 해 체액 먹이고 향문에 이물질 넣어」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제21조 (기사 제목)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방법이 묘사된 부분과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하동 모 서당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폭력적이며 자극적인 표현들은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시키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53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534호 | 일간경기                        | 3월 30일 | 19면  | 채액 먹이고 향문에 이물질 넣어...하동 서당서 '엽기학폭'                    | 지역일간지 |
| 제2021-535호 | 연합뉴스                        | 3월 29일 | 사회면  | 채액 먹이고 향문에 이물질 넣어...하동 서당서 '엽기 학폭'                   | 뉴스통신  |
| 제2021-536호 | 노컷뉴스                        | 3월 29일 | 전국면  | 하동 서당 이번엔 엽기적 학폭...채액 먹이고 소변 뿌리고                     | 인터넷신문 |
| 제2021-537호 | 뉴스플러스                       | 3월 29일 | 사회면  | 서당에서 엽기 폭력,,채액 먹이고 소변 뿌리고 성적 학대                      | 인터넷신문 |
| 제2021-538호 | 더팩트                         | 3월 29일 | 전국면  | "채액 안 먹으면 잠 재우지 않겠다"...하동 서당서 엽기적 폭행                 | 인터넷신문 |
| 제2021-539호 | 데일리굿뉴스<br>(Daily Good News) | 3월 29일 | 사회면  | 하동 서당서 채액 섭취 강요 등 '엽기 학폭'                            | 인터넷신문 |
| 제2021-540호 | 매경닷컴                        | 3월 29일 | 사회면  | 채액 먹이고 향문에 이물질 넣어...하동 서당서 '엽기 학폭'                   | 인터넷신문 |
| 제2021-541호 | 매일경제TV                      | 3월 29일 | 사회면  | 채액 먹이고 향문에 이물질 넣어...하동 서당서 '엽기 학폭'                   | 인터넷신문 |
| 제2021-542호 | 아이뉴스24<br>(inews24)         | 3월 29일 | 사회면  | "채액 안 먹으면 잠 안 재워"...향문에 이물질까지, 서당서 엽기학폭              | 인터넷신문 |
| 제2021-543호 | 이투데이                        | 3월 30일 | 사회면  |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채액 먹이고 향문에 이물질·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 인터넷신문 |
| 제2021-544호 | 인터넷 매일신문                    | 3월 29일 | 사회면  | "또 서당서 학폭"...또래 남학생에 채액 먹이는 등 성적 학대                  | 인터넷신문 |
| 제2021-545호 | 인터넷 문화일보                    | 3월 29일 | 사회면  | 채액 먹이고 향문에 이물질 ...하동 서당서 '엽기 학폭'                     | 인터넷신문 |
| 제2021-546호 |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 3월 29일 | 사회면  | 또 서당서 '잔인' 학폭...남학생에게 채액·소변 먹이고 성고문한 10대들            | 인터넷신문 |
| 제2021-547호 | 인터넷 서울경제                    | 3월 29일 | 사회면  | "채액 먹게 하고 향문에 이물질 넣고..." 하동 서당서 동급생에 '엽기적' 학폭 발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48호 | 인터넷 서울신문                    | 3월 29일 | 사회면  | 채액 먹이고 향문에 이물질 넣고...서당에서 벌어진 '엽기학폭'                  | 인터넷신문 |
| 제2021-549호 | 인터넷 스포츠경향                   | 3월 29일 | 사회면  | '서당 학폭' 생각보다 심각...채액 먹이고 향문에 이물질 넣어                  | 인터넷신문 |
| 제2021-550호 | 팩트경제신문                      | 3월 29일 | 사회면  | 하동 서당서 '엽기 학폭'...채액 먹이고 향문에 이물질 넣어                   | 인터넷신문 |
| 제2021-551호 | 인터넷 이데일리                    | 3월 29일 | 사회면  | "채액 먹이고 향문에"...또 하동 서당서 '엽기 학폭'                      | 인터넷신문 |
| 제2021-552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3월 29일 | 사회면  | 또 서당서 '잔인' 학폭...남학생에게 채액·소변 먹이고 성고문한 10대들            | 인터넷신문 |
| 제2021-553호 | 조선비즈                        | 3월 29일 | 사회면  | 경남 하동 서당서 또 '엽기적 학폭'... "채액 먹이고 유사 성행위 자행"           | 인터넷신문 |
| 제2021-554호 | sportschosun.com            | 3월 29일 | 사회면  | 채액 먹이고 향문에 이물질 넣어...하동 서당서 '엽기 학폭'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555호  | 언론사명 | (주)인터풋볼 |
|---------|---|------|---------|
| 대상보도    | 인터풋볼 2021년 04월 26일 연예면<br>「'물어보살' 배우 지망생 ○○○, 보이스피싱에 극단적 선택... 애도 물결」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부분과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자살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기사에 거론된 자가 모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고 배우 지망생이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가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고인의 인격 및 유가족의 사생활 등을 고려할 때 자살자의 신원공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p> <p>또한 위 기사는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에 대해 보도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동기만을 그 원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55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6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556호                              | 뉴스웍스            | 4월 26일 | 연예면     | '물어보살' 故 ○○○, 보이스피싱 피해에 극단적 선택...자인 "악마들은 잘 지낼 것"     | 뉴스통신  |
| 제2021-557호                              | 미디어펜 (Mediapen) | 4월 26일 | 연예 스포츠면 | '물어보살' ○○○, 보이스피싱→극단적 선택...안타까운 죽음에 추모 물결             | 인터넷신문 |
| 제2021-558호                              | 스타투데이           | 4월 26일 | 연예면     | 배우 지망생 ○○○, 보이스피싱 끝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59호                              | 스포츠투데이M         | 4월 26일 | 연예면     | 악마들이 짓밟은 예쁜 꽃...故○○○, 보이스피싱에 극단적 선택 [ST이슈]            | 인터넷신문 |
| 제2021-560호                              | 엑스포츠뉴스          | 4월 25일 | 국내연예면   | "네 삶 보상받아"...'물어보살' ○○○, 보이스피싱 사망→서장훈 발언 재조명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561호                              | 오에스이엔 (OSEN)    | 4월 26일 | 엔터테인먼트면 | "200만원 잃고 괴로워하다"...'물어보살' ○○○, 보이스피싱 피해 후 극단적 선택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55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6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562호 | 인터넷 국민일보               | 4월 26일 | 시사면   | '물어보살' 출연 배우 지망생, 보이스피싱 후 '극단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63호 | 인터넷 스포츠한국              | 4월 26일 | 연예면   | '물어보살' ○○○, 보이스피싱→극단적 선택 '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21-564호 | 조선닷컴                   | 4월 26일 | 사회면   | 보이스피싱 사기에... '물어보살' 배우 지망생 ○○○ 극단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65호 | 조이뉴스24 (joynews24)     | 4월 26일 | 연예면   | '물어보살'○○○, 2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에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66호 | 푸른한국닷컴                 | 4월 25일 | 치안면   | ○○○ 사망, 200만원 보이스피싱 당한 분함이 극단적 선택으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567호 | e머니에스 (e money S)      | 4월 26일 | 연예면   | ○○○, '보이스피싱' 끝 극단적 선택... 안타까운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21-568호 |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 4월 25일 | 연예면   | '물어보살'○○○ 사망, 23세...보이스피싱 피해 →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69호 | sportschosun.com       | 4월 26일 | 연예면   | "19년 無 존재-> 200만원 피싱 극단 선택" '물어보살' ○○○ 사망→추모ing→sns삭제[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570호 | MTN(엠티엔)               | 4월 26일 | 연예면   | '물어보살' 배우지망생 ○○○, 보이스피싱 피해로 사망 '작고 착한 아이'...애도 행렬         | 인터넷신문 |
| 제2021-571호 | UPI뉴스통신                | 4월 26일 | 연예면   | '물어보살' 배우 지망생 ○○○, 보이스피싱에 안타까운 사망                         | 뉴스통신  |
| 제2021-572호 | 더팩트                    | 4월 26일 | 연예면   | '물어보살' ○○○, 안타까운 사망..."보이스피싱 때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573호 | 데일리시마트경제               | 4월 26일 | 연예화제면 | '물어보살' 출연 ○○○, 보이스피싱으로 사망... 안타까운 사연                      | 인터넷신문 |
| 제2021-574호 | 동아닷컴                   | 4월 25일 | 사회일반면 | '물어보살' 출연했던 배우 지망생, 보이스피싱 당한 후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21-575호 | 디스패처뉴스                 | 4월 25일 | ALL면  | "200만원이 안되는 돈을..."...보이스피싱 당하고 괴로워 하다 생을 마감한 '무물보' ○○○양   | 인터넷신문 |
| 제2021-576호 | 브레이크뉴스 (break news)    | 4월 26일 | 연예면   | '물어보살' 배우 지망생 ○○○, 23세로 사망...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577호 | 스포티비뉴스                 | 4월 26일 | TV연예면 | '물어보살' 배우 지망생 ○○○ 생명 앗아간 보이스피싱... 애도물결[종합]                | 인터넷신문 |

| ■ 제2021-55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6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578호                              | 시즌데일리          | 4월 25일 | 연예면  | ‘물어보살’ 출연, 배우 지망생 ○○○ 23세 나이로 보이스피싱 당한 후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21-579호                              | 엠케이스포츠 (MK스포츠) | 4월 25일 | 스포츠면 | ‘물어보살’ 출연 ○○○, 보이스피싱 때문에...뒤늦게 전해진 사망 소식      | 인터넷신문 |
| 제2021-580호                              | 인터넷 세계일보       | 4월 25일 | 연예면  | ‘물어보살’ 출연한 배우 지망생 ○○○ 보이스피싱으로 숨져...누리꾼은 애도 물결 | 인터넷신문 |
| 제2021-581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4월 25일 | 엔터면  | ‘물어보살’ 배우 지망생 ○○○, 23세 나이로 사망 “보이스피싱 때문에...”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582호   | 언론사명 | (주)연합뉴스 |
|---------|--|------|---------|
| 대상보도    | 연합뉴스 2021년 04월 28일 최신기사면<br>「“코인 투자 실패” 지난 주말 강원에서 20대 극단적 선택」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강원에서 20대 남성이 자살한 사건을 전하면서 자살 동기를 기사 제목에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에 대해 보도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동기만을 그 원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58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4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583호                              | 더팩트    | 4월 28일 | 사회면  | “비트코인 폭락 때문에” 강릉서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추정 | 인터넷신문 |
| 제2021-584호                              | 데일리안   | 4월 28일 | 사회면  | ‘코인 투자 실패’ 비판 20대,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85호                              | 데일리중앙  | 4월 29일 | 사회면  | 코인 투자 실패 20대 목숨 끊어                 | 인터넷신문 |
| 제2021-586호                              | 디스패처뉴스 | 4월 28일 | 사회면  | “코인 투자 실패” 지난 주말 강원에서 20대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8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4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587호 | 매경닷컴                   | 4월 28일 | 사회면  | “코인 투자 실패” 지난 주말 강원에서 20대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88호 | 뷰스앤뉴스                  | 4월 28일 | 사회면  | “코인 투자 실패”, 20대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89호 | 이투데이                   | 4월 28일 | 사회면  | 20대 남성, 코인이 뭐길래…투자 실패로 수익 잃고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90호 | 인사이트                   | 4월 28일 | 사회면  | ‘코인 투자 실패’ 20대 남성, 지난 주말 강원도서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91호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4월 28일 | 사회면  | 가상화폐 투자 실패한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92호 | 인터넷 강원일보               | 4월 28일 | 사회면  | “코인 투자 실패” 비판 20대 스스로 목숨 끊어           | 인터넷신문 |
| 제2021-593호 | 인터넷 국민일보               | 4월 28일 | 사회면  | ‘가상화폐 폭락’ 주말 강원도서 20대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94호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4월 28일 | 사회면  | “코인 투자 실패” 비판 20대,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95호 | 인터넷 매일신문               | 4월 28일 | 사회면  | 비트코인 폭락에 20대 극단적 선택… 부모 “아들이 코인투자 실패” | 인터넷신문 |
| 제2021-596호 | 인터넷 문화일보               | 4월 29일 | 뉴스면  | “코인 투자 실패” 강원에서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97호 |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 4월 29일 | 사회면  | 비극 시작됐다? 코인 투자실패 20대 스스로 목숨 끊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598호 | 인터넷 서울신문               | 4월 28일 | 사회면  | ‘코인 투자 실패’ 20대, 지난 주말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599호 | 인터넷 이데일리               | 4월 29일 | 사회면  | 코인 투자 실패 비판, 강원서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600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4월 29일 | 사회면  | 비극 시작됐다? 코인 투자실패 20대 스스로 목숨 끊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601호 | 인터넷 한국경제               | 4월 28일 | 사회면  | ‘가상화폐 투자 실패’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602호 | 조선비즈                   | 4월 29일 | 사회면  | 코인 투자 실패 비판한 20대男, 지난 주말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603호 | 한국경찰일보                 | 4월 29일 | 사회면  | 20대 남성, 비트코인 투자 실패, 자살                | 인터넷신문 |
| 제2021-604호 | e글로벌이코노믹               | 4월 29일 | 사회면  | 대박노리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 실패 20대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605호 | e머니에스 (e money S)      | 4월 28일 | 사회면  | 가상화폐 2억원 손실 추정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21-606호 |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 4월 28일 | 사회면  | 비극으로 끝난 코인 투자…‘2억 손실’ 20대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607호  | 언론사명 | (주)서울경제신문 |
|---------|---|------|-----------|
| 대상보도    | 인터넷 서울경제 2021년 04월 02일 국제면<br>「[영상]“흑인에 머리 짓밟힌 65세 동양인 돕자” 하루 만에 1억원 모였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폭력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난 영상 게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뉴욕 거리에서 발생한 동양인 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시의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였다.<br>비록 해당 영상이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데 필요하고 그 영상의 화질이 비교적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식별 가능한 가학적 폭행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게시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60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08호 | 노컷뉴스      | 3월 30일 | 국제면  | [이슈시계]65세 폭행에 경비원 모른 척...美 아시안 증오 범죄 확산 | 인터넷신문 |
| 제2021-609호 | 데일리안      | 3월 31일 | 사회면  | 아시아인 무참히 짓밟고 폭행하는 흑인들...“인류애 사라진다”(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610호 | 동아닷컴      | 3월 30일 | 국제면  | 아시아인 여성 구타당했는데...보고도 문 닫은美景비원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611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4월 1일  | 스포츠면 | 아시아인 폭행한 뉴욕 흑인, 모친 살해한 살인마였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612호 | 인터넷 한국경제  | 3월 31일 | 사회면  | “아시아인은美 떠나라”...무차별 폭행에도 시민들 또 외면        | 인터넷신문 |
| 제2021-613호 | 조선닷컴      | 3월 31일 | 국제면  | 뉴욕 거리서 아시아 여성 폭행한 흑인 “여긴 네 나라가 아니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614호  | 언론사명 | 국민일보(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국민일보 2021년 03월 30일 시사면<br>「뉴욕 지하철차서 흑인이 아시아인 폭행...승객들은 환호성 [영상]」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의결번호 | 제2021-614호   | 언론사명 | 국민일보(주)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폭력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난 영상 게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동양인 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시의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였다.</p> <p>비록 해당 영상이 아시안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필요하다 하더라도, 영상 속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게시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61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15호 | 인터넷 한국경제                  | 3월 30일 | 국제면  | 미국서 또 아시아인 무차별 폭행...구경꾼들 환호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616호 | 조선닷컴                      | 3월 30일 | 국제면  | 뉴욕 지하철서 아시아계 폭행... 말리는 이 한명도 없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617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3월 30일 | 뉴스면  | 뉴욕 지하철서 아시아인 실신할 때까지 폭행... 아무도 안 말렸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618호  | 언론사명 | 부산일보(주) |
|---------|---|------|---------|
| 대상보도    | 부산닷컴 2021년 04월 21일 사회면<br>「“귀엽다”며 쥐불놀이하듯 강아지 학대...20대 견주와 친구 100만원 벌금형」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영상이 게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강아지를 학대한 견주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61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19호 | 디스패처뉴스    | 4월 23일 | SNSFeed면 | "재미로 했다"·강아지로 쥐불놀이 한 견주 벌금 100만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620호 | 아시아경제닷컴   | 4월 23일 | 사회면      | [영상]"귀엽잖아" 목줄 잡고 쥐불놀이 즐긴 견주·벌금 100만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621호 | 인터넷 이데일리  | 4월 22일 | 사회면      | 강아지 목줄 잡고 공중에서 '빙빙'...20대 2명 벌금 100만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622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4월 21일 | 스포츠면     | "귀엽다"며 강아지 쥐불놀이...20대 2명 100만원 벌금형     | 인터넷신문 |
| 제2021-623호 | 인터넷 중앙일보  | 4월 21일 | 사회면      | "귀엽다"며 강아지 쥐불놀이...20대 2명 100만원 벌금형     | 인터넷신문 |
| 제2021-624호 | 인터넷 한국경제  | 4월 23일 | 사회면      | 강아지로 쥐불놀이했는데 사유재산이라 견주에 반환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625호 | 조선닷컴      | 4월 25일 | 사회면      | 반려견 '쥐불놀이'처럼 학대...견주·지인에게 벌금 100만원씩 선고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626호  | 언론사명 | 이데일리(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이데일리 2021년 04월 05일 의료·건강면 「양한방 협진 진료하는 ○○한방병원 개원」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p> <p>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62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27호 | 매경닷컴      | 4월 3일  | 뉴스면  | 양한방 협진 '○○한방병원' 구리시에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628호 | 인터넷 경향신문  | 4월 4일  | 사회면  | 암 환자, 면역 극대화와 통증 재환이 중요하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629호 | 인터넷 스포츠동아 | 4월 11일 | -    | [건강 올리길] 200평대 정형외과 '○○의원' 4월 개원 예정 | 인터넷신문 |
| 제2021-630호 | 스포츠동아     | 4월 12일 | 13면  | "환자 개개인에 맞춤형 치료 제공" '○○의원' 4월 개원 예정 | 중앙일간지 |
| 제2021-631호 | 인터넷 매일신문  | 4월 4일  | 사회면  | 대구 첫 여성전용 암 재활·재발 방지 센터 '○○' 문 열어   | 인터넷신문 |
| 제2021-632호 | 매일신문      | 4월 5일  | 22면  | 대구 첫 여성전용 암 재활·재발 방지 센터 '○○' 문 열어   | 지역일간지 |

| 의결번호    | 제2021-633호  | 언론사명 | (주)헤럴드 |
|---------|---|------|--------|
| 대상보도    | 헤럴드POP 2021년 04월 28일 화제면<br>「박복, 얼굴 상태 심각..성형 후유증 흘러내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제2조 (명예훼손 금지)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으로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는 제목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br>대상보도 중 사실을 과장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가수가 성형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마치 얼굴이 흘러내린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br>이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외모에 관한 비하적 표현이 담긴 인신공격적 내용으로 해당 가수의 명예 및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제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부 록

| 의결번호    | 제2021-634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투리(Wikitree) 2021년 05월 31일 사회면<br>「보배드림 발칵 뒤집은 여자 목사… 고깃집에서 이렇게 진상 부렸다 (사진·통화 녹취)」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음성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음성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목사가 음식을 다 먹은 후 환불해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고깃집 주인과 해당 손님 간 통화 녹음파일이 담긴 모 인터넷 게시판 링크를 게재하여 손님의 음성을 공개하였다.<br>이는 사인 간의 통화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음성권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635호  | 언론사명 | (주)뉴스1 |
|---------|---|------|--------|
| 대상보도    | 뉴스1코리아 2021년 05월 11일 연예면<br>「'원정 성매매 벌금형' 지나 "삶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버티게 한 엄마"」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초상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가수가 활동할 당시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당 가수 모친의 초상을 공표하였다.<br>비록 해당 가수가 자발적으로 SNS에 모친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가수의 불미스러운 과거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인 모친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63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36호                             | 뉴스스(NEWSIS) | 5월 10일 | 연예면  | '활동중단' 지나 "아무도 날 믿지 않았을 때도, 믿어준 엄마" | 뉴스통신 |  |

■ 제2021-63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37호 | 오픈 디스커스                   | 5월 11일 | Net.이슈면 | '원정 성매매 벌금형' 지나 "삶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버티게 한 엄마"                  | 인터넷신문 |
| 제2021-638호 | 인사이트                      | 5월 10일 | 엔터테인먼트면 | "누구도 날 안 믿었는데 믿어줬다" ...삶 포기했을 때도 자기 잡아준 '엄마'에 진심 전한 지나 근황 | 인터넷신문 |
| 제2021-639호 | 인터넷<br>부스파이낸셜뉴스           | 5월 11일 | 연예면     | '원정 성매매 벌금형' 지나 "삶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버티게 한 엄마"                  | 인터넷신문 |
| 제2021-640호 | 인터넷<br>수도권일보              | 5월 10일 | 연예면     | 지나 "아무도 날 믿지 않았을 때도 믿어준 엄마"                               | 인터넷신문 |
| 제2021-641호 | 텐아시아                      | 5월 10일 | 연예가화제면  | 지나 "삶 포기했을 때 붙잡아준 엄마 사랑해" 봉어빵 투샷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642호 | 톱스타뉴스<br>(TopStarNews)    | 5월 10일 | 이슈면     | "내 인생을 포기 했을 때... '활동 중단' 지나(G.NA) 근황, 어머니 향한 고마움         | 인터넷신문 |
| 제2021-643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5월 10일 | 연예면     | 지나 근황 "아무도 날 믿지 않아도 엄마는 믿어줬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644호 | sportschosun.<br>com      | 5월 10일 | 연예면     | '활동중단' 지나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 나를 잡아 준 엄마" 애절한 고백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645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 보도   | 위키트리(Wikitree) 2021년 05월 11일 사회면<br>「"감옥에서 러브레터?" 정인이 양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 공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 내용과 일반인의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이 가족에게 보낸 옥중편지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편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비록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간 서신 내용을 게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해당 편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의 이름을 공표하였다. 일반인에 불과한 이들이 피고인의 가족이나 주변인이란 이유로 실명 공개를 수인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들의 이름을 여과 없이 노출한 것은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 및 제1조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64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7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646호                              | 뉴스1코리아                               | 5월 11일 | 사회면      | [영상] 정인이 양모가 쓴 '옥중편지'...친딸 영어교육 걱정?              | 뉴스통신  |
| 제2021-647호                              | 데일리안                                 | 5월 11일 | 사회면      | "진짜 이민을..." 정인이 양모, 남편에게 쓴 옥중편지 공개됐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648호                              | 디스패처뉴스                               | 5월 12일 | SNSFeed면 | "사랑하는 우리 남편 하이^^"...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공개한 유튜브버 고소     | 인터넷신문 |
| 제2021-649호                              | 부산닷컴                                 | 5월 11일 | 사회면      | '사형 구형' 정인이 양모, 옥중서 이민 고민?... 양부에 쓴 편지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21-650호                              | 아이뉴스24 (inews24)                     | 5월 11일 | 사회면      | 이민 계획했나...정인이 양모 옥중 편지 공개, 친딸 영어교육 당부            | 인터넷신문 |
| 제2021-651호                              | 인사이트                                 | 5월 11일 | 사회면      | "이민 가게 될지도 모르니 '영어' 읽어줘라"...정인이 양모가 감옥에서 쓴 편지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652호                              | 인터넷 국민일보                             | 5월 11일 | 시사면      | "이민 가게 될지도 몰라...영어 읽어줘"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653호                              | 인터넷 매일신문                             | 5월 11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이민갈지 모르니 딸 영어교육 하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654호                              |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 5월 10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가 남편에게 쓴 옥중편지 "이민 예고·탄원서 잘쓰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655호                              | 인터넷 세계일보                             | 5월 11일 | 사회면      | "이민 갈지 모르니 영어 읽어줘" "최고의 시어른들이세요"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추정글 | 인터넷신문 |
| 제2021-656호                              | 인터넷 시사저널                             | 5월 11일 | 사회면      | '사형 구형'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서 이민·주식 언급하며 웃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657호                              | 인터넷 이데일리                             | 5월 11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 추정 옥중편지 "이민갈지 모르니 딸 영어교육 하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658호                              | 인터넷 충청일보                             | 5월 13일 | 사회면      | 친딸 영어교육 걱정, 정인이 양모 옥중 편지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 인터넷신문 |
| 제2021-659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5월 10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가 남편에게 쓴 옥중편지 "이민예고·탄원서 잘쓰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660호                              | 하핑턴포스트 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 5월 11일 | 뉴스면      | "이민갈지 모르니 딸 영어 교육하라" 정인이 양모로 추정되는 이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661호                              | e머니에스 (e money S)                    | 5월 11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로 친딸 영어교육 걱정?... "이민갈지도 몰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662호                              |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 5월 11일 | 뉴스면      | "이민 가게 될지도"...정인이 양모, 옥중편지로 친딸 영어교육 당부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663호   | 언론사명 | 중앙일보(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중앙일보 2021년 05월 11일 사회면<br>「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이민 갈지 모르니 딸 영어 시켜라”」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 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이 가족에게 보낸 옥중편지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편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br>비록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간 서신 내용을 게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66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64호 | UPI뉴스통신               | 5월 12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 편지 공개 유튜브, 양부에 고소 당해                       | 뉴스통신  |
| 제2021-665호 | 뉴스21                  | 5월 11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 옥중 편지 논란 “이민갈지 모르니 딸 영어시켜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666호 | 싱글리스트                 | 5월 11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공개? “이민 갈지도 몰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667호 | 아시아경제닷컴               | 5월 12일 | 사회면  | “이민 갈 지 몰라”...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공개한 유튜브, 양부·사부모에 고소당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668호 | 아시아투데이<br>ASIATODAY닷컴 | 5월 11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로 친딸 영어교육 당부?...“이민 갈지도 몰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669호 | 이투데이                  | 5월 11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친딸 영어 읽어줘·주식은 잘 팔았어”                 | 인터넷신문 |
| 제2021-670호 | 인터넷 서울경제              | 5월 11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 추정 옥중편지 논란...“이민 가게 될지도, 친딸에 영어로 보고 들려줘” | 인터넷신문 |
| 제2021-671호 | 인터넷 서울신문              | 5월 11일 | 사회면  | “아침에 기도하고 너무 활발” 정인이 양모 수감생활 [이슈픽]                | 인터넷신문 |
| 제2021-672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5월 11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이민 갈지 모르니 딸 영어 시켜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66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73호 | 인터넷 한국경제                        | 5월 10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가 양부에게 쓴 옥중편지 "친딸 영어책 읽어줘"           | 인터넷신문 |
| 제2021-674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5월 11일 | 사회면  |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로 '이민 걱정'에 친딸 영어교육 당부          | 인터넷신문 |
| 제2021-675호 | 뉴스스(NEWSIS)                     | 5월 12일 | 사회면  | "사랑하는 남편^^" 정인이 양부, 편지 공개 유튜브 고소           | 뉴스통신  |
| 제2021-676호 | 매일안전신문                          | 5월 12일 | 사회면  | "남편 하이 ^^" 정인이 양모가 쓴 옥중 편지 공개...<br>유튜브 고소 | 인터넷신문 |
| 제2021-677호 | 인터넷 경북일보                        | 5월 10일 | 사회면  | 정인이 사건, 양모가 양부·시아버지에게 보낸<br>'옥중편지'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678호 | 한국면세뉴스<br>(Korea DutyFree News) | 5월 11일 | 종합면  |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겠다" 정인이 양모 추정<br>옥중편지 공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679호   | 언론사명 | (주)뉴스와사람들 |
|---------|--|------|-----------|
| 대상보도    | 뉴스프리존(News Free Zone) 2021년 05월 25일 사회면<br>「윤석열 장모 재판, 언론보도를 살펴보니..MBC 홀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인 형사사건 피고인의 성명을 익명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성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윤 전 총장이 대표적인 공인이라 할지라도 공인의 장모란 이유로 당사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다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실명 공개 없이도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공익적 비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공인이 아닌 일반인인 피고인의 실명을 드러내어 공개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대법원이 확립한 익명보도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67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80호 | 국민뉴스                | 6월 6일 | 뉴스종합면 | “10원 한장은 윤석열의 검찰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윤로남불·내수남공’ 목소리 | 인터넷신문 |
| 제2021-681호 | 노컷뉴스                | 6월 3일 | 정치면   | 윤석열 측 “조국이 발언 왜곡·형사처벌 대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682호 | 오마이뉴스<br>(OhmyNews) | 6월 2일 | 정치면   | 윤의 장모와 싸우는 사람들 “윤석열 ‘10원 한장’ 발언, 후안무치”         | 인터넷신문 |
| 제2021-683호 | 인터넷 경기신문            | 6월 2일 | 정치면   |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실드’ 가이드라인... 오히려 ‘족쇄’            | 인터넷신문 |
| 제2021-684호 | 인터넷 아주경제            | 6월 1일 | 사회면   |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구형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685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투리(Wikitree) 2021년 05월 10일 사회면<br>「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보도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50대 중국인이 국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을 전하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제목을 사용하였다.<br>비록 음주운전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긴 하나 이는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적에 관한 내용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보도한 것으로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 및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686호</b>   | <b>언론사명</b> | <b>(주)씨비에스아이</b> |
| <b>대상보도</b>    | 노컷뉴스 2021년 05월 20일 전국면<br>「“기분 좋아져, 패치하자”...학교로 퍼진 마약성 진통제」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보도)  |             |                  |
| <b>권고사항</b>    |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사용방법, 구입 가격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b>이유</b>      |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사용방법, 구입 가격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br>이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 등 일부 독자층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68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87호 | 문화일보              | 5월 20일 | 12면    | 마약성 진통제 불법 처방 흡입·판매한 10대 42명             | 중앙일간지 |
| 제2021-688호 | 인터넷 문화일보          | 5월 20일 | 사회면    | 마약성 진통제 불법 처방... 흡입·판매한 10대 42명          | 인터넷신문 |
| 제2021-689호 | 경남매일              | 5월 21일 | 05면    | 겁 없는 10대 '모르핀 100배' 마약 진통제 투약            | 지역일간지 |
| 제2021-690호 | 인터넷 경남매일          | 5월 20일 | 뉴스면    | 겁 없는 10대 '모르핀 100배' 마약 진통제 투약            | 인터넷신문 |
| 제2021-691호 | 데일리팜 (Dailypharm) | 6월 1일  | 약국·병원면 | 심각한 청소년 마약패취 처방... "이제 약사가 나선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692호 | 인터넷 한국일보          | 5월 20일 | 사회면    | 마약성 진통제 학교서도 투약... 대범한 10대들 무더기 검거       | 인터넷신문 |
| 제2021-693호 | 일요신문              | 5월 28일 | -      | 사형수도 벌벌 떠는데 10대들이... '죽음의 마약' ○○○ 대체 뭐길래 | 인터넷신문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694호</b>   | <b>언론사명</b> | <b>국민일보(주)</b> |
| <b>대상보도</b> | 인터넷 국민일보 2021년 05월 07일 시사면<br>「7분간 맞은 여자...다급한 손짓에 멈춰 내린 시민(영상)」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의결번호    | 제2021-694호   | 언론사명 | 국민일보(주)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폭력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난 영상 게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의 CCTV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p> <p>비록 해당 영상이 폭행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 하더라도, 영상 속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69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95호 | 인사이트 | 5월 7일 | 정치사회면 | 전남친에게 붙잡혀 무차별 폭행 당하는 여성을 구해준 용감한 시민 (영상)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696호  | 언론사명 | (주)헤럴드 |
|---------|---|------|--------|
| 대상보도    |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1년 05월 04일 국제일반면<br>「[영상] 또 '증오 범죄'...美 한인 운영 주류매장서 '벽돌' 폭행」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폭력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난 영상 게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주류매장에 한 남성이 들어와 가게 주인인 한인 자매를 벽돌로 폭행하는 장면의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p> <p>비록 해당 영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층 심화된 아시아계 증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 하더라도, 영상 속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69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697호 | 뉴스1코리아   | 5월 5일 | 사회면  | 벽돌로 한인 자매 머리 마구 내리친 美과한·이벤엔 주류 매장 [영상] | 뉴스통신  |
| 제2021-698호 | 인터넷 국민일보 | 5월 6일 | 국제면  | “가게 문닫다 벽돌폭행...한인자매 도와주세요”(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699호 | 조선닷컴     | 5월 4일 | 국제면  | 美 한인 자매 벽돌로 쳤다... 문닫는 가게 침입해 증오범죄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700호  | 언론사명 | (주)로앤컴퍼니 |
|---------|---|------|----------|
| 대상보도    | 로톡뉴스 2021년 05월 06일 판결뉴스면<br>「[단독]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4시...그 집 아이들은 공포의 시간이었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폭력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난 영상 게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아이들의 아빠가 출근한 뒤 동거 여성이 아이들을 학대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가해자가 아이들에게 행한 가학적인 학대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적시하였다. 비록 해당 내용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학대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701호   | 언론사명 | (주)중도일보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중도일보 2021년 05월 17일 건강/의료면<br>「[건강]○○○병원 ○○○ 원장 “대전에서 안과 최고수준 의료서비스 실현을”」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br>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70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702호 | 중도일보     | 5월 17일 | 10면    | 지역서도 최고수준 눈 진료 가능토록 최선 다해                | 지역일간지 |
| 제2021-703호 | e-울산매일신문 | 5월 16일 | 사회면    | 울산 ○○○병원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704호 | 울산매일     | 5월 17일 | 10면    | ○○○병원 개원...“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               | 지역일간지 |
| 제2021-705호 | 인터넷 의학신문 | 5월 11일 | 의원·병원면 | ○○안과, ‘망막’ 병원 도약 위한 진료플랫폼 강화             | 인터넷신문 |
| 제2021-706호 | 인터넷 중도일보 | 5월 23일 | 건강/의료면 | [건강] “성공적 재활에서 일상 복귀를” ○○○요양병원 ‘365일 치료’ | 인터넷신문 |
| 제2021-707호 | 당진시대     | 5월 3일  | B10면   | “여성 건강” 고민 함께 해결하고파”                     | 주간지   |

| 의결번호    | 제2021-708호   | 언론사명 | (주)굿메이커스 |
|---------|--|------|----------|
| 대상 보도   | 포스트쉐어(postshare) 2021년 06월 11일 SNS PICK면<br>「아내 외질혜와 이혼 선언하더니 얼굴 확 달라진 철구」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미성년 일반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초상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한 유명 남성BJ(방송자키)의 근황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딸의 초상을 게재하였다. 비록 해당 남성이 딸이 등장하는 사진을 스스로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하더라도, 이 남성의 성매매, 도박, 가정폭력 사실을 언급하는 부정적 기사에 이와 무관한 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장과정은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노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제 1 부

시 정 권 고 현 황

제 2 부

주 요 시 정 권 고 사 례

제 3 부

시 정 권 고 전 체 목 록

부 록

| 의결번호    | 제2021-709호  | 언론사명 | 경북일보(주) |
|---------|---|------|---------|
| 대상 보도   | 인터넷 경북일보 2021년 06월 24일 사회면<br>「주민 신고 접수…구미 실종 60대 공개수사 3시간 만에 찾아」 제하의 보도  |      |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 사항   | 대상 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구미 지역 경찰서의 공개수사와 주민의 신고를 통해 실종자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실종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종자의 초상을 공개하고 성명, 나이, 체형, 거주지 등을 노출하였다.</p> <p>위 기사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사의 보도시점이 실종자를 발견한 이후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미 발견된 실종자의 실종당시 모습이 담긴 초상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한 것은 일반인인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710호  | 언론사명 | (주)미디어인그램 |
|---------|---|------|-----------|
| 대상 보도   | 오픈 디스커스_중복 폐지 2021년 06월 05일 Net.이슈면<br>「한예슬 이어 김준희 저격 “남편 만난 곳 어딘지 물어봐라”」 제하의 보도  |      |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 사항   | 대상 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초상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 여자 연예인의 남편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다며 폭로를 예고한 유튜브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남편의 초상을 공표하였다.</p> <p>비록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자신의 SNS에 남편의 초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내용의 언급과 함께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 남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711호   | 언론사명 | 김지수(살구뉴스) |
|---------|--|------|-----------|
| 대상 보도   | 살구뉴스 2021년 05월 31일 오늘의 핫이슈면<br>「양주 고기 집 갑질 모녀 사건 보배드림 폭발시킨 충격적인 전말(+목사 얼굴 교회 신상 ○○○)」<br>제하의 보도  |      |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 사항   | 대상 보도 중 일반인의 음성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목사가 음식을 다 먹은 후 환불해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고깃집 주인과 해당 손님 간 통화 녹음파일이 담긴 모 인터넷 게시판 링크를 게시하여 손님의 음성을 공개하였다.<br>이는 사인 간의 대화 또는 통화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음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712호  | 언론사명 | (주)조선뉴스프레스 |
|---------|---|------|------------|
| 대상 보도   | 여성조선 2021년 06월 01일 214면<br>「SNS에 뜬 삼성 이재용 부회장 딸」 제하의 보도   |      |            |
| 매체 구분   | 월간지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 사항   | 향후 보도 시 유사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기업인의 딸에 대한 근황이 SNS에 공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외국인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의 SNS를 인용하여 그의 초상과 함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친구와의 개인적 일상 등 사생활을 공개하였다.<br>비록 유명 기업인 가족의 외부활동은 공중의 관심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에 반해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의 휴식이나 사소한 일상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인격전개를 방해할 우려가 높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장 및 교육과정은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일상생활에서의 초상과 사생활을 공개한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부 록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713호</b>  | <b>언론사명</b> | <b>(주)세계뉴스통신</b> |
| <b>대상보도</b>    | 세계뉴스통신 2021년 06월 28일 사회면<br>「분당 실종 고교생...아산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b>권고사항</b>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b>이유</b>      | 위 기사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실종되었던 한 고등학생이 7일만에 아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실종 당시 작성된 진단지를 인용하였다.<br>비록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실종자의 사망 사실 확인 이후 게재된 보도에서 진단지 속 실종자 모친의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노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등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71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714호                             | e머니에스 (e money S)                    | 6월 28일 | -    | 경찰 "서현고 김휘성군 숨진 채 발견, 타살 정황 없다"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715호                             |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 6월 28일 | 뉴스면  | 수능특강 5권 산 뒤 홀연히 사라진 김휘성군...사망 미스터리           | 인터넷신문 |
| 제2021-716호                             | 동아닷컴                                 | 6월 28일 | 사회면  | 분당 실종 고교생 아산서 숨진채 발견                         | 인터넷신문 |
| 제2021-717호                             | 미디어 붓                                | 6월 28일 | 뉴스면  | 김휘성군 실종 7일만에 숨진채 발견...“입었던 교복 그대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718호                             | 인터넷 경기신문                             | 6월 28일 | 사회면  | 김휘성 군 실종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719호                             | 인터넷 경인일보                             | 6월 28일 | 사회면  | 성남시 분당 서현고 김휘성 군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 인터넷신문 |
| 제2021-720호                             | 인터넷 인천일보                             | 6월 28일 | 사회면  | [2보] 성남 김휘성군 분당 아산서 숨진채 발견                   | 인터넷신문 |
| 제2021-721호                             | 인터넷 한국일보                             | 6월 28일 | -    | 서현고 실종 학생 결국...경기교육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 인터넷신문 |
| 제2021-722호                             | 하핑턴포스트 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 6월 28일 | 뉴스면  | 성남 분당에서 사라진 고3 김휘성군이 실종 7일 만에 아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723호   | 언론사명 | (주)더뉴스그룹 |
|---------|--|------|----------|
| 대상보도    | UPI뉴스통신 2021년 06월 10일 연예면<br>「가세연, 이번엔 공개 안 된 ○○○ 남편 신상과 얼굴 공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사생활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여자 연예인 남편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한 유튜브를 인용하며 그가 아내가 사준 차를 타고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br>이는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인 남편의 내밀영역 내지 사적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72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724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6월 10일 | 연예면  | 김용호 “아내 BMW 타고 딴 여자와 모텔”...○○○ 남편 신상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725호 | sportschosun.com          | 6월 10일 | 연예면  | “○○○ 남편이 모텔에” 외도설 제보...이미 선을 넘어버린 ‘가세연’의 짝주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726호 | STN SPORTS                | 6월 10일 | 연예면  | 가세연, 한예슬 이어 ○○○ 저격...남편 ‘얼굴+신상’ 강제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727호 | TV Daily<br>(티브이데일리)      | 6월 10일 | -    | ○○○ 불화설까지...‘가세연’의 브레이크 없는 막무가내식 폭로 [이슈&톡]               | 인터넷신문 |
| 제2021-728호 | 뉴스엔                       | 6월 15일 | -    | 연예인 사생활 난타전에 애꿎은 일반인 ‘피바람’ [이슈와치]                        | 인터넷신문 |
| 제2021-729호 | 더팩트                       | 6월 11일 | 연예면  | ‘가세연’의 폭주...이번엔 배우 ○○○ 저격                                | 인터넷신문 |
| 제2021-730호 | 데일리스포츠월드                  | 6월 11일 | 연예면  | [SW사선] ○○○, 남편 얼굴+신상 공개에 대처는                             | 인터넷신문 |
| 제2021-731호 | 마이데일리                     | 6월 11일 | -    | “가세연, 살인미수”...○○○ 남편 모텔行 제보, YG ‘무대응’ 응원받는 이유 [MD이슈](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732호 | 셀럽미디어                     | 6월 11일 | 연예면  | [이슈 VIEW] “선 넘은 거 인정”한다던 ‘가세연’ ○○○ 저격은 한예슬 탓?            | 인터넷신문 |

| ■ 제2021-72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7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733호                              | 스타뉴스<br>(star news)    | 6월 10일 | 엔터테인먼트면 | ○○○ 남편 얼굴 강제공개.. "딴 여자랑 충격적 사진"                      | 인터넷신문 |
| 제2021-734호                              | 스타투데이                  | 6월 10일 | -       | 한예슬→○○○, '가세연' 선 넘은 폭로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735호                              | 싱글리스트                  | 6월 10일 | 문화면     | [종합]한예슬 이어 ○○○, 일반인 남편 신상까지 타는 가세연                   | 인터넷신문 |
| 제2021-736호                              | 오에스이엔<br>(OSEN)        | 6월 11일 | 연예면     | '가세연' 김용호, ○○○ 남편 사진 공개 "선 넘었다" 인정.. "한예슬은 끝까지"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737호                              | 인터넷 금강일보               | 6월 15일 | 문화면     | ○○○ 스캔들이 일본까지?...가세연이 쓰아올린 작은 공                      | 인터넷신문 |
| 제2021-738호                              | 인터넷 서울경제               | 6월 11일 | 사회면     |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변협, 강용석에 1,000만원 징계                  | 인터넷신문 |
| 제2021-739호                              | 인터넷 이데일리               | 6월 12일 | 연예면     | [슈팅스타] 한예슬→○○○ '남편, 나와 모텔에..' 폭로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21-740호                              | 인터넷 전기신문               | 6월 10일 | -       | ○○○ 남편, "과거 개명한 것까지..." 폭로 쏟아낸 '가세연' 발언 이슈몰이         | 인터넷신문 |
| 제2021-741호                              | 인터넷 한국경제               | 6월 10일 | 연예면     | 가세연 "○○○ 남편 모텔 출입 사진 확보" 신상 강제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742호                              | 인터넷 한국일보               | 6월 10일 | -       | ○○○ 남편 얼굴 공개 "모텔 행" 유투버 주장에 YG '무대응'                 | 인터넷신문 |
| 제2021-743호                              |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 6월 11일 | 문화면     | 선 넘은 가세연 "○○○ 남편 선수 본능 못 바꾼다" 불륜 의혹까지.. 비판 목소리 ↑     | 인터넷신문 |
| 제2021-744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6월 11일 | 사회면     | 변협, '품위유지 위반' 강용석에 과태료 1000만원 징계                     | 인터넷신문 |
| 제2021-745호                              | 조선닷컴                   | 6월 10일 | 연예면     | "○○○ 남편이 모텔에" 외도설 제보...이미 선을 넘어버린 '가세연'의 질주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746호                              | 텐아시아                   | 6월 10일 | 연예기획재면  | [TEN이슈]○○○ 남편 신상 털고 한예슬 탓...가세연 지키던 선은 어디에?          | 인터넷신문 |
| 제2021-747호                              | 톱스타뉴스<br>(TopStarNews) | 6월 11일 | -       | '가세연' 김용호, "어제 내가 선을 좀 넘었다...한예슬은 끝까지 갈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748호                              | 팩트경제신문                 | 6월 10일 | 트렌드면    | 가세연, 이번엔 ○○○ 남편 외도설... "다른 여자와 모텔, 증거사진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749호                              | 포스트쉐어<br>(postshare)   | 6월 10일 | -       | "○○○ 남편이 다른 여성과 모텔 출입했습니다" 실시간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750호                              | 한국미디어<br>뉴스통신          | 6월 10일 | NC면     | 한예슬, 김준희에 이어 배우 ○○○ 남편 공개저격한 연예부장 김용호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751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트리(Wikitree) 2021년 06월 09일 엔터면<br>「“모짜르트, 라스베가스...” 폭로 예고했던 김용호, 첫 번째 타깃으로 ○○○ 골랐다 (영상)」<br>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초상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여자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한 유튜브를 인용 보도하면서, ‘모짜르트’라는 별칭과 함께 남편의 초상을 공개하였다.<br>이는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인 남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752호   | 언론사명 | (주)일간경북신문 |
|---------|--|------|-----------|
| 대상보도    | 일간경북신문 2021년 06월 18일 13면<br>「김용호 “한예슬, 배 나온 아저씨랑 룸으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지역일간지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향후 보도 시 유사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여자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유튜브를 인용하며 그가 한 남성과 룸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br>비록 해당 연예인이 유명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기사는 내밀영역 내지 사적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노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부 록

| ■ 제2021-75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3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753호                              | 인터넷<br>일간경북신문             | 6월 17일 | 문화면      | 김용호 “한예슬, 배 나온 아저씨랑 룸으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754호                              | 뉴스스(NEWSIS)               | 6월 17일 | 연예면      | 김용호, 한예슬 또 저격...‘슈퍼모델 데뷔 첫 날 생긴 일’                | 뉴스통신  |
| 제2021-755호                              | e머니에스<br>(e money S)      | 6월 17일 | 연예면      | “한예슬,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냐”... 김용호의 적나라한<br>추가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756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6월 19일 | 연예면      | 한예슬, 법적 대응 예고→김용호 “일요일 라방 기대해<br>주세요”             | 인터넷신문 |
| 제2021-757호                              | 뉴스엔                       | 6월 14일 | -        | 한예슬, 김용호 “거짓 해명” 반박에도 아랑곳 없는 당당<br>행보(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758호                              | 마이데일리                     | 6월 17일 | 연예면      | “한예슬, 경찰조사서 밝히게 고소하라”...김용호, 또 의혹<br>제기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759호                              | 매일안전신문                    | 6월 17일 | 종합뉴스면    | 김용호, 또 한예슬 공개저격...룸살롱 의혹 제기                       | 인터넷신문 |
| 제2021-760호                              | 스타뉴스<br>(star news)       | 6월 17일 | 엔터테인먼트면  | 높은 엔터 “한예슬 광고계 손절? 오보”[공식]                        | 인터넷신문 |
| 제2021-761호                              | 싱글리스트                     | 6월 17일 | 문화면      | 김용호, 한예슬 룸살롱 의혹 재차 제기 “해명해봐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762호                              | 아이뉴스24<br>(inews24)       | 6월 17일 | 연예·스포츠면  | “한예슬, 도대체 어떤 인생 살았나” 김용호, 또 룸살롱<br>의혹 제기          | 인터넷신문 |
| 제2021-763호                              | 오에스이엔<br>(OSEN)           | 6월 14일 | 연예면      | 김용호, “한예슬 룸살롱 말할 것 같은데..” 과거<br>폭로→해명 방송 재반박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764호                              | 인터넷 국민일보                  | 6월 18일 | 시사면      | “LA 룸살롱 다녔다?” 김용호 폭로에 한예슬 법적 반격                   | 인터넷신문 |
| 제2021-765호                              | 인터넷 문화일보                  | 6월 17일 | 문화면      | “배 나온 아저씨랑 룸으로” 김용호, 한예슬 또 ‘카더라’ 저격               | 인터넷신문 |
| 제2021-766호                              | 인터넷 세계일보                  | 6월 17일 | 연예면      | 김용호, 한예슬 또 저격 “데뷔 첫날 생긴 일” 의혹 제기                  | 인터넷신문 |
| 제2021-767호                              | 인터넷<br>스포츠동아              | 6월 17일 | -        | 김용호 폭주 “한예슬, 똥똥한 아저씨와 룸에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768호                              | 인터넷 이데일리                  | 6월 19일 | 연예면      | [슈팅스타] 한예슬 ‘룸 올라가..’ 폭로에 ‘유명 로펌과<br>강경 대응’        | 인터넷신문 |
| 제2021-769호                              | 인터넷 제민일보                  | 6월 20일 | Culture면 | 한예슬, 칼 빼들었는데...김용호는? “LA 룸살롱 다닌<br>남자들은 다 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770호                              | 인터넷 한국경제                  | 6월 17일 | 연예면      | “고소하라” 김용호, 한예슬 LA 룸살롱 의혹 재차 제기                   | 인터넷신문 |
| 제2021-771호                              | 인터넷<br>한국정경신문             | 6월 19일 | 문화면      | 가세연 김용호 “한예슬 미국 룸살롱 일가 출신..법적 대응<br>걱정 인해”        | 인터넷신문 |

### ■ 제2021-75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772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6월 17일 | 셀럽면        | '가세연' 김용호, 한예슬 또 저격... "관행처럼 남성과 방으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773호 | 티비리포트               | 6월 18일 | -          | 김용호 폭로에 한예슬 법적 대응 예고                  | 인터넷신문 |
| 제2021-774호 | 위키트리 (Wikitree)     | 6월 20일 | 엔터면        | 또 한예슬 간 김용호, 이번엔 심각하다... '탈세' 의혹 터졌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775호 | 포스트쉐어 (postshare)   | 6월 22일 | NEWS PICK면 | "실시간 한예슬의 침대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녹취록)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776호   | 언론사명 | 김지수(살구뉴스) |
|---------|--|------|-----------|
| 대상보도    | 살구뉴스 2021년 06월 11일 오늘의 핫이슈면 「○○은행 스캔들 불륜 폭로 재조명되는 충격적인 공기총 사건(+인스타 카톡 결혼 청첩장)」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내용과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개인 간의 불륜 사건을 폭로한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며 해당 사건이 과거 발생했던 또 다른 불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는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나이, 직업, 졸업한 학교 등을 공개하여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의 없이 사적 대화 내용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을 게재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77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777호 | 인사이트              | 6월 11일 | 핫이슈면 | 블라인드앱에 올라와 난리난 유명 은행 '71년생 팀장 90년생 사원'의 불륜 사건 | 인터넷신문 |
| 제2021-778호 | 포스트쉐어 (postshare) | 6월 11일 | -    | 실시간 블라인드 ○○은행 불륜 사태 (+신상, 풀카톡)                | 인터넷신문 |

|         |  |      |         |
|---------|--|------|---------|
| 의결번호    | 제2021-779호   | 언론사명 | (주)문화방송 |
| 대상 보도   | MBC 2021년 06월 08일 뉴스데스크면<br>「[단독] “입에 씹”…동물 배설물까지 먹인 ‘이모 부부’」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방송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      |         |
| 권고사항    | 향후 보도 시 유사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공판기일에 검찰이 공개한 동영상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함과 잔인함이 느껴지는 가학적인 범죄 수법(학대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해당 내용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학대 정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 이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77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780호 | 뉴스1코리아                 | 6월 8일 | 지방면    | 이모가 조카에 개똥 먹이는 학대 영상에 “개같은 X, 사형시켜라”           | 뉴스통신  |
| 제2021-781호 | e머니에스 (e money S)      | 6월 9일 | 정치/사회면 | “그들은 악마였다”... 이모부부, 10살 조카 학대 영상 공개되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782호 |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 6월 9일 | 뉴스면    | 10살 조카에 개똥까지 먹였다...‘물고문’ 이모부부 학대 영상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783호 | 경기포커스신문                | 6월 8일 | 종합뉴스면  | 이모가 조카에 개똥 먹이는 학대 영상에 “개같은 X, 사형시켜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784호 | 인터넷 국민일보               | 6월 8일 | 시사면    | 개똥 먹이며 “입에 씹”...‘조카 물고문’ 충격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785호 | 족구뉴스                   | 6월 9일 | 종합뉴스면  | 조카 물고문 살인, 동영상 공개 ‘경악’ 그자체...방청석 아수라장... 어땠길래? | 인터넷신문 |

|         |   |      |         |
|---------|---|------|---------|
| 의결번호    | 제2021-786호  | 언론사명 | (주)영남일보 |
| 대상 보도   | 영남일보 2021년 06월 15일 17면<br>「항문수술 10만례 쾌거...새로운 수술법·약제 진취적으로 도입」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지역일간지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의결번호 | 제2021-786호   | 언론사명 | (주)영남일보 |
|------|--|------|---------|
| 권고사항 | 향후 보도 시 유사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p> <p>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78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787호 | 인터넷 영남일보           | 6월 15일 | 건강면      | ○○○ 대구 ○병원 원장 “항문수술 10만례 쾌거…새로운 수술법·약제 진취적으로 도입” | 인터넷신문 |
| 제2021-788호 | 경기매일               | 6월 29일 | 15면      | ○○○의원, 양심적인 진료에 디지털 진료를 입하다                      | 지역일간지 |
| 제2021-789호 | 인터넷 경기매일           | 6월 28일 | 뉴스면      | ○○○의원, 양심적인 진료에 디지털 진료를 입하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790호 | 내외통신뉴스             | 6월 28일 | 사회면      | ○○○의원, 양심적인 진료에 디지털 진료를 입하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791호 | 인터넷뉴스신문고           | 6월 28일 | 사회면      | ‘○○○의원’, ○○○적인 진료에 디지털 진료를 더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792호 | 서울뉴스통신             | 6월 23일 | 문화면      | ○○○병원, 7일 ○○역으로 확장이전                             | 뉴스통신  |
| 제2021-793호 | Auto Today (오토투데이) | 6월 24일 | 산업/경제면   | 관절·척추 특화 ○○○병원, 7일 ○○역으로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794호 | 메디파나뉴스             | 6월 23일 | 메디시안면    |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795호 | 보간뉴스               | 6월 23일 | 메디뉴스면    |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796호 | 인터넷 경기매일           | 6월 14일 | 뉴스면      | 관절·척추 특화 ○○○병원, 7일 ○○역으로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797호 | 인터넷 경인일보           | 6월 23일 | 지역종합면    | 관절·척추 특화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798호 | 인터넷 새부천신문          | 6월 10일 | 단체소식면    | 관절·척추 특화 ○○○병원, 7일 ○○역으로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799호 | 인터넷 우리일보           | 6월 24일 | 전국 네트워크면 | 관절·척추 특화 ○○○병원, 7일 ○○역으로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800호 | 인터넷 의학신문           | 6월 11일 | 의원·병원면   |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801호 | 인터넷 중앙일보           | 6월 28일 | 사회면      | [건강한 가족] 17만 명 환자 빅데이터 분석해 퇴행성 관절염 맞춤형 치료        | 인터넷신문 |
| 제2021-802호 |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 6월 10일 | 전체기사면    | ○○○병원 확장 이전, 12명 전문의가 척추·관절 등 ‘맞춤 치료’ 선배         | 인터넷신문 |

**■ 제2021-78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803호 | 헬스조선     | 6월 10일 | 뉴스면   | 관절·척추 특화 000병원, 7일 00역으로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804호 | 국제뉴스     | 5월 25일 | 전국면   | 000병원, 신관 인공신장센터 오픈 + 내시경실 리모델링         | 뉴스통신  |
| 제2021-805호 | 메디파나뉴스   | 5월 25일 | 메디시안면 | 000병원, 신관 인공신장센터 오픈 및 내시경실 리모델링         | 인터넷신문 |
| 제2021-806호 | 부산닷컴     | 5월 31일 | -     | 000병원, 신관 3층에 '인공신장센터' 추가 개설            | 인터넷신문 |
| 제2021-807호 | 헬스포커스뉴스  | 5월 26일 | 의료면   | 000병원, 신관 인공신장센터 오픈·내시경실 리모델링           | 인터넷신문 |
| 제2021-808호 | 울산매일     | 6월 3일  | 03면   | 울산 000 병원, 지역 첫 '로봇 인공관절수술' 도입          | 지역일간지 |
| 제2021-809호 | e-울산매일신문 | 6월 2일  | 사회면   | 울산 000 병원, 6월부터 본격 진료<br>"척추와 관절 분야 전문"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810호  | 언론사명 | (주)디지털타임스 |
|---------|---|------|-----------|
| 대상보도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2021년 06월 01일<br>「"너 모가지 댄다"…10대 딸 협박하고 폭행한 엄마의 최후」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딸을 협박하고 폭행한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모가지 댄다"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br>비록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알리기 위해 가해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해당 용어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81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811호 | 인터넷 세계일보 | 6월 1일 | 사회면  | "너 모가지 댄다"… 10대 딸 협박·폭행한 엄마 징역 1년   | 인터넷신문 |
| 제2021-812호 | 조선닷컴     | 6월 1일 | 사회면  | "너 모가지 댄다" … 10대 딸 협박한 40대 엄마 법정 구속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813호   | 언론사명 | (주)머니앤밸류 |
|---------|--|------|----------|
| 대상보도    | e머니에스(e money S) 2021년 07월 05일<br>「“OOO, 성관계 좋아하는 멤버”…권민아 발언 ‘후폭풍’」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성명 및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한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자신의 그룹 내에서 성관계를 좋아하는 멤버가 있었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의 실명을 공개하였다.<br>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을 거론하면서 그의 실명까지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81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814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7월 6일 | 연예면     | 권민아, AOA 성관계 좋아하는 멤버 실명 공개→<br>등 돌린 여론             | 인터넷신문 |
| 제2021-815호 | sportschosun.<br>com      | 7월 7일 | 연예면     | [SC이슈] 권민아, 드디어 멈춘 폭로기관차...“성관계<br>좋아해” AOA 상처 어쩌나 | 인터넷신문 |
| 제2021-816호 | 국제뉴스                      | 7월 5일 | 연예면     | OOO 저격 권민아, 저격글 삭제...실명 언급 여파[종합]                  | 뉴스통신  |
| 제2021-817호 | 디스패치뉴스                    | 7월 5일 | ALL면    | “아 그거 OOO”..권민아, 성관계 좋아하는 멤버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818호 | 매일안전신문                    | 7월 6일 | 종합뉴스면   | AOA 출신 권민아, 양다리 사건 후 OOOX설현<br>또 저격... ‘남의 성생활을 왜’ | 인터넷신문 |
| 제2021-819호 | 셀럽미디어                     | 7월 6일 | 연예면     | ‘양다리 논란+AOA 재폭로’ 권민아 “모든 것 내려놓고<br>자숙하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820호 | 위키트리<br>(Wikitree)        | 7월 5일 | 엔터면     | AOA OO ‘성관계’ 폭로한 권민아...급기야 ‘학폭’<br>의혹 터졌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821호 | 인터넷 국민일보                  | 7월 6일 | 시사면     | “성관계 좋아하는 멤버?” 권민아, AOA 실명 폭로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822호 | 인터넷<br>스포츠경향              | 7월 6일 | 연예면     | “모든 걸 내려놓겠다” 지속 선언한 권민아,<br>간과한 말의 무게              | 인터넷신문 |
| 제2021-823호 | 인사이트                      | 7월 6일 | 엔터테인먼트면 | “OO, 성관계 좋아한다” 폭로한 뒤 자숙하겠다고 밝힌 권민아                 | 인터넷신문 |
| 제2021-824호 | 인터넷 금강일보                  | 7월 6일 | 문화면     | [종합] AOA OO 사생활에 실명 언급까지...권민아의 SNS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825호 | 조선닷컴                      | 7월 5일 | 문화·라이프면 | SNS 못 놓는 권민아, 설현 비난 이유에 “박쥐같아”                     | 인터넷신문 |
| 제2021-826호 | 톱스타뉴스<br>(TopStarNews)    | 7월 6일 | -       | [TOP이슈] 권민아, “OOO이 임종 못 지키게 했다”<br>진실일까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827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투트리(Wikitree) 2021년 07월 29일 엔터면<br>「박수홍 전 여친, 충격 폭로 메일...“비상식+불안정+악마 같은 성생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및 사생활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삭제하거나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한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유튜브 내용을 인용하여 최근 그와 혼인신고를 한 여성이 과거 한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후 이 남성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영상을 게시하여 이 여성의 초상이 드러나도록 하였다.<br>이는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내밀영역 내지 사적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공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82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828호 | 살구뉴스                | 7월 30일 | 오늘의 핫이슈면 | 박수홍 여자친구 유정환 몽드드 대표 충격적인 셋의 관계(+○○○ 사진 나이 인스타 결혼) | 인터넷신문 |
| 제2021-829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7월 31일 | -        | 가세연, “박수홍 연애 기간 해명, 거짓말 팩트체크 해준 꼴”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830호  | 언론사명 | (주)경기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경기신문 2021년 07월 27일 뉴스면<br>「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분노 “김건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830호   | 언론사명 | (주)경기신문사 |
|------|--|------|----------|
| 이유   | <p>위 기사는 '동거설'이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과 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모친을 취재한 결과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다.</p> <p>설령 당사자들이 공적 지위에 있었다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공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고, 대선후보 부인의 과거 이력이나 행적이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중요한 인격권에 해당하는 내밀영역 내지 사적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한 부분은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83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831호 | 뉴스프리존 (News Free Zone) | 7월 27일 | 사회면  | 김건희 주장 무너뜨린 양재택 모친 “尹과 金 이대로 둘 수는 없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832호 |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 7월 27일 | 사회면  | 김건희 주장 무너뜨린 양재택 모친 “윤석열 부부 이대로 둘 수는 없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833호 | 오마이뉴스 (OhmyNews)       | 7월 27일 | 정치면  | '동거설' 전 검사 모친 “윤석열 부부 아파트는 우리 집, 김건희 거 아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834호 | 인터넷시민사회신문              | 7월 8일  | 사람사면 | '출리'의 박사는문?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835호   | 언론사명 | (주)매일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매일신문 2021년 07월 12일 최신편 「예천서 실종된 80대 노인, 나흘 만에 발견...건강 상태 '양호」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성명, 나이를 공표한 부분을 수정·삭제하거나 익명처리하는 등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경북 예천 지역에서 실종된 노인을 4일 만에 찾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간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실종자의 성명과 나이를 공개하였다.</p> <p>위 기사의 게재시점이 이미 실종자를 발견한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성명 및 나이 등 사적정보를 계속해서 노출하는 것은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정보제공의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836호</b>   | <b>언론사명</b> | <b>(주)굿메이커스</b> |
| <b>대상보도</b>    | 포스트쉐어(postshare) 2021년 07월 22일 NEWS PICK면<br>「“조건만남..” 현재 오프맘 전남친 등장해 터뜨린 폭로 (+추가 제보, 녹취, 카톡)」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b>권고사항</b>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b>이유</b>      | 위 기사는 SNS 인플루언서이자 쇼핑몰 CEO로 활동하는 한 여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유튜브를 인용하면서, 그가 조건만남을 가졌고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비록 이 여성이 SNS 상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중요한 인격권에 해당하는 내밀영역 내지 사적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83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837호 | 살구뉴스            | 7월 24일 | 연애이슈면 | 오프맘 김용호 조건만남 실물 논란 충격적인 폭로내용 (+스폰 짜라시 과거 남편)    | 인터넷신문 |
| 제2021-838호 | 위키트리 (Wikitree) | 7월 22일 | 엔터면   | “오프맘과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입니다” 전 남친 등판, 오프맘 분노 폭발했다(+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839호 | 인사이트            | 7월 19일 | 핫이슈면  | ‘폭로’ 예고하는 김용호에게 오프맘이 보낸 ‘조건만남+재혼설’ 해명 카톡        | 인터넷신문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840호</b>  | <b>언론사명</b> | <b>중앙일보에스(주)</b>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일간스포츠 2021년 07월 27일<br>「“상사 강간” 청원에…“불륜 둔갑시켜 4억 요구” 반전의 카톡」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b>권고사항</b>    |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내용과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840호  | 언론사명 | 중앙일보에스(주) |
|------|---|------|-----------|
| 이유   | <p>위 기사는 부인이 직장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해 불륜 사건 당사자를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는, 이 직장상사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상반되는 양측 주장을 보도하였다.</p> <p>비록 해당 내용이 성범죄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자로 추정되는 측이 공개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내용(카카오톡)을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의 내밀영역 혹은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세히 공개돼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84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9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841호 | e머니에스 (e money S) | 7월 27일 | -        | "범죄 아닌 불륜" 아내 직장상사가 성폭행' 청원에 반박 카톡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842호 | 데일리안              | 7월 27일 | 사회면      | "아내 강간한 직장상사" 청원에 분노한 그 상사, 반전 카톡 폭로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843호 | 더팩트               | 7월 27일 | 전국면      | "상사가 아내 성폭행" vs "유부녀와 불륜"...나주 복지센터서 무슨 일이   | 인터넷신문 |
| 제2021-844호 | 디스패치뉴스            | 7월 27일 | SNSFeed면 | "10살 어린 상사 아내 강간" 남편 청원에..직장상사 "불륜 관계였다" 반박  | 인터넷신문 |
| 제2021-845호 | 인터넷 이데일리          | 7월 28일 | 사회일반면    | 누구말이 진짜?... "상사가 아내 강간"이라며 카톡엔 "자가 알라봉"      | 인터넷신문 |
| 제2021-846호 | 인터넷 뉴스토마토         | 7월 31일 | 사회면      | (영상)강간이나, 불륜이나                               | 인터넷신문 |
| 제2021-847호 | 인터넷 국민일보          | 7월 28일 | 사사면      | "상사가 아내 성폭행"...카톡엔 "자가 알라봉" 진실공방             | 인터넷신문 |
| 제2021-848호 | 인터넷 경북신문          | 7월 28일 | 경북신문TV면  | '상사가 아내 성폭행'..충격 카톡 공개 '자가 알라봉' 등 불륜관계 주장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21-849호 | 인사이트              | 7월 28일 | 정치·사회면   |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휴대폰 속 '반전' 카톡 대화 내용       | 인터넷신문 |
| 제2021-850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7월 27일 | 사건·사고면   | "아내가 직장상사에 성폭행" 청원원에..반전 카톡 등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851호 | 인터넷 한국경제          | 7월 27일 | 사회면      | "아내 강간당해 지옥 같은 생활"...성폭행인가 불륜인가 [법알못]        | 인터넷신문 |

■ 제2021-84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9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852호 | 인터넷<br>파이낸셜뉴스        | 7월 27일 | 사회면  | 어린 상사가 아내 강간?...“불륜이었다. 남편이 합의금<br>뜬내내려 해” 진실공방      | 인터넷신문 |
| 제2021-853호 | 인터넷 중앙일보             | 7월 27일 | 사회면  | “상사 강간” 청원에...“불륜 둔갑시켜 4억 요구”<br>반전의 카톡              | 인터넷신문 |
| 제2021-854호 | 인터넷 세계일보             | 7월 27일 | 사회면  | “상사가 아내 성폭행” VS “남편이 합의금 뜬오려”...<br>국민청원 새 국면 맞나     | 인터넷신문 |
| 제2021-855호 | 인터넷<br>부산파이낸셜뉴스      | 7월 27일 | 사회면  | 어린 상사가 아내 강간?...“불륜이었다. 남편이 합의금<br>뜬내내려 해” 진실공방      | 인터넷신문 |
| 제2021-856호 | 인터넷 매일신문             | 7월 27일 | 최신면  | “상사가 아내 성폭행” 청원에 반박 나와...“합의금 4억<br>뜬내내려 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857호 | 아시아경제닷컴              | 7월 27일 | 사회면  | “상사가 아내 성폭행”...카톡엔 “오피스 여보야” 진실공방                    | 인터넷신문 |
| 제2021-858호 | 조선비즈                 | 7월 28일 | 사회면  | “상사가 강간” vs “오피스 와이프”... 아내 성폭행 청청원<br>진실공방          | 인터넷신문 |
| 제2021-859호 | 포스트쉐어<br>(postshare) | 7월 27일 | -    | “아내가 10살 어린 직장상사에게 당했습니다” 실시간<br>난리난 청원 (+진실, 카톡 유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860호   | 언론사명 | (주)굿메이커스 |
|---------|--|------|----------|
| 대상보도    | 포스트쉐어(postshare) 2021년 07월 15일 NEWS PICK면<br>「실시간 커뮤니티 난리난 회사 단톡방 대참사 (+카톡 추가, 당사자 해명)」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내용과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br>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 속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적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과 함께 상급자로 언급된 사람의 성명을 공표하였다.</p> <p>이는 당사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성명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 내용(카카오톡)을 그대로 공표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861호  | 언론사명 | (주)조선일보사 |
|---------|---|------|----------|
| 대상 보도   | 조선닷컴 2021년 07월 19일 국제면<br>「강아지 싸움이 주인 싸움으로… 병으로 머리 내리치기도 [영상]」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영국 런던에서 일부 남성들이 강아지 문제를 놓고 크게 다투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br>비록 해당 영상이 폭행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데 필요했다 하더라도, 영상 속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862호  | 언론사명 | 김지수(살구뉴스) |
|---------|---|------|-----------|
| 대상 보도   | 살구뉴스 2021년 07월 01일 오늘의 핫이슈면<br>「skt 텔레마케터 욕설 충격적인 통화내용 전문(+막말 녹취록 원본 신상 누리꾼 반응 후기)」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한 텔레마케터가 고객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통화내용 전문과 녹음파일이 담긴 모 인터넷 게시판 링크를 게시하여 음성을 공개하였다.<br>비록 해당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욕설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데 필요했다 하더라도, 가학적인 언어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86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863호 | 인사이트 | 7월 1일 | 정치·사회면 | “SKT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XX 찢어버릴라’며 상욕을 퍼부었습니다” | 인터넷신문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864호</b>   | <b>언론사명</b> | <b>(주)매일신문사</b> |
| <b>대상보도</b>    | 인터넷 매일신문 2021년 07월 18일 최신편<br>「[○○○의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높은 인지도」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b>권고사항</b>    |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b>이유</b>      |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br>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86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865호 | 매일신문     | 7월 28일 | 34면      |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높은 인지도                           | 지역일간지 |
| 제2021-866호 | 인터넷 매일신문 | 7월 21일 | 최신편      | [○○○병원] 손, 발, 관절, 척추 등 신속한 수술 특성화병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867호 | 매일신문     | 7월 28일 | 33면      | 손가락 재건 미세 수술 특성화 병원 자리매김                     | 지역일간지 |
| 제2021-868호 | 인터넷 매일신문 | 7월 20일 | 최신편      | [○○병원] 허리-무릎-어깨 근골격계 질환 통합치료 시스템 구축          | 인터넷신문 |
| 제2021-869호 | 매일신문     | 7월 28일 | 30면      | ‘측방추체간유합술’ 대경 최초 도입                          | 지역일간지 |
| 제2021-870호 | 수도권지역신문  | 6월 29일 | 수도권1면    | 척추관절통 전문 ○○한의원 ○○○점, 바로고와 의료서비스 MOU 체결       | 인터넷신문 |
| 제2021-871호 | 월드툰뉴스    | 7월 1일  | 뉴스면      | ○○한의원 ○○○점, 바로고와 의료서비스 MOU체결                 | 인터넷신문 |
| 제2021-872호 | 뉴스앤부산    | 6월 30일 | 부산뉴스면    | ○○한의원 ○○○점, 바로고와 의료서비스 MOU체결                 | 인터넷신문 |
| 제2021-873호 | 얼리어답터뉴스  | 6월 29일 | 라이프 스타일면 | 척추관절통 전문 ○○한의원 ○○○점, 바로고와 의료서비스 MOU체결        | 인터넷신문 |
| 제2021-874호 | 헬스코리아뉴스  | 6월 23일 | 보건/산업면   | [콕집어 메디칼] 관절·척추 특화 ○○○병원, ○○역 인근 최신시설로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875호 | 인터넷 매일신문 | 7월 21일 | 최신편      | [○○○신경과] 24년 노하우 바탕으로 지역민 신경진료 맡아            | 인터넷신문 |
| 제2021-876호 | 매일신문     | 7월 28일 | 36면      | 연간 2만건 신경검사 인력·장비 갖춰                         | 지역일간지 |

| 의결번호    | 제2021-877호  | 언론사명 | (주)세계일보 |
|---------|---|------|---------|
| 대상보도    | 인터넷 세계일보 2021년 07월 26일 사회면<br>「“다리 벌려봐” “너무 예뻐서 그래” 지하철 1호선서 흥기 들이던 50대 男」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흥기로 위협하여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87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878호 | 위키트리 (Wikitree) | 7월 26일 | 사회면   | “아기씨 다리 좀 벌려 봐..” 지하철 1호선 타는 여성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879호 | 인터넷 이데일리        | 7월 31일 | 사회일반면 | [사사건건] “다리 벌려봐” 1호선 성범죄 후폭풍…CCTV 미설치 논란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880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트리(Wikitree) 2021년 08월 01일 인터넷면<br>「“정말 사이코패스처럼 두려웠다…” 박수홍 전 여친, 심각한 사실 폭로했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유튜브를 인용하여 그가 정관수술을 했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고, 그와 스파 펜션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제보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88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1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881호                              | UPI뉴스통신             | 8월 2일 | 연예면     | 박수홍 전 여친의 폭로?...‘데이트 폭행에 강간 수준’                    | 뉴스통신  |
| 제2021-882호                              | 국제뉴스                | 8월 2일 | 연예면     | 박수홍, 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행 파문                              | 뉴스통신  |
| 제2021-883호                              | 뉴스1코리아              | 8월 2일 | 연예면     | “갑자기 돌변한 박수홍...불안정하고 비상식적 이었다” 전 여친 ‘제보’           | 뉴스통신  |
| 제2021-884호                              | 뉴스엔                 | 8월 3일 | -       | 박수홍 데이트 폭행 주장 A씨 “술 취해 무서운 눈빛”                     | 인터넷신문 |
| 제2021-885호                              | 뉴스시(NEWSIS)         | 8월 2일 | 연예면     | “두 얼굴의 박수홍?...김용호, 박수홍 전 여친 폭로 방송 논란               | 뉴스통신  |
| 제2021-886호                              | 동아닷컴                | 8월 2일 | 사회면     | “갑자기 돌변한 박수홍...불안정하고 비상식적 이었다” 전 여친 ‘제보’           | 인터넷신문 |
| 제2021-887호                              | 디스패처뉴스              | 8월 2일 | ALL면    | “술 취한 박수홍 사이코패스 돌변, 펜션서 강간 수준...악마였다” 전 여친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888호                              | 마이데일리               | 8월 2일 | 연예면     | “술 취해 악마로 변해”...김용호, 박수홍 전 여친 데이트폭행 의혹 제기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889호                              | 매일안전신문              | 8월 2일 | 종합뉴스면   | 김용호, 박수홍 데이트 폭력 의혹 제기...‘착한 척 방송’                  | 인터넷신문 |
| 제2021-890호                              | 셀럽미디어               | 8월 2일 | 연예면     | “술 취하면 악마” 박수홍의 두 얼굴? 데이트 폭행 의혹 제기                 | 인터넷신문 |
| 제2021-891호                              | 스타뉴스 (star news)    | 8월 2일 | 엔터테인먼트면 | 박수홍 전여친 주장자 폭로 “가장 가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                 | 인터넷신문 |
| 제2021-892호                              | 오피ن 디스커스            | 8월 2일 | Net.이슈면 | “술 취한 박수홍 사이코패스 돌변, 펜션서 강간 수준...악마였다” 전 여친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893호                              | 인터넷 국민일보            | 8월 3일 | 시사면     | “술 취하니 사이코패스...”김용호 ‘박수홍 데이트 폭력’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894호                              | 텐아시아                | 8월 2일 | 연예가화제면  | [TEN이슈] 박수홍, 노마스크 파티 논란→데이트 폭행 의혹...결혼 발표 후폭풍      | 인터넷신문 |
| 제2021-895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8월 2일 | -       | [영상]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박수홍 데이트 폭행 등 주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896호                              | sportschosun.com    | 8월 2일 | 연예면     | 박수홍 전 여친 “술 취하면 천사서 악마로 변해..데이트 폭행에 XX 수준” 주장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897호                              | 미디어리퍼블릭             | 8월 2일 | 뉴스면     | “술 취한 ‘박수홍의 두 얼굴, 악마를 보았다’ “...데이트 폭행 의혹 수준? “     | 인터넷신문 |
| 제2021-898호                              | 인터넷 세계일보            | 8월 2일 | 연예면     | “사이코패스처럼 달라져...강간 수준” 박수홍, 17살 차 전 여친 ‘데이트 폭행’ 의혹  | 인터넷신문 |
| 제2021-899호                              | 인터넷 이데일리            | 8월 2일 | 연예면     | 박수홍, 데이트 폭행 의혹?...17세 연하 전여친의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900호                              | 조선닷컴                | 8월 2일 | 연예면     | 박수홍 전 여친 “술 취하면 천사서 악마로 변해... 데이트 폭행에 XX 수준” 주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901호                              | 푸른한국닷컴              | 8월 2일 | 통일면     | 박수홍 17살 연하의 전 여친 폭로, “데이트 폭행에 강간 수준이었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902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트리(Wikitree) 2021년 08월 02일 엔터면<br>「“박연수, 사춘기 애들 옆방에서 제비와 동거…카톡에는 ‘애인 구함’ 올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한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유튜브를 인용하여, 그녀가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한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br>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903호  | 언론사명 | (주)디스패치뉴스그룹 |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21년 08월 17일<br>「[D-eye] ‘블랙스완’ 출신 헤미, 이혼과 전쟁…몰래 결혼, 그리고 가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한 여성 연예인의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시점부터 가정 파탄으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표하였다.<br>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직업 특성상 결혼과 이혼에 관한 소식이 알려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90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904호 | sportschosun.com | 8월 18일 | 연예면   | [종합] 블랙스완 출신 헤미, 비밀결혼 1년만 이혼소송…A씨 “기출후 다른男과 동거” 외도주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905호 | 스포츠투데이M          | 8월 17일 | 연예면   | 블랙스완 헤미, 그룹 활동 중 결혼→폭언·외도 등으로 이혼 소송                  | 인터넷신문 |
| 제2021-906호 | 스포티비뉴스           | 8월 18일 | TV연예면 | 헤미, 이혼 소송으로 밝혀진 비밀 결혼…전 소속사 “손해배상 청구할것”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907호 | 조선닷컴             | 8월 18일 | 연예면   | 블랙스완 출신 헤미, 비밀결혼 1년만에 이혼소송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908호  | 언론사명 | (주)브릿지경제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21년 08월 25일 Leisure(여가)면 「루카스, 전 여친 이어 中 여성도 폭로…“드라마 여주 나쁜만이 아니었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 및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SNS 게시글을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이 글 게시자의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거나 자고 갔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증거로서 그의 사적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표하였다.<br>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90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909호 | 데일리스포츠월드 | 8월 25일 | 연예면     | “멤버 험담+명품 요구”…NCT 루카스, 이번엔 양다리 의혹     | 인터넷신문 |
| 제2021-910호 | 이투데이     | 8월 25일 | 문화·라이프면 | NCT 루카스, 이번엔 中여성 추가 폭로…“명품 요구+멤버들 험담”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911호   | 언론사명 | (주)코리아엔터테인먼트미디어 |
|---------|--|------|-----------------|
| 대상보도    | 텐아시아 2021년 08월 24일 뮤직면<br>「NCT 루카스, 사생활 논란 속 '팬과 연애」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과 사적인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SNS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예인과 글 게시자간의 통신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의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상세히 공개돼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91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912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8월 24일 | 연예면      | “NCT 루카스는 남자 꽃뱀…가스라이팅 당했다”<br>전 여친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913호 | sportschosun.<br>com      | 8월 24일 | 연예면      | [종합] “남자꽃뱀, 가스라이팅”…NCT 루카스, 前여친<br>사생활 폭로→엇갈린 여론 | 인터넷신문 |
| 제2021-914호 | 뉴스1코리아                    | 8월 24일 | 연예면      | “남자 꽃뱀” NCT 루카스가 가스라이팅…전 여친<br>주장글 논란 확산         | 뉴스통신  |
| 제2021-915호 | 디스패치뉴스                    | 8월 24일 | -        | “남자 꽃뱀” NCT 루카스가 가스라이팅…전 여친<br>주장글 논란 확산         | 인터넷신문 |
| 제2021-916호 | 오픈 디스커스                   | 8월 24일 | Net. 이슈면 | “남자 꽃뱀” NCT 루카스가 가스라이팅…전 여친<br>주장글 논란 확산         | 인터넷신문 |
| 제2021-917호 | 인터넷 세계일보                  | 8월 24일 | 연예면      | “호텔 룸서비스 시키고 잠만 자고 가…남자 꽃뱀” NCT<br>루카스 전 여친의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918호 | 인터넷<br>스포츠경향              | 8월 24일 | 연예면      | “NCT 루카스는 꽃뱀이었습니다” 폭로글 확산                        | 인터넷신문 |

| ■ 제2021-91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919호                              | 인터넷 제민일보                             | 8월 24일 | -       | NCT 루카스, 사생활 논란?...前 여친 “가스 라이팅 당했다”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920호                              | 전북투데이                                | 8월 24일 | 연예·스포츠면 | “남자 꽃뱀” NCT 루카스가 가스라이팅...전 여친 주장글 논란 확산                     | 인터넷신문 |
| 제2021-921호                              | 조선닷컴                                 | 8월 24일 | 연예면     | “남자꽃뱀, 가스라이팅”... NCT 루카스, 前여친 사생활 폭로에 엇갈린 여론                | 인터넷신문 |
| 제2021-922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8월 24일 | -       | “남자 꽃뱀, 가스라이팅 당했다” Way V 루카스, 전여자친구 폭로글 파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923호                              | 허핑턴포스트 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 8월 25일 | 엔터테인먼트면 | “이해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가스라이팅” 한 누리꾼이 NCT 루카스의 전 여자친구라며 사생활을 폭로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924호                              | 인사이트                                 | 8월 24일 | 엔터테인먼트면 | ‘남자 꽃뱀’ 의혹 터진 NCT 루카스... 새로운 폭로글+사진 등장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925호   | 언론사명 | (주)내외일보 |
|---------|--|------|---------|
| 대상보도    | 인터넷 내외일보 2021년 08월 22일 뉴스면<br>「“성폭행 vs 불륜” 카톡까지 공개... 진실은?»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사생활과 사적인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직장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불륜 사건 당사자를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는 상반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공개한 통신내용을 인용하여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내용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측이 성범죄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의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상세히 공개돼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92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926호 | 인터넷 서울신문 | 8월 22일 | 사회면  | “내 아내는 피해자” 고소…‘알라뽀’ 카톡은 사실이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927호 | 조선닷컴     | 8월 23일 | 사회면  | ‘상사가 아내 성폭행’ 청원…그녀의 “알라뽀” 카톡은 진짜였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928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트리(Wikitree) 2021년 08월 03일 엔터면<br>「[단독] 김민귀, 콘돔 2개 들고 찾아간 톱모델…“알고 있지만, 또 만났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21조 (기사 제목)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과 사적인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br>대상보도의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남성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취재하여, 해당 연예인이 자신과 교제 중이었음에도 다른 여성을 만났고 이를 숨긴 채 금전적 지원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치추적을 통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면서까지 그의 사적인 행적을 낱자별로 지나치게 자세히 공표한 부분과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전개 및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의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상세히 공개돼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929호   | 언론사명 | (주)툼데일리 |
|---------|--|------|---------|
| 대상보도    | ToPdaily(툼데일리) 2021년 07월 26일 연예·스포츠면<br>「김민귀, 자가격리 중 바람피러 나가?... 전 여친 총격 주장」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과 사적인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한 남성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과 글 게시시간의 통신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의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공개돼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92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930호 | 셀럽미디어               | 7월 25일 | 연예면     | 김민귀, 바람·인성 등 사생활 폭로 논란... 소속사 "확인 중"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931호 | 스타뉴스 (star news)    | 7월 25일 | 엔터테인먼트면 | 김민귀, 전 여친 폭로? "바람피러 자가격리 중 외출"...소속사 "확인 중" [★NEWSing] | 인터넷신문 |
| 제2021-932호 | 스타투데이               | 7월 25일 | -       | 김민귀, 전 여친 폭로글 논란... "바람 피러 자가격리 이탈"                    | 인터넷신문 |
| 제2021-933호 | 싱글리스트               | 7월 25일 | 문화면     | '알고있지만' 김민귀, 사생활 논란? "자가격리 위반하고 바람피"                   | 인터넷신문 |
| 제2021-934호 | 인사이트                | 7월 26일 | 엔터테인먼트면 | "바람피우고 자가격리 중 외출"...6년 사귀 전여친 폭로 논란에 김민귀 측이 밝힌 입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935호 | 인터넷 한국경제            | 7월 26일 | 연예면     | 김민귀, 바람 피우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나... "6년 연애, 차욕"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936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7월 25일 | -       | "바람피려고 자가격리 중 이탈"...'알고있지만' 김민귀, 전여친 폭로글 논란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937호  | 언론사명 | (주)툼데일리 |
|---------|---|------|---------|
| 대상보도    | ToPdaily(툼데일리) 2021년 08월 03일 사회면<br>「日 오사카 변화기에서 살인 사건…폭행후 물에 던져져」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일본 오사카에서 한 남성이 외국인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뒤 강으로 던져 사망케 한 사건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br>비록 해당 영상이 폭행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데 필요했다 하더라도, 영상 속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938호  | 언론사명 | 이한수(e시사코리아저널) |
|---------|---|------|---------------|
| 대상보도    | e시사코리아저널 2021년 07월 28일 건강/의료면<br>「창원에 암·재활 중점치료 전문 ‘○○○병원’ 안착」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br>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93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3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939호                              | 경남신문                         | 7월 12일 | 18면    | 창원 암·재활 중점치료 전문 '○○○병원' 본격 진료 개시          | 지역일간지 |
| 제2021-940호                              | 인터넷 경남신문                     | 7월 12일 | 건강면    | 창원 암·재활 중점치료 전문 '○○○병원' 본격 진료 개시          | 인터넷신문 |
| 제2021-941호                              | 국제뉴스                         | 7월 31일 | 전국면    | 양·한방 협진 '○○○한방병원' 내달 2일 진료 시작             | 뉴스통신  |
| 제2021-942호                              | 부산닷컴                         | 7월 30일 | -      | [한방소식] 부산 단일 규모 최대 양·한방 협진 '○○○한방병원' 진료시작 | 인터넷신문 |
| 제2021-943호                              | 인터넷 한의신문                     | 7월 30일 | -      | 한·양방 협진 '○○○한방병원', 부산 ○○동에 오픈             | 인터넷신문 |
| 제2021-944호                              | 헬스이슈앤뉴스 (Health Issue&News)) | 7월 31일 | 병원면    | '○○○한방병원' 8월 2일 진료 개시                     | 인터넷신문 |
| 제2021-945호                              | 세계비즈                         | 8월 5일  | 의약면    | ○○○의원 확장 이전... 줄기세포 특화치료 '업그레이드'          | 인터넷신문 |
| 제2021-946호                              | 부산닷컴                         | 7월 26일 | -      | 부산 남구 '○○○한방병원' 개원 '양·한방 통합' 진료 시행        | 인터넷신문 |
| 제2021-947호                              | e검경일보                        | 8월 13일 | 정보게시판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 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48호                              | 경기햇타임뉴스                      | 8월 13일 | 뉴스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 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49호                              | 경기헤드라인                       | 8월 13일 | 뉴스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 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50호                              | 경남에나뉴스                       | 8월 13일 | 핫 이슈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 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51호                              | 경인굿뉴스                        | 8월 13일 | 사회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 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52호                              | 골든타임즈 (goldentimes)          | 8월 13일 | 핫이슈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 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53호                              | 국민투데이                        | 8월 13일 | -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 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3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954호 | 굿타임즈                  | 8월 13일 | 핫이슈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55호 | 누리일보                  | 8월 13일 | 경제산업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56호 | 뉴스웨어<br>(NewsShare)   | 8월 13일 | 라이프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57호 | 뉴스영                   | 8월 13일 | IT/자동차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58호 | 뉴스포인트<br>(News Point) | 8월 13일 | 핫이슈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59호 | 뉴스핏                   | 8월 13일 | 뉴스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60호 | 더시그널뉴스                | 8월 13일 | 종합뉴스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61호 | 데일리연합<br>(한국뉴스신문)     | 8월 13일 | 핫이슈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62호 | 리버렐미디어                | 8월 13일 | 핫이슈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63호 | 메트로타임즈                | 8월 13일 | 경제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64호 | 인터넷<br>문화매일신문         | 8월 13일 | 뉴스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65호 | 비전21뉴스                | 8월 13일 | 핫뉴스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66호 | 시사파일                  | 8월 13일 | 지역뉴스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67호 | 여원뉴스                  | 8월 13일 | 시장경제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3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968호 | 와이뉴스                  | 8월 13일 | 경제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69호 | 울진타임즈                 | 8월 13일 | 타임즈라이프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70호 | 웹이코노미                 | 8월 13일 | 핫이슈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71호 | 정도일보                  | 8월 13일 | -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72호 | 중앙뉴스라인                | 8월 13일 | 사회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73호 | 중앙뉴스타임스               | 8월 13일 | 뉴스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74호 | 지.이코노미<br>(G.ECONOMY) | 8월 13일 | 뉴스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75호 | 타임즈                   | 8월 13일 | 경제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76호 | 투데이경제                 | 8월 13일 | 핫이슈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77호 | 포에버뉴스                 | 8월 13일 | 핫이슈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78호 | 프레스뉴스통신               | 8월 13일 | 경제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뉴스통신  |
| 제2021-979호 | 한국글로벌뉴스               | 8월 13일 | 뉴스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80호 | 한국장애인뉴스               | 8월 13일 | 핫뉴스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제2021-981호 | 한국제일신문                | 8월 13일 | 대한민국면   |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br>맞춤형 진료 나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982호   | 언론사명 | (주)스포츠포스트 |
|---------|--|------|-----------|
| 대상보도    | sportschosun.com 2021년 08월 23일 연예면<br>「“박유천, 팬에게 2대 1로 XX 제안..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김용호 연예부장) [종합]」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의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이 팬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98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983호 | 뉴스1코리아           | 8월 25일 | 연예면       | “황하나, 김재중 버리고 박유천 만난 것..차은 2대1 성관계 제안도”        | 뉴스통신  |
| 제2021-984호 | 뉴스엔              | 8월 25일 | -         | 박유천, 2대1 성관계 요구 의혹에 “근거없는 비방, 법적 대응”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985호 | 데일리스포츠경제         | 8월 25일 | 연예·스포츠포스트 | [전문] 박유천 “팬에 2:1 성관계 제안? 사실무근”                 | 인터넷신문 |
| 제2021-986호 | 미디어리퍼블릭          | 8월 25일 | 뉴스면       | 박유천, “팬에게 2:1 성관계 제안? 사실무근”...김용호에 ‘인신공격’ 법적대응 | 인터넷신문 |
| 제2021-987호 | 미디어펜 (Mediapen)  | 8월 25일 | 연예·스포츠포스트 | 박유천 법적 대응 예고...“팬에게 2:1 성관계 제안+이중계약? 사실무근”     | 인터넷신문 |
| 제2021-988호 | 스타뉴스 (star news) | 8월 24일 | 엔터테인먼트면   | 박유천, 또 성추문 “女팬에 2:1 성관계 요구”                    | 인터넷신문 |
| 제2021-989호 | 엑스포츠뉴스           | 8월 25일 | 국내연예면     | 박유천, 진흙탕 싸움 돌입...#2:1 성관계 #유홍비 #원정도박 [엑's 이슈]  | 인터넷신문 |
| 제2021-990호 | 오픈 디스커스          | 8월 25일 | 연예가소식면    | “팬과 2대1 성관계 제안” 의혹 등장한 박유천, 법적 대응 나선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98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991호  | 인사이트                   | 8월 23일 | 엔터테인먼트면  | 김용호 “박유천, 팬에게 ‘2대1’ 성관계 요구”<br>녹취록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992호  | 인터넷 세계일보               | 8월 23일 | 연예면      | 김용호 “박유천, 팬에게 2대 1로 성관계 제안” 제보<br>녹취록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993호  | 인터넷 스포츠경향              | 8월 23일 | 연예면      | 박유천 사생활 논란<br>“응원 보냈더니 2:1 성관계 요구”                  | 인터넷신문 |
| 제2021-994호  | 인터넷 스포츠동아              | 8월 23일 | -        | “박유천, 팬에게 2대1 성관계 요구” 충격 녹취록                        | 인터넷신문 |
| 제2021-995호  | 인터넷 제민일보               | 8월 25일 | CULTURE면 | “박유천, 힙내라는 팬에게 2:1 성관계 제안”...<br>김용호, 녹취록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996호  | 인터넷 중앙일보               | 8월 25일 | 사회면      | 박유천 “팬에 2:1 성관계 제안? 사실 아냐...<br>김용호에 법적대응”          | 인터넷신문 |
| 제2021-997호  | 인터넷 한국경제               | 8월 25일 | 연예면      | 박유천 “2대1 성관계 제안? 근거 없는 비방...<br>법적 대응 준비”           | 인터넷신문 |
| 제2021-998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8월 25일 | 사회일반면    | 박유천 “팬과 2대1 성관계 제안? 사실 아냐...<br>법적대응”               | 인터넷신문 |
| 제2021-999호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 8월 24일 | NC면      | 박유천, 이제는 팬에게 2대1 성관계 요구...연예부장<br>김용호의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1000호 | 매일안전재신문                | 8월 25일 | 종합뉴스면    | ‘팬들에게 2대 1제안’ 의혹에 박유천 분노...김용호<br>법적대응              | 인터넷신문 |
| 제2021-1001호 | 위키투리<br>(Wikitree)     | 8월 23일 | 엔터면      | “박유천, 내게 2대1로 OO를 하자고...” 여성의<br>충격적인 주장 나왔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002호 | 조선닷컴                   | 8월 23일 | 연예면      | ‘김용호 연예부장’ “박유천, 팬에게 2대 1로 XX<br>제안...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003호 | 톱스타뉴스<br>(TopStarNews) | 8월 23일 | -        | “박유천이 2대 1로 OO를 하자고...” 김용호가<br>공개한 충격의 녹취록         | 인터넷신문 |
| 제2021-1004호 | 인터넷<br>부산파이낸셜뉴스        | 8월 25일 | 사회면      | “박유천, 女팬에 ‘쓰리쌌’ 제안” 논란...<br>본인은 전면 부인              | 인터넷신문 |
| 제2021-1005호 | 인터넷<br>파이낸셜뉴스          | 8월 25일 | 사회면      | “박유천, 女팬에 ‘쓰리쌌’ 제안” 논란...<br>본인은 전면 부인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006호  | 언론사명 | (주)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트리(Wikitree) 2021년 08월 13일 엔터면<br>「“콘돔 끼워주고...” 승리 성매매 정황,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의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1007호   | 언론사명 | (주)미디어인그램 |
|---------|---|------|-----------|
| 대상보도    | 오픈 디스커스_중복 폐지 2021년 09월 17일 네티즌화제면<br>「BJ철거, 외질해와 이혼 마무리 “법적 솔로, 위자료는 20억”」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미성년 당사자의 초상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한 유명 남성 BJ(방송자키)의 이혼 소식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딸의 초상을 공표하였다.<br>비록 해당 사진이 이미 공개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모가 관련된 폭행 및 성매매 사실을 언급하며 이혼에 이르게 됐다는 부정적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딸의 초상을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장과정은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부 록

| 의결번호    | 제2021-1008호   | 언론사명 | (주)매일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매일신문 2021년 08월 30일 사회면<br>「[속보] 친할머니 살해 10대 손자들, 평소 정서·행동장애 증상」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개인의 사적인 공간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현장인 해당 주택의 전경 사진을 게재하였다.<br>설령 위 기사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특정 범죄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대상인 개인의 거주지 내부를 공개하는 것, 특히 해당 주택의 옥상 내부를 근접 촬영하는 등 거주 공간을 상세히 공표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공공의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00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4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09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9월 25일 | -     | 9년간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한 어린 형제, 그들은 왜 악마가 됐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010호 | 경북도민일보                    | 8월 31일 | 04면   | 고교생 형제 “잔소리 못참아” 할머니 살해                      | 지역일간지 |
| 제2021-1011호 | 경북정치신문                    | 9월 8일  | 오피니언면 | ‘사회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대구 10대 고교생 형제 친할머니 살해 사건 | 인터넷신문 |
| 제2021-1012호 | 뉴스1코리아                    | 9월 1일  | 지방면   | 잔소리가 할머니살해 이유?...“청소년 잔혹범죄 처벌수위 높여야”         | 뉴스통신  |
| 제2021-1013호 | 동아닷컴                      | 9월 1일  | 사회면   | 잔소리가 할머니살해 이유?...“청소년 잔혹범죄 처벌수위 높여야”         | 인터넷신문 |
| 제2021-1014호 | 디스패치뉴스                    | 8월 30일 | -     | 10대 형제 흥기로 할머니 살해...“잔소리·심부름 짜증 낫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015호 | 세계일보                      | 8월 31일 | 11면   | 할머니가 뺨 교복 빨랫줄에 덩그러니                          | 중앙일간지 |

■ 제2021-100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4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16호 | 안동인터넷뉴스       | 8월 31일 | 뉴스홈면   |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구속...<br>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 인터넷신문 |
| 제2021-1017호 | 영남일보          | 9월 17일 | W03면   | 성장기 상처받고 방치된 아이, 마음의 병<br>앓아...실태조사는 10년째 제자리   | 지역일간지 |
| 제2021-1018호 | 인사이트          | 8월 31일 | 정치·사회면 | 잔소리한다고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할머니는<br>교복을 빨아두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019호 | 인터넷<br>경북도민일보 | 8월 30일 | 사회면    | 고교생 형제 “잔소리 못참아” 할머니 살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1020호 | 인터넷 세계일보      | 8월 31일 | -      | 애지중지 키워준 70대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   | 인터넷신문 |
| 제2021-1021호 | 인터넷 영남일보      | 9월 17일 | -      | [위클리포유 커버스토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br>(3)...성장기 상처받고 방치된 아이, 마음의 병 앓아...<br>실태조사는 10년째 제자리 | 인터넷신문 |
| 제2021-1022호 | 인터넷 이데일리      | 8월 30일 | 사회일반면  | 친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형제 “심부름 짜증났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023호   | 언론사명 | (주)디스패치뉴스그룹 |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21년 09월 14일 ALL면<br>「일주일 넘게 실종됐던 ○○○씨...대치동서 발견」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9조 (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성명, 나이, 질한 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삭제하거나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서울 은평구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9일 만에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실종자의 초상과 성명, 나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br>해당 기사의 게재시점이 이미 실종자를 발견한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초상과 성명, 나이, 정신질환 증상과 같은 사적 정보를 계속해서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정보제공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1024호   | 언론사명 | 국민일보(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국민일보 2021년 09월 14일 시사면<br>「택시탄 뒤 실종된 50대 여성, 강남에서 발견…실종 8일 만」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성명, 나이를 공표한 부분을 수정·삭제하거나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서울 은평구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9일 만에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실종자의 초상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였다.</p> <p>해당 기사의 게재시점이 이미 실종자를 발견한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초상과 성명, 나이와 같은 사적 정보를 계속해서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정보제공의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1025호   | 언론사명 | (주)이투데이 |
|---------|---|------|---------|
| 대상보도    | 이투데이 2021년 09월 15일 사회면<br>「[랜선핫이슈] “비트코인 10배 오른다”·은평구 실종 여성 8일 만에 무사 귀가·컬링 팀 김, 국제대회 전승 우승」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9조 (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성명, 나이, 질환 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삭제하거나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서울 은평구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9일 만에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실종자의 성명과 나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p> <p>해당 기사의 게재시점이 이미 실종자를 발견한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성명과 나이, 정신질환 증상과 같은 사적 정보를 계속해서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정보제공의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102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26호 | 조선닷컴   | 9월 15일 | 사회면  | 은평구서 실종됐던 50대 여성, 9일 만에 강남에서 찾았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027호 | 연합뉴스TV | 9월 14일 | 사회면  | 일주일 넘게 실종됐던 ○○○씨·대치동서 발견         | 방송    |

| 의결번호    | 제2021-1028호   | 언론사명 | 김지수(살구뉴스) |
|---------|---|------|-----------|
| 대상보도    | 살구뉴스 2021년 09월 17일 정치/사회면<br>「동두천시청 20대 공무원 극단적 선택...안타까운 마지막 인스타 글(+카톡내용)」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 및 개인식별정보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동두천시청에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이 가방을 손괴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의 부모가 작성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가방 소유주인 동료 공무원의 SNS(인스타그램)상 프로필 사진 속 초상과 ID를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br>이는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초상과 개인의 식별정보에 해당하는 ID를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1029호  | 언론사명 | 이데일리(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이데일리 2021년 09월 28일 정당면<br>「추미애 캠프 “곽상도, 1년전 아들 군복무 자랑질 하더니”」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회사에 근무했던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 논란이 된 것을 두고, 1년 전 공개한 그의 군복무 시절 사진으로 인해 별도의 신상공개 절차 없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언급하는 추미애 대선 후보 캠프 측 SNS 게시물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      |         |

| 의결번호 | 제2021-1029호   | 언론사명 | 이데일리(주) |
|------|---|------|---------|
|      | <p>비록 해당 사건이 초미의 공적 관심 사안이고, 본인이 실명으로 논란을 해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스스로 공적 논쟁의 장에 뛰어든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인물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성급한 초상 공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102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30호 | 국민뉴스                   | 9월 27일 | 뉴스종합면  | 남의 자식 칼질 '가족 특혜 감별사' 확산도 '50억 부메랑'           | 인터넷신문 |
| 제2021-1031호 | 뉴스프리존 (News Free Zone) | 9월 28일 | 정치면    | '병장회의' 공격 받던 추미애, '아들 자랑' 확산도 그 아들이 받은 '50억' | 인터넷신문 |
| 제2021-1032호 |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 9월 27일 | 사회면    | 서민도 실드 못하는 '가족 특혜 감별사' 확산도 '50억 부메랑'         | 인터넷신문 |
| 제2021-1033호 | 인터넷 뉴스토마토              | 9월 26일 | 정치/정책면 | '50억 퇴직금' 확산도 아들 "나는 오징어게임 속 '말'이었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034호   | 언론사명 | 김지수(살구뉴스) |
|---------|---|------|-----------|
| 대상보도    | 살구뉴스 2021년 09월 14일 정치/사회면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 소름돋는 진실..남자친구 ○씨 인스타 비공개 이유?」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을 알 수 있게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연인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숨진 여성의 SNS 주소를 링크(link)방식으로 게시, 이를 통해 피고인 남성의 초상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p> <p>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링크(link) 방식을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사인에 불과한 피고인의 초상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사실에 있어 이를 직접 기사에 인용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기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판례로써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1035호  | 언론사명 | (주)경향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스포츠경향 2021년 09월 18일 스포츠면<br>「[단독] ○○○ ‘몸캠피싱 피해’ 영상 확산→인스타 비공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한 부분을 수정·삭제하거나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가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의 초상과 실명을 공표하였다.<br>설령 해당 선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초상과 실명을 공표하지 않고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정보전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동의 없이 그의 초상과 실명을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103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36호 | 국제뉴스                   | 9월 19일 | -       | ‘몸캠피싱’ 의혹 ○○○, SNS 비공개로...<br>“2차 피해까지 속출”           | 뉴스통신  |
| 제2021-1037호 | 뉴스플러스                  | 9월 20일 | 뉴스면     | 올림픽 ○○○ 대표 ○○○ 몸캠 피싱 피해(?)<br>의혹 확산                  | 인터넷신문 |
| 제2021-1038호 | 매일안전재신문                | 9월 19일 | 종합뉴스면   | ○○○ 영웅 ○○○, 갑작스러운 SNS 비공개...<br>‘몸캠의혹 확산 논란’ 밝혀진것 없어 | 인터넷신문 |
| 제2021-1039호 | 일간시사매거진                | 9월 18일 | 엔터테인먼트면 | ○○○ ‘몸캠 피싱’ 피해 논란...인스타그램 비공개<br>전환돼                 | 인터넷신문 |
| 제2021-1040호 | 인사이트                   | 9월 18일 | -       | ○○○ ‘몸캠 피싱 피해’ 의혹 확산...인스타 비공개 전환                    | 인터넷신문 |
| 제2021-1041호 | 인터넷<br>일간스포츠           | 9월 19일 | -       | ○○○, ‘몸캠 피싱’ 피해자? SNS 비공개 전환 이유는?                    | 인터넷신문 |
| 제2021-1042호 | 인터넷<br>한국정경신문          | 9월 19일 | 스포츠면    | 성적 행위 유도해 협박 ‘○○○’ 피해자 추정 파장..SNS<br>비공개 전환          | 인터넷신문 |
| 제2021-1043호 | 톱스타뉴스<br>(TopStarNews) | 9월 19일 | -       | ○○○, 몸캠 피싱 의혹→SNS 비공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044호   | 언론사명 | (주)디스패치뉴스그룹 |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21년 09월 16일<br>「비행기서 음란행위…승객들 눈총에도 멈추지않은 유럽 커플 [영상]」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럽의 한 비행기 내부에서 남녀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p> <p>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정상적인 보통사람의 성적 수치심과 윤리감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1045호  | 언론사명 | (주)조선일보사 |
|---------|--|------|----------|
| 대상보도    | 조선닷컴 2021년 08월 29일 사회면<br>「“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딸 살해범, 장모에게 음란 문자」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제21조 (기사 제목)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의 제목과 내용 중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손녀와 딸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메시지 내용을 캡처를 통해 인용하고 제목에 사용하였다.</p> <p>비록 해당 사건이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에 해당하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모와의 성행위를 일컫는 대화내용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것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1046호  | 언론사명 | (주)머니앤밸류 |
|---------|--|------|----------|
| 대상보도    | e머니에스(e money S) 2021년 08월 29일 정치/사회면<br>「“사람이 아니구나”... 20개월 여아 살해 계부, 장모에게 보낸 문자에 ‘공분’」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의 내용 중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손녀와 딸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메시지 내용을 캡처를 통해 인용하였다.</p> <p>비록 해당 사건이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에 해당하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모와의 성행위를 일컫는 대화내용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것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04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47호 | 경기연합신문          | 9월 29일 | 사회면      | 20개월 여아 살해 후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20대, '청원 21만명 돌파' 정부는? | 인터넷신문 |
| 제2021-1048호 | 뉴스1코리아          | 8월 30일 | 사회면      | “정인이 때 약속했는데”...정보석, 20개월 딸 성폭행 살해범에 분노            | 뉴스통신  |
| 제2021-1049호 | 디스패치뉴스          | 8월 29일 | SNSFeed면 | 20개월 의붓딸 강간·살해한 계부가 장모에게 보낸 충격적인 메시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1050호 | 매일안전신문          | 8월 29일 | 종합뉴스면    | 대전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범, 장모에게도 '성희롱'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51호 | 우먼타임스           | 8월 31일 | 지금이슈는면   | “이런 패륜적 ‘악마’에게 화학적 거세를”                            | 인터넷신문 |
| 제2021-1052호 | 위키투리 (Wikitree) | 8월 29일 | 사회면      | 20개월 여아 강간 살해한 아버가 장모에게 보낸 소름 끼치는 문자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053호 | 인터넷 굿모닝충청       | 8월 30일 | -        | “20개월 여아 살해범 신상 공개하라”...3일 만에 8만 동의                | 인터넷신문 |
| 제2021-1054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8월 31일 | 사회일본면    |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                       | 인터넷신문 |
| 제2021-1055호 | 죽구뉴스            | 8월 29일 | 사회면      | 20개월 딸 성폭행한 계부...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메시지 보내 ‘충격’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056호  | 언론사명 | (주)뉴스스 |
|---------|--|------|--------|
| 대상보도    | 뉴스스(NEWSIS) 2021년 08월 29일 지방면<br>「“어머님이랑 한번...” 20개월 여아 살해 계부, 장모에게 음란문자 보내」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제21조 (기사 제목)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의 제목과 내용 중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손녀와 딸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메시지 내용을 캡처를 통해 인용하고 제목에 사용하였다.</p> <p>비록 해당 사건이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에 해당하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모와의 성행위를 일컫는 대화내용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것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105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6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57호 | 더팩트      | 8월 30일 | 전국면   | “어머님이랑 한번...” 20개월 딸 살해 ‘패륜’ 계부,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 인터넷신문 |
| 제2021-1058호 | 데일리안     | 8월 29일 | -     | “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20개월 딸 강간·살해범이 장모에 보낸 메시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1059호 | 매경닷컴     | 8월 29일 | 사회면   |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요”...20개월 딸 살해범 장모엔 음란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60호 | 부산닷컴     | 8월 29일 | -     | “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장모에 패륜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61호 | 아시아경제닷컴  | 8월 30일 | 사회면   | “어머님과 하고 싶다” 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한 계부, 장모에게 보낸 패륜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62호 | 인사이트     | 8월 31일 | 정치사회면 | 장모님이랑 하고 싶다는 그놈, 사위 아닌 악마였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063호 | 인터넷 국민일보 | 8월 29일 | 시사면   | “어머님과 하고싶다” 20개월 딸 성폭행범이 보낸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64호 | 인터넷 매일신문 | 8월 29일 | 사회면   | 20개월 딸 살해범, ‘학대 의심’ 장모에 패륜문자 “나랑 한번 하면 딸 소식 공유할게” | 인터넷신문 |

■ 제2021-105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6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65호 | 인터넷<br>파이낸셜뉴스          | 8월 29일 | -     | “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이<br>장모에 보낸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66호 | 인터넷<br>부스파이낸셜뉴스        | 8월 29일 | -     | “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이<br>장모에 보낸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67호 | 인터넷 서울경제               | 8월 29일 | 사회면   | “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딸 강간·살해한<br>20대 계부, 장모에 성관계 요구       | 인터넷신문 |
| 제2021-1068호 | 인터넷 세계일보               | 8월 29일 | -     | “어머님이랑 한 번 하고 싶다” 20개월 딸 성폭행한 계부,<br>장모에게 보낸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69호 | 인터넷 이데일리               | 8월 29일 | 사회일반면 | “어머니랑 하고 싶어”…20개월 딸 강간 계부가 보낸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70호 | 인터넷 중앙일보               | 8월 29일 | 사회면   | “어머님이랑 하고싶다” 20개월 딸 살해범,<br>장모에 보낸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71호 | 인터넷 한국경제               | 8월 29일 | 사회면   | “어머님과 하고 싶다”…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의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72호 | 톱스타뉴스<br>(TopStarNews) | 8월 29일 | -     | [영상]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요”… 20개월 딸<br>살해범이 장모에 보낸 충격적인 문자 내용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073호   | 언론사명 | (주)뉴스미디어그룹 |
|---------|---|------|------------|
| 대상 보도   | 스타데일리뉴스 2021년 09월 07일 문화·생활면<br>「정형외과-소아정형외과-족부치료 중심 ○○○병원 개원」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br>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07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74호 | 디트news24 | 9월 13일 | 의료계면   | “예방의 시작은 검진” ○○○의원 원스톱 의료             | 인터넷신문 |
| 제2021-1075호 | 메디컬투데이   | 9월 7일  | 의료면    | ○○○병원 개원...“환자에게 인정받는 의료서비스 제공 목표”    | 인터넷신문 |
| 제2021-1076호 | 인터넷 통일신문 | 8월 12일 | 경제면    | ○○성형외과 8월 16일 정식 개원...“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추구” | 인터넷신문 |
| 제2021-1077호 | 매경닷컴     | 9월 17일 | 의료/건강면 | ○○○마취통증의학과 강남 ○○동으로 확장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1078호 | 의협신문     | 9월 27일 | 의원·병원면 | 부산 ○○○병원, 내과·신경과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079호   | 언론사명 | (주)미디어인그램 |
|----------------|---|------|-----------|
| <b>대상보도</b>    | 오편 디스커스_중복 폐지 2021년 09월 28일 정치사회면<br>「“선생님, XX 넣어도 돼요?”...초6 남학생, 女담임에 성희롱 메시지」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      |           |
| <b>권고사항</b>    | 대상보도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b>이유</b>      | 위 기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07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8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80호 | e머니에스 (e money S)      | 9월 28일 | -    | “넣어도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담임교사 성희롱      | 인터넷신문 |
| 제2021-1081호 |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 9월 28일 | 뉴스면  | “선생님 XX 넣어도 돼요?”...초6 남학생이 성희롱 메시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1082호 | 뉴스1코리아                 | 9월 28일 | 사회면  | “선생님, XX 넣어도 돼요?”...초6 남학생, 女담임에 성희롱 메시지 | 뉴스통신  |

■ 제2021-107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8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083호 | 데일리안                   | 9월 28일 | 사회면   | “선생님 XX에 내 XX 넣어도 돼요?” 6학년男의 경악스런 성희롱                      | 인터넷신문 |
| 제2021-1084호 | 부산닷컴                   | 9월 28일 | 사회면   | [SNS:핀] “선생님, XX 넣어도 돼요?” 초등 6학년의 성희롱 메시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1085호 | 인터넷<br>디지털타임스          | 9월 28일 | -     | “XX 넣어도 돼요?”...선생님에 성희롱 메시지 보낸 초등 6학년                      | 인터넷신문 |
| 제2021-1086호 | 인터넷 매일신문               | 9월 28일 | -     | 초6 제자가 여선생님에게 보낸 성희롱 메시지 ‘경악’... “XX 넣어도 돼요?”              | 인터넷신문 |
| 제2021-1087호 | 인터넷<br>부산파이낸셜뉴스        | 9월 28일 | 사회면   | “XX 넣어도 돼요?” 초등 6학년이 선생님 성희롱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21-1088호 | 인터넷 서울경제               | 9월 28일 | 사회면   |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초6 남학생이 보낸 성희롱 메시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1089호 | 인터넷 세계일보               | 9월 29일 | 사회면   |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초6 男학생이 보낸 ‘성희롱’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90호 | 인터넷 이데일리               | 9월 28일 | 사회일반면 | “XX넣어도 돼요?”...초등학생이 선생님에 ‘성희롱’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91호 | 인터넷 중앙일보               | 9월 28일 | 사회면   | “XX 넣어도 돼요?” 초등생이 여교사에 이런 성희롱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092호 | 인터넷<br>파이낸셜뉴스          | 9월 28일 | 사회면   | “XX 넣어도 돼요?” 초등 6학년이 선생님 성희롱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21-1093호 | 인터넷 한국경제               | 9월 28일 | 사회면   | “XX 넣어도 돼요?”...교사에 노골적 성희롱 메시지 보낸 초등생                      | 인터넷신문 |
| 제2021-1094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9월 28일 | 사회일반면 | “선생님 XX에 넣어도 돼요?” 초6 성희롱 메시지 ‘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21-1095호 | 조선닷컴                   | 9월 28일 | 사회면   | “XX 넣어도 돼요?”... 초등 6학년이 선생님에 성희롱 메시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1096호 | 청년일보                   | 9월 28일 | Y-사회면 | [뉴스팩트] “XX 넣어도 돼요?” 초6 성희롱 문자 ‘충격’... 장제원 “아버지의 죄 깊이 반성” 외 | 인터넷신문 |
| 제2021-1097호 | 톱스타뉴스<br>(TopStarNews) | 9월 28일 | -     | “XX넣어도 되냐고”...누리꾼 공분 산 초6 남학생에 성희롱 당한 여교사 사연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098호   | 언론사명 | 뉴데일리(주) |
|---------|---|------|---------|
| 대상 보도   | 뉴데일리(New Daily) 2021년 10월 19일 연예면<br>「[폭로글 전문] 김선호, '낙태강요·혼인빙자 K배우' 의혹에 이미지 실추」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한 여성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전문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의 사생활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성적 교섭관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p> <p>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09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099호                             | e머니에스<br>(e money S)                          | 10월 18일 | 연예면     | “혼인빙자에 낙태요구 후 이별”... 인기배우 A씨 누구?                   | 인터넷신문 |
| 제2021-1100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11월 1일  | 연예면     | 김선호, 전 여친 임신에 “책임 질게, 결혼 해야지”... 반전의 대화록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101호                             | 국제뉴스  | 10월 20일 | 연예면     | [종합]김선호 공식입장 “전 여친 A씨 죄송합니다”<br>...광고 삭제·신상 털이 후폭풍 | 뉴스통신  |
| 제2021-1102호                             | 인터넷 한국경제                                      | 10월 18일 | 생활·문화면  | 대세 배우 K의 실체? “낙태 요구, 스타된 후 변해”<br>[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103호                             | 일간씨사매거진                                       | 10월 20일 | 엔터테인먼트면 | [종합]배우 김선호 공식입장 “전 여친 A 씨에게<br>진심으로 사과”            | 인터넷신문 |
| 제2021-1104호                             | 제주교통복지신문                                      | 10월 20일 | 종합이슈면   | [종합]배우 김선호 과거 논란 인정, 전 여친 A씨에게<br>공식입장 사과          | 인터넷신문 |
| 제2021-1105호                             | 허핑턴포스트<br>코리아(The<br>Huffingtonpost<br>Korea) | 11월 1일  | 엔터테인먼트면 | 예능과 광고에서 모두 잘렸던 김선호가 영화 데뷔작<br>‘슬픈 열대’ 출연을 확정했다    | 인터넷신문 |

|         |  |      |             |
|---------|--|------|-------------|
| 의결번호    | 제2021-1106호  | 언론사명 | (주)디스패치뉴스그룹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21년 10월 26일<br>「[단독] “○○○ 씨에게 묻습니다”…김선호, 왜곡된 12가지 진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성명과 사생활 및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에 대해, 해당 폭로 내용에 의문점이 많고 진실이 왜곡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인들의 제보를 토대로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폭로 여성의 성명을 공개하는가 하면,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당사자 간 사적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여성이 방송계 종사 경력이 있는 등 공적 인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인의 제보내용을 대화로 재구성하는 등 남녀 간의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표하고, 폭로 여성의 성명까지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화 당사자인 폭로 여성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10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107호 | 위키트리 (Wiktree) | 10월 26일 | 엔터면  | “배우 김선호, 전 애인 C씨가 남자 문제로 거짓말 많이 해 크게 힘겨워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108호 | 살구뉴스           | 10월 20일 | 연예면  | 김선호 기상캐스터 여자친구 사생활 폭로 논란 사건 시간 순 정리(+공식입장)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109호   | 언론사명 | (주)스포츠포스트 |
|---------|---|------|-----------|
| 대상보도    | sportschosun.com 2021년 10월 26일 연예면<br>「“김선호, 미역국 끓이며 여친 간호” 디스패치, ○○○ 실명+카톡 공개 파문」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성명 및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에 대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여 폭로자의 성명 및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교제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비록 해당 여성이 방송계 종사 경력에 있는 등 공적 인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폭로 여성의 성명을 공개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남녀 간의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10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6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110호 | 인사이트                   | 10월 26일 | 엔터테인먼트면 | “전여친이 김선호 몰래 남자 만나다 걸려 헤어져”...김선호 논란 뒤집을 증거 공개됐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111호 |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 10월 26일 | 이슈면     | “김선호, 여친 낙태 후 미역국 끓여주고 부모에게 소개”...폭로 거짓이었나           | 인터넷신문 |
| 제2021-1112호 | 뉴스라이트                  | 10월 26일 | HOT뉴스면  | “김선호도 당했다” 폭로글 올린 전 여친, 그녀의 전 남편도 “당했다”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1113호 | 한국미디어 뉴스통신             | 10월 27일 | 뉴스통신면   | 김선호는 관심없다, 전 여자친구 폭로 계속 이어져... 이번에 전 남편 ‘사랑과 전쟁’ 인가? | 인터넷신문 |
| 제2021-1114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10월 26일 | -       | “3주 동안 세 남자와 외도” 이진호, 김선호 전여친의 전남편 녹취록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115호 | STN SPORTS             | 10월 27일 | 연예면     | “김선호 前여친, 3주간 세 명 남자와 외도”...전 남편 추정 녹취록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116호 | 데일리스포츠포스트월드            | 10월 27일 | 연예면     | 유튜버 이진호 “김선호 전 여친, 호스트바 男+스폰서와 외도” 의혹 제기             | 인터넷신문 |
| 제2021-1117호 | 미디어리퍼블릭                | 10월 26일 | 뉴스면     | 이진호 “김선호 전여친의 전남편 녹취록 ‘발각’” 팬들은 분노                   | 인터넷신문 |

| ■ 제2021-110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6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118호                              | 셀럽미디어             | 10월 27일 | 연예면   | 김선호 전 여친의 전 남편 추정 녹취록 공개 “3주 동안 세 남자와 외도” | 인터넷신문 |
| 제2021-1119호                              | 인터넷 세계일보          | 10월 27일 | 연예면   | “김선호 전 여친, 3주간 남자 3명과 놀아나”...유튜버 이진호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1120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10월 26일 | 엔터면   | 김선호 전 여친, 외도로 이혼? 전 남편이 밝힌 충격 증언...       | 인터넷신문 |
| 제2021-1121호                              | 인터넷 전국매일신문        | 10월 26일 | 문화면   | “김선호 전 여친, 3주간 3명과 외도” 이진호, 전 남편 녹취록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122호                              | 인터넷 한국경제          | 10월 27일 | 연예면   | ‘김선호 폭로’ A씨 전남편 녹취록 등장 “3주간 3명의 남자와”      | 인터넷신문 |
| 제2021-1123호                              | 제주교통복지신문          | 10월 26일 | 종합이슈면 | [종합] 이진호, 김선호 전 여친의 전 남편 녹취록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124호                              | 조선닷컴              | 10월 27일 | 연예면   | “직접 본 것만 믿어요” ‘갯차’ 아역배우들 김선호♥ 사진 올리며 응원   | 인터넷신문 |
| 제2021-1125호                              | 포스트쉐어 (postshare) | 10월 27일 | -     | ‘집에서 남자 셋이랑..’ 실시간 김선호 전여친의 전남편 녹취록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126호   | 언론사명 | 부산일보(주) |
|---------|---|------|---------|
| 대상보도    | 부산닷컴 2021년 10월 05일 스포츠면<br>「축구선수 홍철 사생활 폭로글 논란...“10명 넘는 여성과 바람”」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 및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한 여성의 SNS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가 이 여성과 교제 중임에도 다른 여성들을 만나 성병에 걸리기도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는가 하면, 그가 다른 여성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선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간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하여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부 록

| ■ 제2021-112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0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127호                              | 경기연합신문            | 10월 5일 | 포토·영상면   | 국가대표 홍철, 10명 넘는 여자와 바람피고 음란한 대화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1128호                              | 매일안전신문            | 10월 5일 | 사회면      | 현 여친 “축구 국가대표 홍철, 女 10명과 바람에 성병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21-1129호                              | 베스트 일레븐           | 10월 5일 | 국내면      | “여자 10명과 바람피워...” 국대 선수 사생활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1130호                              | 살구뉴스              | 10월 5일 | 스포츠면     | 홍철 여자친구 바람+성병 사생활 폭로 논란에 사과문 올린 이유(+인스타)              | 인터넷신문 |
| 제2021-1131호                              | 위키트리 (Wiktree)    | 10월 5일 | 엔터면      | “현역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음란한 사생활이 폭로됐습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132호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 10월 5일 | 스포츠종합면   | 축구선수 홍철, 여자친구가 사생활 폭로... “10명 넘는 여성과 바람, 성병 걸려”       | 인터넷신문 |
| 제2021-1133호                              | 인터넷 세계일보          | 10월 5일 | 스포츠면     | “1년 반 동안 10명 넘는 女와 바람... 문란한 모임도” 축구 국대 홍철 사생활 폭로 터졌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134호                              | 포스트쉐어 (postshare) | 10월 5일 | -        | ‘10명 넘는 여성과 바람, 성병..’ 역대급 논란타진 유명 선수                  | 인터넷신문 |
| 제2021-1135호                              | 디스패처뉴스            | 10월 5일 | -        | “사생활 폭로 파장?” SNS 달고 구단 연락 안 받는다는 홍철                   | 인터넷신문 |
| 제2021-1136호                              | CBC뉴스             | 10월 5일 | INSIGHT면 | 홍철 사생활 폭로 글 사실? 카톡 메시지 내역 보니...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137호   | 언론사명 | (주)파이트타임즈 |
|---------|---|------|-----------|
| 대상보도    | FT스포츠 2021년 10월 05일 스포츠면<br>「국대 소집된 홍철 사생활 폭로로 SNS 달아 ‘10명이 넘는 여자와 바람」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한 여성의 SNS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가 이 여성과 교제 중임에도 다른 여성들을 만나 성병에 걸리기도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br>비록 해당 선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13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138호 | 국제뉴스     | 10월 7일 | 스포츠면    | 축구 국가대표 홍철, 사생활 폭로 당해...시리아전 출전하나?         | 뉴스통신  |
| 제2021-1139호 | 뉴스21     | 10월 5일 | 뉴스면     | 축구 국대 홍철 사생활 폭로... "10명 넘는 여성과 바람·성병도 걸려"  | 인터넷신문 |
| 제2021-1140호 | 미디어리퍼블릭  | 10월 5일 | 뉴스면     | 국대 축구선수, 女 10여 명과 양다리...성병까지 폭로한 여친, 돌연 사과 | 인터넷신문 |
| 제2021-1141호 | 스포츠동아    | 10월 6일 | 02면     | "홍철, 집합금지때 K리거·여성 등 8명 파티"                 | 중앙일간지 |
| 제2021-1142호 | 싱글리스트    | 10월 5일 | 스포츠면    | "女 10명과 바람" 홍철, 사생활+방역위반 논란... SNS 비활성화    | 인터넷신문 |
| 제2021-1143호 | 이투데이     | 10월 5일 | 문화·라이프면 | '축구 국가대표' 홍철, 사생활 폭로에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21-1144호 | 인터넷 금강일보 | 10월 5일 | 방송/연예면  | 홍철, 좋은 이미지로 사랑받던 그에게 무슨 일이? '홍철의 입장은?'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145호  | 언론사명 | 부산파이낸셜뉴스신문(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2021년 10월 05일 사회면<br>「"축구 국대 선수 하룻밤 즐기고 성병 걸려" 폭로 여친 갑자기 사과」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 및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한 여성의 SNS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가 이 여성과 교제 중임에도 다른 여성들을 만나 성병에 걸리기도 했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선수와 폭로 여성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선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간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1146호  | 언론사명 | 중앙일보(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중앙일보 2021년 10월 05일 사회면<br>「“10명과 바람” 축구 국대 폭로 여친, 돌연 “모든분께 사과”」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한 여성의 SNS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가 이 여성과 교제 중임에도 다른 여성들을 만나 성병에 걸리기도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br>비록 해당 선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1147호  | 언론사명 | 파이낸셜뉴스신문(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21년 10월 05일 사회면<br>「“축구 국대” 흥철 “하룻밤 즐기고 성병 걸려” 여친의 폭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 및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한 여성의 SNS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가 이 여성과 교제 중임에도 다른 여성들을 만나 성병에 걸리기도 했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선수와 폭로 여성 간의 카키오톡 대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br>비록 해당 선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간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1148호  | 언론사명 | (주)헤럴드 |
|---------|--|------|--------|
| 대상보도    |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1년 10월 05일 문화일반면<br>「'축구 국대' 홍철 여친 폭로글…“10명 넘는 여자와 바람 피웠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한 여성의 SNS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가 이 여성과 교제 중임에도 다른 여성들을 만나 성병에 걸리기도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br>비록 해당 선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 제2021-114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149호 | 일간시사매거진 | 10월 5일 | 엔터테인먼트면 | 축구선수 홍철 여자친구 주장 A씨 사과<br>“사회적 매장 의도 없었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150호  | 언론사명 | 김지수(살구뉴스) |
|---------|--|------|-----------|
| 대상보도    | 살구뉴스 2021년 10월 21일 정치/사회면<br>「곽상도 퇴직금 50억 횡령 충격적인 녹취록 등장..」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요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 대주주)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의 아들에게 배당을 주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해당 국회의원 아들의 초상을 공표하였다.<br>비록 해당 사건이 초미의 공적 관심 사안이고, 본인이 실명으로 논란을 해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스스로 공적 논쟁의 장에 뛰어든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물에 대한 목시적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 성급한 초상 공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부 록

| ■ 제2021-115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151호                             | 미디어인뉴스 | 9월 26일 | 공정사회면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퇴직금 명목 50억 받아...추미애 “곽적곽 철저 수사해야”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152호  | 언론사명 | (주)연합뉴스 |
|---------|--|------|---------|
| 대상보도    | 연합뉴스 2021년 10월 14일 최신기사면<br>「“절실함이 없네”...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코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코치의 발언을 인용하며 자세한 범행수법을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사건이 선수 본인의 ‘미투운동’으로 인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피해자가 별도로 판결문 열람제한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공개가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는 노골적인 성관련 표현을 여과 없이 노출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공표하지 않고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정보전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15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3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153호                              | MHN스포츠 | 10월 15일 | 윈터스포츠면 | ‘점입가경’ 심석희 “녹음해야지 XX”...조재범 “너 자신을 내놔라”                 | 인터넷신문 |
| 제2021-1154호                              | 더팩트    | 10월 14일 | 전국면    | [단독] ‘조재범 성폭행 사건’ 판결문, 인터넷 커뮤니티 ‘반칙 공유’...심석희 측 “대책 속의” | 인터넷신문 |
| 제2021-1155호                              | 데일리안   | 10월 15일 | 사회면    | “절실하면 나랑 하자”...조재범 성폭행 유죄 판결문 살펴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21-1156호                              | 매경닷컴   | 10월 14일 | 사회면    | “절실함이 없네”...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 인터넷신문 |
| 제2021-1157호                              | 매일안전신문 | 10월 15일 | 종합뉴스면  | 심석희 논란에 조재범 문자 덩달아 관심↑...성폭행 유죄 판결문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21-115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158호 | 부산닷컴                                 | 10월 14일 | -      | 판결문 속 조재범...미성년자 심석희에 범한 성범죄 정황                            | 인터넷신문 |
| 제2021-1159호 | 살구뉴스                                 | 10월 15일 | 정치/사회면 | 조재범 판결문.. 충격적인 문자 카톡 공개 내용.. 성범죄 유죄 정황                     | 인터넷신문 |
| 제2021-1160호 | 스포츠클럽                                | 10월 15일 | -      | 심석희 도청 의혹도? 조재범 사건과는 별개다 [SQ이슈]                            | 인터넷신문 |
| 제2021-1161호 | 여원뉴스                                 | 10월 15일 | -      | “절실함이 없네”...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 인터넷신문 |
| 제2021-1162호 | 위키트리 (Wiktree)                       | 10월 15일 | 사회면    | “절실함이 없네”...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 인터넷신문 |
| 제2021-1163호 | 인터넷 매일신문                             | 10월 14일 | -      | 심석희에 “쌘한테 너를 내놔”...판결문 속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 인터넷신문 |
| 제2021-1164호 | 인터넷 문화일보                             | 10월 14일 | 사회면    | “절실함이 없네”...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 인터넷신문 |
| 제2021-1165호 | 인터넷 서울경제                             | 10월 15일 | 사회면    |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쌘한테 너를 내놔”...판결문에 담긴 범죄행각                     | 인터넷신문 |
| 제2021-1166호 | 인터넷 서울신문                             | 10월 14일 | 사회면    | “선생님한테 너를 내놔”...조재범이 심석희에게 보낸 ‘충격’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167호 | 인터넷 세계일보                             | 10월 14일 | 사회면    |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드러나...“심석희 남친 생기자 스킨십 여부 묻고 폭행”              | 인터넷신문 |
| 제2021-1168호 | 인터넷 이데일리                             | 10월 15일 | 사회일반면  | ‘성폭행 유죄’ 조재범, 심석희에 “절실하면 나랑 하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169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10월 15일 | -      | 조재범 막장 복수? 변호인 말려도 ‘심석희 문자’ 깬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170호 | 인터넷 중앙일보                             | 10월 15일 | -      | [단독]심석희 문자 깬 조재범, 법정 복수 안통했다... 판결문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21-1171호 | 인터넷 한국경제                             | 10월 14일 | 사회면    | “절실하다면 나랑 하자”...조재범 판결문 공개, 심석희 2차 가해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21-1172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10월 15일 | -      | ‘조재범 성폭행’ 판결문, 2차 가해 논란...심석희 측 “협의 후 입장 밝힐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1173호 | 팩트경제신문                               | 10월 14일 | 팩트&탐사면 | “쌘한테 너를 내놔”...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 인터넷신문 |
| 제2021-1174호 | 포스트인컴                                | 10월 15일 | 사회면    | 조재범 “절실하면 나랑하자” 3년에 걸친 심석희 선수 성폭행 사건 판결 발표                 | 인터넷신문 |
| 제2021-1175호 | 하핑턴포스트 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 10월 15일 | -      | “심석희 남친 생기자 스킨십했다 묻고 폭행” 조재범이 심석희 선수한테 성범죄 저지른 유죄 정황이 드러났다 | 인터넷신문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1176호</b>  | <b>언론사명</b> | <b>(주)경남도민신문</b> |
| <b>대상보도</b>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021년 10월 06일 기획특집면<br>「창원 ‘○○한방병원’ ○○○ 대표원장」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b>권고사항</b>    |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b>이유</b>      |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br>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17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177호 | 경남도민신문   | 10월 20일 | 12면    | 통증 없는 삶을 위한 환자중심 도수치료 ‘호평’          | 지역일간지 |
| 제2021-1178호 | 경남일보     | 10월 25일 | 07면    | “척추하면 생각나는 병원 만들겠다”                 | 지역일간지 |
| 제2021-1179호 | 인터넷 경남일보 | 10월 24일 | 라이프면   | ○○○ 진주 ○○○의원 원장 “척추하면 생각나는 병원 만들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180호 | 디트news24 | 10월 20일 | 디트메디면  | ○○○병원, 유성구 ○○동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1181호 | 인터넷 금강일보 | 10월 9일  | 사회면    | ○○○병원 유성구 ○○동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제2021-1182호 | 메디컬투데이   | 10월 19일 | 의료면    | ○○○의원 ○○점 11월 그랜드 오픈 예정             | 인터넷신문 |
| 제2021-1183호 | 법보신문사    | 10월 12일 | -      | ○○○정형외과 개원, 지역주민들에 성실한 진료 제공할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1184호 | 인터넷 충남신문 | 10월 25일 | 탐방인터뷰면 | ○○○병원, 천안지역 최초 암 전문 재활 병동 개원        | 인터넷신문 |

|                |   |             |                  |
|----------------|---|-------------|------------------|
| <b>의결번호</b>    | <b>제2021-1185호</b>  | <b>언론사명</b> | <b>김지수(살구뉴스)</b> |
| <b>대상보도</b>    | 살구뉴스 2021년 11월 01일 연예면<br>「노유정 이영범 외도녀 유명 여배우 누구길래...? 재조명 되는 이혼사유(+근황)」 제하의 보도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의결번호 | 제2021-1185호   | 언론사명 | 김지수(살구뉴스)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한 유명 연예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이혼에 대한 심경을 밝힌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과거 다른 방송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 자녀의 초상을 공표하였다.<br>비록 해당 연예인이 당시 방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녀가 등장하는 사진을 스스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의 외도나 생활고로 이혼에 이르게 됐다는 부정적 내용을 다루면서 이와 무관한 자녀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으로 해당 자녀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의결번호    | 제2021-1186호   | 언론사명 | (주)머니앤밸류 |
|---------|---|------|----------|
| 대상보도    | e머니에스(e money S) 2021년 10월 30일 사회면<br>「경인 아라뱃길서 실종된 31세 여성…지인 “유언비어 자제 부탁”」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인천 경인 아라뱃길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실종 당시 배포되었던 전단지들을 그대로 게시하여 실종자의 초상과 나이, 인상착의를 공표하였다. 해당 기사의 게재시점이 실종자의 사망사실 확인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초상과 나이, 인상착의와 같은 사적 정보를 계속해서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제공의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당사자 및 유족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118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187호                             | 뉴스1코리아                     | 10월 30일 | 사회면  | 경인 아라뱃길서 실종된 31세 여성…지인 “유언비어 자제 부탁”      | 뉴스통신  |
| 제2021-1188호                             | 뉴스코리아월드 (NEWS KOREA WORLD) | 10월 30일 | -    | [속보] 경인 아라뱃길에서 행방 묘연했던 A씨 실종 나흘만에 숨진채 발견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189호  | 언론사명 | 김지수(살구뉴스) |
|---------|--|------|-----------|
| 대상보도    | 살구뉴스 2021년 11월 28일 정치/사회면<br>「전단지 넣은 할머니 무릎 꿇린 미용실 점주..신상 퍼지자 뒤늦은 사과」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한 미용실 점주가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은 70대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본 사건과 무관한 인물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인물의 초상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밝히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이라고 언급했다 할지라도, 이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이 담겼다는 이유로 사건과 무관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모자이크 처리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의결번호    | 제2021-1190호  | 언론사명 | (주)뉴스와사람들 |
|---------|--|------|-----------|
| 대상보도    | 뉴스프리존(News Free Zone) 2021년 11월 24일 정치면<br>「김의겸, 윤석열후보의 “김건희 말투와 단어 너무 위험..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 리스크 크다”」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이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녀와 관련된 의혹들을 정리한 유튜브 방송 장면을 캡처하여 인용 보도하였다.</p> <p>비록 해당 인물이 대선후보의 부인으로서 공적 인물의 범주에 속하고, 그녀의 과거 행적이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캡처를 통해 공표된 일부 내용은 공적 검증의 대상을 넘어 개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19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191호 | 국민뉴스 | 11월 24일 | 뉴스종합면 | 김의겸 “김건희, 끝까지 만나타날 것...마이크 잡는 자체가 ‘폭탄’”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192호   | 언론사명 | (주)디스패치뉴스그룹 |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21년 11월 01일<br>「[단독] “쓰레기 답변을 남겼다?”…김선호·○○○, 7월 24일의 카톡」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신원과 사생활 및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에 대해, 해당 폭로 내용에 의문점이 많고 진실이 왜곡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폭로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는가 하면,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당사자 간 사적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여성이 방송계 종사 경력이 있는 등 공적 인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남녀 간의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표하고, 폭로 여성의 신원까지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화 당사자인 폭로 여성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19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193호 | 살구뉴스            | 11월 1일 | 연예면  | 김선호 ○○○ 디스패치가 밝힌 카톡 중 가장 소름돋는 부분(+사진) | 인터넷신문 |
| 제2021-1194호 | 위키트리 (Wikitree) | 11월 1일 | 엔터면  | 순간 무너졌던 김선호에게 경사가 났다, 진짜진짜 축하받을 일이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195호  | 언론사명 | 손주연(타임포스트) |
|---------|--|------|------------|
| 대상보도    | 타임포스트 2021년 11월 02일<br>「○○○ 기상캐스터·김선호 카톡 대화 공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과 성명 및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최근 사생활이 폭로 된 유명 연예인과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전 여자친구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폭로 여성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하고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여 연인 간 사적 대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여성이 방송계 종사 경력에 있는 등 공적 인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연인 간의 사적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공표하고 폭로 여성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19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5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196호                              | 인터넷 무먼센스          | 11월 28일 | star면   | 김선호의 스캔들 대처법                                | 인터넷신문 |
| 제2021-1197호                              | 오에스이엔 (OSEN)      | 11월 1일  | 연예면     | [단독] 김선호, 화장품 광고 부활. 전여친 반전 카톡→뒤집힌 여론(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1198호                              | e머니에스 (e money S) | 11월 1일  | -       | "결혼하자, 책임질 것"... 김선호 디스패치 대화록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21-1199호                              | sportschosun.com  | 11월 1일  | 연예면     | "김선호는 아이를 지키려 했다"...○○○ 폭로 뒤엎는 카톡 공개 파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1200호                              | 매일안전신문            | 11월 1일  | 종합뉴스면   | ○○○가 말한 김선호의 '쓰레기 답변'의 실체는... '아이만 불쌍해'     | 인터넷신문 |
| 제2021-1201호                              | 인터넷 금강일보          | 11월 1일  | 문화면     | ○○○ 기상캐스터·김선호 카톡 공개때                        | 인터넷신문 |
| 제2021-1202호                              | 인터넷 이데일리          | 11월 1일  | 사회일반면   | 김선호 전여친, 디스패치에 침묵... '신상털기'만 법적 조치?         | 인터넷신문 |
| 제2021-1203호                              |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 11월 2일  | 문화·라이프면 | 광고 컴백 김선호, 낙태 강요 벗어나...○○○ 실명 거론-카톡 공개 입 열까 | 인터넷신문 |

■ 제2021-119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5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204호 | 조선닷컴                | 11월 1일 | 연예면     | "김선호는 아이를 지키려 했다"...○○○ 폭로 뒤엎는 카톡 공개 파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1205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11월 1일 | -       | "오히려 결혼 제안을..." 김선호, 전 여친 ○씨와 나눴던 대화 내용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206호 | 텐아시아                | 11월 1일 | 연예가화제면  | 김선호, 전 여친 낙태 강요? 임신 소식에 "결혼 하자. 이제 너 빼박" 카톡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207호 | 뉴스엔                 | 11월 1일 | 종합면     | "부모님께 말하자" 김선호-전여친 임신 당시 카톡 공개...소속사 측 "드릴 말씀 無" | 인터넷신문 |
| 제2021-1208호 | 인터넷 서울신문            | 11월 1일 | 문화·건강면  | "내가 책임질게"...김선호 전 여친과 낙태 당시 카톡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209호 |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 11월 2일 | 연예면     | 김선호 "결혼해야지. 너 빼박"...2주만에 공개된 반전 카톡               | 인터넷신문 |
| 제2021-1210호 | 스포츠투데이M             | 11월 1일 | 연예면     | 김선호, 전 여친 낙태 종용 논란→대화록 공개 "자기가 책임질게"             | 인터넷신문 |
| 제2021-1211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11월 2일 | 연예면     | 김선호 "결혼해야지. 너 빼박"...2주만에 공개된 반전 카톡               | 인터넷신문 |
| 제2021-1212호 | 스타투데이               | 11월 1일 | 스타투데이면  | "쓰레기"...김선호 前여친 무차별 폭로, 진실은 이랬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213호 | 싱글리스트               | 11월 1일 | 문화면     | 김선호 전 연인 A씨, 낙태 종용VS합의 엇갈린 메신저 대화                | 인터넷신문 |
| 제2021-1214호 | 인터넷 서울경제            | 11월 1일 | 사회면     | 공개된 김선호 카톡 "결혼해야지, 이제 너 빼박"... 진실은               | 인터넷신문 |
| 제2021-1215호 | 더팩트                 | 11월 1일 | 연예면     | 김선호, 임신한 전여친에 "무슨 일 있어도 책임질게"... 대화록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216호 | 엑스포츠투뉴스             | 11월 1일 | 연예면     | 김선호·전 연인 문자 공개..."책임지겠다"→"금전적 부담"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21-1217호 | 이투데이                | 11월 1일 | 문화·라이프면 | 김선호, 전 여친에 "결혼하자, 책임질게"...'낙태 종용' 주장 뒤집히나        | 인터넷신문 |
| 제2021-1218호 | 제주교통복지신문            | 11월 1일 | 종합이슈면   | [속보]배우 김선호 전 여친 A씨 카톡 대화 내용 공개한 디스패치             | 인터넷신문 |
| 제2021-1219호 | 일간지사매거진             | 11월 1일 | 엔터테인먼트면 | [속보] 김선호 전 여자친구간 추가 카톡 공개 '반전 대화'                | 인터넷신문 |
| 제2021-1220호 | 국제뉴스                | 11월 1일 | 연예면     | [속보]디스패치 배우 김선호 전 여친 A씨 폭로 카톡 "내용 보니"            | 뉴스통신  |

| 의결번호    | 제2021-1221호  | 언론사명 | 이데일리(주)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이데일리 2021년 11월 26일 방송면<br>「‘아이 임신한 뒤 버려져 유산’ 배우 고세원 사생활 폭로글」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과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한 여성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이 여성이 해당 연예인과 교제 중 아이를 임신한 뒤 버려져 유산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남녀 간의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제2021-122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222호 | 디스패치뉴스            | 12월 2일  | -    |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던 배우가 이혼 후 만난 여자친구의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21-1223호 | 위키투리 (Wikitree)   | 11월 26일 | 엔터면  | “사워하고 알몸 보여줘” 주부들의 황태자 배우 K의 카톡 내용이 뒀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224호 | 포스트쉐어 (postshare) | 11월 26일 | -    | “사워하고 알몸 보여줘” 실시간 역대급 사생활 폭로 터진 배우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225호   | 언론사명 | (주)미디어데일 |
|---------|---|------|----------|
| 대상보도    | 미디어데일 2021년 11월 27일 연예면<br>「“임신후 버려져”...고세원, 전여친 이혼·유산 폭로에 “책임질것”」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의결번호 | 제2021-1225호   | 언론사명 | (주)미디어데일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한 여성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이 여성이 해당 연예인과 교제 중 아이를 임신한 뒤 버려져 유산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와 나는 대화내용을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남녀 간의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상세히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22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226호 | 데일리스포츠월드 | 11월 26일 | -    | '왜 그렇게 임신이 잘 되냐'라던 고세원, 전 여친 폭로에 뒤늦은 사과 | 인터넷신문 |
| 제2021-1227호 | 인터넷 서울신문 | 11월 27일 | 사회면  | "버려졌고, 유산했다" 전 여친 폭로... 고세원 입 열었다(전문)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228호   | 언론사명 | 김지수(살구뉴스) |
|---------|---|------|-----------|
| 대상보도    | 살구뉴스 2021년 11월 26일 연예면<br>「고세원 '주부 황태자 K배우' 전여자친구 폭로 아내까지 재조명..이혼여부는?」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과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한 여성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도하면서, 이 여성이 해당 연예인과 교제 중 아이를 임신한 뒤 버려져 유산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와 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남녀 간의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22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229호                             | 하핑턴포스트 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 11월 26일 | 엔터테인먼트면 | “주부들의 황태자, K배우의 아이 가진 뒤 버려졌다” 고세원이 폭로글에 대해 “내가 맞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230호   | 언론사명 | (주)뉴스엔미디어 |
|---------|---|------|-----------|
| 대상보도    | 뉴스엔 2021년 11월 26일 종합면 「고세원 “임신 후 버려졌다” 폭로글에 “책임질 부분 책임지겠다”(전문)」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한 여성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이 여성이 해당 연예인과 교제 중 아이를 임신한 뒤 버려져 유산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와 나눈 대화내용을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남녀 간의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상세히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23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0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231호                              | 텐아시아                | 11월 26일 | 연예가화제면 | “알몸 한 번 보여줘” 고세원 전 연인의 ‘K배우’ 폭로 “임신한 뒤 버려져 유산” | 인터넷신문 |
| 제2021-1232호                              | 스포탈코리아              | 11월 26일 | -      | “임신 후 버려져 유산” 고세원, 전 여친 폭로에 사과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233호                              | 톱스타뉴스 (TopStarNews) | 11월 26일 | -      | “책임지겠다”...고세원, ‘임신 후 잠수 이별’ 전여친 폭로글에 사과        | 인터넷신문 |
| 제2021-1234호                              | 동아닷컴                | 11월 26일 | 연예면    | “임신후 버려져”...고세원, 전여친 이혼·유산 폭로에 “책임질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123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0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235호 | 매일안전신문                    | 11월 26일 | 종합뉴스면   | 또 다른 K배우 등장, '주부들의 황태자'가 임신한 여친 버렸다던데... '누구길래'         | 인터넷신문 |
| 제2021-1236호 | 스타투데이                     | 11월 26일 | -       | "임신 후 버려져" 전 여친 폭로에...배우 고세원 "책임질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1237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11월 26일 | 연예면     | "'주부들의 황태자' K배우, 임신한 날 버렸다"...고세원 "책임질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1238호 | sportschosun.com          | 11월 26일 | 연예면     | "임신 후 버려져, 자기 애 아니라고"...고세원, 사생활 논란 사과 "책임지겠다" (종합)[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239호 | 일간지사매거진                   | 11월 26일 | 엔터테인먼트면 | "K배우가 임신소식 후 결별" 2017년 이혼한 주부들의 황태자?                    | 인터넷신문 |
| 제2021-1240호 | 인터넷 세계일보                  | 11월 26일 | 연예면     | "임신 후 문자 한통으로 이별 후 유산" 전 연인 주장에 고세원 "책임질 일 책임지겠다" 사과    | 인터넷신문 |
| 제2021-1241호 | 일오신문                      | 11월 27일 | -       | 고세원 사생활 논란, "3개월 교제한 여성...책임져야 할 부분 책임질 것" 공식입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1242호 | 한국미디어뉴스<br>통신             | 11월 26일 | NC면     | '주부들의 황태자' 계속되는 연예계 사생활 논란, K배우는 도누구인가?                 | 인터넷신문 |
| 제2021-1243호 | 국제뉴스                      | 11월 27일 | 연예면     | 고세원, 사생활 논란에 사과 '이혼사실까지'                                | 뉴스통신  |
| 제2021-1244호 | 인터넷 내외일보                  | 11월 27일 | 연예·스포츠면 | '막돼먹은' 고세원, 여친 폭로에 "책임지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245호 | 시사플러스                     | 11월 26일 | 문화/생활면  | "임신 후 버려졌다" 전여친 실명 폭로...고세원 '추락' "책임지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246호 | 스타데일리뉴스                   | 11월 26일 | 뉴스면     | "임신 후 버려졌다" 전여친 폭로... 고세원 "책임질 부분 책임질 것"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247호 | 인터넷 호남매일                  | 11월 29일 | -       | 전여친 유산 폭로... 고세원 "책임질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1248호 | 창업일보                      | 11월 27일 | 라이프면    | 고세원 사과[공식입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1249호 | 데일리스마트경제                  | 11월 29일 | 연예·스포츠면 | "임신 후 버려져" 고세원, 사생활 논란 인정→ "책임질 것" 사과                   | 인터넷신문 |
| 제2021-1250호 | 제주교통복지신문                  | 11월 26일 | -       | 익명의 글쓴이, '주부들의 황태자' K 배우가 임신한 여친 친구 버렸다 주장              | 인터넷신문 |
| 제2021-1251호 | STN SPORTS                | 11월 26일 | -       | "임신 후 버려졌다" 전 여친 폭로에...고세원 "이혼 후 만난 여친"                 | 인터넷신문 |
| 제2021-1252호 | 스포티비뉴스                    | 11월 27일 | -       | 유명한 전여친에 "X신아 인터넷에 올려"...고세원, 일일극 황태자의 민낯인기(종합)         | 인터넷신문 |

| ■ 제2021-123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0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253호                              | 엑스포츠뉴스                | 11월 29일 | 종합면     | “임신 후 버려져” 고세원, 사생활 논란 인정→사과                     | 인터넷신문 |
| 제2021-1254호                              | 인터넷<br>일간경북신문         | 11월 28일 | 문화면     | 고세원, 전여친 이혼·유산 폭로에 “책임질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1255호                              | 인터넷 문화일보              | 11월 26일 | -       | “임신후 버려져”...고세원, 전여친 이혼·유산 폭로에 “책임질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1256호                              | 여원뉴스                  | 11월 27일 | -       | 배우 고세원 “임신한 뒤 버려졌다” 폭로에...“3개월 만난 여성”            | 인터넷신문 |
| 제2021-1257호                              | 미디어펜<br>(Mediapen)    | 11월 27일 | 연예·스포츠면 | 고세원 사과...전 여자친구 임신+유산 폭로에 “책임질 부분 책임질 것”         | 인터넷신문 |
| 제2021-1258호                              | 인터넷 한국경제              | 11월 26일 | 생활·문화면  | “임신한 뒤 버려졌다” 폭로에...고세원 “3개월 만난 여성”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259호                              | 인터넷<br>일간스포츠          | 11월 26일 | 엔터면     | ‘혼인빙자 의혹’ 고세원 “2017년 이혼..어떤 이유로든 여성분에게 죄송”(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260호                              | 인사이트                  | 11월 26일 | 엔터테인먼트면 | 고세원, “임신 후 버려졌다” 전여친 폭로에 “3개월 만난거...책임지겠다”(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261호                              | 조이뉴스24<br>(joynews24) | 11월 26일 | -       | 고세원 측 “사생활 논란? 현재 확인 중...곧 입장 낼 것”(공식)           | 인터넷신문 |
| 제2021-1262호                              | 마이데일리                 | 11월 26일 | 연예면     | ‘사생활 파문’ 주부들 황태자 배우K, 고세원이었다... “그 여성분께 죄송”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21-1263호                              | 뉴시스<br>(NEWSIS)       | 11월 26일 | 연예면     | “임신후 버려져”...고세원, 전여친 이혼·유산 폭로에 “책임질것”            | 뉴스통신  |
| 제2021-1264호                              | 내외경제TV                | 11월 26일 | 이슈/속보면  | ‘주부들의 황태자’ 고세원, 사생활 논란에 입장문 표명...어떤 내용일까?        | 인터넷신문 |
| 제2021-1265호                              | 경기연합신문                | 11월 26일 | 포토·영상면  | ‘주부들의 황태자’ 고세원, 전 여친 ‘임신·유산’ 폭로에 사과              | 인터넷신문 |
| 제2021-1266호                              | 인터넷<br>스포츠한국          | 11월 26일 | -       | 고세원, 전 여친 폭로글 등장 “임신한 뒤 버려졌다”                    | 인터넷신문 |
| 제2021-1267호                              | 호남신문                  | 11월 29일 | 13면     | 배우 고세원, 전여친 이혼·유산 폭로에 “책임질것”                     | 지역일간지 |
| 제2021-1268호                              | 호남매일                  | 11월 29일 | 11면     | 전여친 유산 폭로...고세원 “책임질 것”                          | 지역일간지 |
| 제2021-1269호                              | 일간경북신문                | 11월 29일 | 13면     | 고세원, 전여친 이혼·유산 폭로에 “책임질것”                        | 지역일간지 |
| 제2021-1270호                              | 스타뉴스<br>(star news)   | 11월 26일 | -       | “임신 후 버려져, 유산” 고세원, 전 여친 폭로에 사과 [전문]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271호  | 언론사명 | (주)대전일보사 |
|---------|--|------|----------|
| 대상보도    | 대전일보닷컴 2021년 11월 08일 대전·세종면<br>「대전경찰, 마약성 진통제 투약·유통 일당 26명 검거…처방 의사 9명도」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사용방법, 구입 가격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과 구입가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도하였다.<br>이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 등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제2021-127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272호 | e머니투데이<br>(e money today) | 11월 8일  | 뉴스면    | 아픈 척 마약 타간 래퍼들…불쌍하다며 처방해준 의사                    | 인터넷신문 |
| 제2021-1273호 | JTBC                      | 11월 8일  | 8시 뉴스면 | “마약 패치 1장 〇원”...처방받아 되팔고 흡입한 젊은이들               | 방송    |
| 제2021-1274호 | 뉴스스(NEWSIS)               | 11월 9일  | 지방면    | 마약성 진통제 ‘〇〇〇’ 처방의사·투약자 무더기 검거(종합)               | 뉴스통신  |
| 제2021-1275호 | 데일리안                      | 11월 8일  | 사회면    | 아픈 척 마약성 진통제 타간 가짜환자·처방의사 무더기 검거                | 인터넷신문 |
| 제2021-1276호 | 동아닷컴                      | 11월 8일  | 사회면    | 마약성 진통제 ‘〇〇〇’ 처방의사·투약자 무더기 검거                   | 인터넷신문 |
| 제2021-1277호 | 인터넷<br>일간스포츠              | 11월 8일  | 경제면    | “마약 패치 1장 〇원”...처방받아 되팔고 흡입한 젊은이들               | 인터넷신문 |
| 제2021-1278호 | 인터넷 중도일보                  | 11월 8일  | 사회교육면  | 마약성 진통제 투약 26명·목적 외 처방 의사 9명 적발                 | 인터넷신문 |
| 제2021-1279호 | 더팩트                       | 11월 8일  | 전국면    | 허위 통증 호소해 마약성 진통제 투약·판매한 26명 검거                 | 인터넷신문 |
| 제2021-1280호 | 로이슈                       | 10월 21일 | 정치면    | 창원지법, 거짓통증 호소 마약인 〇〇〇 성분의 패치 처방 받아 매도 30대 징역 5년 | 인터넷신문 |
| 제2021-1281호 | 인터넷 중앙일보                  | 11월 8일  | -      | “허리 아파요” 타간 약 마약이었다...의사는 “불쌍해서 처방”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21-1282호 | 충청타임즈                     | 11월 9일  | 16면    | ‘마약성 진통제’ 〇〇〇 무분별 유통                            | 지역일간지 |
| 제2021-1283호 | 인터넷<br>충청타임즈              | 11월 8일  | 종합면    | ‘마약성 진통제’ 〇〇〇 무분별 유통                            | 인터넷신문 |
| 제2021-1284호 | 충청뉴스                      | 11월 9일  | 사회/문화면 | 마약성 진통제 투약·판매한 26명 검거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제2021-1285호   | 언론사명 | (주)미디어인그램 |
|---------|---|------|-----------|
| 대상보도    | 오편 디스커스_중복 폐지 2021년 11월 19일 월드뉴스면<br>「'대왕고래 게임' 워길래...中초교서 여학생 3명 동시 투신 '충격」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p>위 기사는 중국에서 '대왕고래 게임'으로 불리는 놀이가 유행하면서 초등학교 3명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몸에 칼로 상처내기'와 같은 미션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p> <p>이는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격 형성과정에 있는 청소년 등 미성년 독자들의 가치관 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           |

| ■ 제2021-128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        |         |      |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제2021-1286호                             | 뉴스1코리아 | 11월 19일 | 국제면  | '대왕고래 게임' 워길래...中초교서 여학생 3명 동시 투신 '충격' | 뉴스통신  |
| 제2021-1287호                             | 동아닷컴   | 11월 19일 | 국제면  | '대왕고래 게임' 워길래...中초교서 여학생 3명 동시 투신 '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21-1288호                             | 디스패치뉴스 | 11월 19일 | -    | '대왕고래 게임' 워길래...中초교서 여학생 3명 동시 투신 '충격' | 인터넷신문 |

|         |   |      |          |
|---------|---|------|----------|
| 의결번호    | 제2021-1289호   | 언론사명 | (주)세계타임즈 |
| 대상보도    | 인터넷 세계타임즈 2021년 11월 10일 건강/생활정보면<br>「천안 ○○○병원, '통합의학'이라는 뚜렷한 차별성으로 양질의 의료시스템」 제하의 보도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          |
| 이유      |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br>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호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 제2021-128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보도위치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21-1290호 | 충북세계타임즈   | 11월 10일 | 세계스포츠포럼 | 천안 ○○○병원, '통합의학'이라는 뚜렷한 차별성으로 양질의 의료시스템      | 인터넷신문 |
| 제2021-1291호 |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11월 10일 | 문화생활면   | 천안 ○○○병원, 제3의학 대체의학의 융합 등 통합의학의 관점에서 면역력 극대화 | 인터넷신문 |

